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2022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환경복지국】

김 포 시

목 차

■ 환 경 녹 지 국

- ⊙ 환경과 5
- ⊙ 기후에너지과 75
- ⊙ 환경지도과 159
- ⊙ 자원순환과 193
- ⊙ 공원녹지과 273

2022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환 경 과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 (P - 41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97,686㎡(보행길이 약 2.5km)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인 하동천 생태탐방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를 통한 생태탐방로 이용 주민들의 편익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75,820	98,198	98,198		103,809	5,611	
국 비							
도 비							
시 비	75,820	98,198	98,198		103,809	5,611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생태탐방로 데크 보수 필요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신설 및 생태탐방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장비(고압 세척기, 송풍기 등)구입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근거내용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인 하동천생태탐방로의 효율적 운영(시설물 적기 보수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인력운영비 - 인부임 : 86,880원 * 1명 * 15일 * 8월 = 10,426 - 주휴수당, 연차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 3,021 · 운영경비 - 사무관리비(현수막 제작, 환경정비 비, 안내도 및 표 지판 정비) = 6,600 - 공공운영비(운영장비 연료비, 관리장비 유지비 등) = 1,342 - 지급 수수료(탐방로 예초작업, 데크유지관리비 등) = 29,430 - 임차료(장비 임차료, 복합기 임대료) = 2,900 - 복리후생비(피복비, 안전화 구입) = 480 - 공공요금 및 제세(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 6,268 - 출장 여비:20,000원*1명*4일*12월 = 960 - 일반재료비(시설물 정비 잡재비, 농약구입) = 2,820 - 수선유지비(시설유지비, 탐방로 보수공사 등) = 36,442 · 경상이전 - 연금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분) = 1,440 - 영조물(재해) 배상공제 자기부담금:100,000원*3회 = 300		
	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고압세척기, 인버터용접기, 송풍기) = 1,38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1.08. :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준공
- 2011.10. : 위탁관리 운영 협약체결(김포시 ↔ 김포도시관리공사)
- 2011.11. ~ 현재 : 김포도시관리공사 대행 관리, 운영 중
- 2022.01.~ 2022.12. : 분기별 대행사업비 교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이용객 : 17,551명 -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 탐방로 로프 및 목펜스 보수, 데크 곰팡이 제거, 탐방로 시설 정비 등 - 지역마을(한강노을빛체험마을)연계 작은음악회 3회 개최, 한강노을빛 자연학교 운영	
2020년	- 이용객 : 20,437명 -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 탐방로 재포장, 사무실주변 CCTV설치, 데크곰팡이제거, 자동제세동기 구입 등	
2021년	- 이용객 : 21,514명 -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 파손 목펜스 보수, 시설물 정기점검(전기, 소화기등), 탐방로 데크 보수작업 등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5,006	75,006	-	-	
2020년	75,820	74,253	-	1,567	
2021년	98,198	98,198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수질오염총량팀장 백혜선	담당자	환경8급 박지수	전화	2281
-----	-----	--------------	-----	----------	----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P - 41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약 10농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야생동물 포획을 최소화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생태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24,800	24,800		32,000	7,200	
국 비		12,400	12,400		16,000	3,600	
도 비							
시 비		12,400	12,400		16,000	3,6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근거내용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고라니, 너구리,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편,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않으면서도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3,200,000원*10농가 = 3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2 :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03 :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 및 접수
- 2022.04 ~ :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집행금액 : 19,918천원 ○ 지원농가 : 8농가	
2020년	○ 집행금액 : 29,987천원 ○ 지원농가 : 11농가	
2021년	○ 집행금액 : 21,175천원 ○ 지원농가 : 7농가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2,900	19,918	52,981	1	
2020년	52,981	29,987	-	22,997	
2021년	24,800	21,175	-	3,625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담당자	환경8급 나운영	전화	2150
-----	-----	------------	-----	----------	----	------

(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보상) (P - 41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유해야생동물(고라니 60여마리, 조류 1,800여마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최소화하고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8,400	18,900	18,900		25,810	6,910	
국 비							
도 비							
시 비	18,400	18,900	18,900		25,810	6,91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 증가
- 경기도 환경정책과-1043(2021. 1. 15.)호 관련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별 위성항법장치 지급 필요
- 주택가 비둘기, 뱀 출현에 대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가피제 구입 필요성 증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23조 제31조의 3 제7조
근거내용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피해보상 한도) ① 농작물 피해 관련 보상은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농가에 출몰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를 해결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필요하며, 최근 도시화로 인한 비둘기, 뱀 피해호소에 따른 기피제 지원
- 피해방지단은 특수자격(총포소지허가, 수렵면허)이 있어야 하는 업무로 단원에게 포획에 따른 보상금과 포획활동 시 상해사고 방지를 위해 위성항법장치, 안전조끼 등 안전용품 지원
-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농가에 지원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소모품 구입	201-01 사무관리비	· 안전용품지급 (GPS추적기대여비, 안전조끼) : GPS대여비 등 안전용품 100,000원 * 11명 = 1,100 · 야생조류 AI관련 사체 수거비 : 300,000원 * 10회 = 3,000 · 야생조류 AI관련 현수막 제작 : 77,000원 * 30 = 2,310 ·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 비둘기기피제: 33,000원 * 30박스 = 1,000,000원 = 1,800 - 파충류(뱀)기피제 : 16,000원 * 50ea = 800,000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멧돼지, 고라니 : 40,000원 * 90건 = 3,600,000원 = 12,600 - 유해조류, 小동물 : 6,000원 * 1,500건 = 9,000,000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301-12 기타보상금	· 피해보상금 : 5,000,000원 = 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2. : 2022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 수립(매년)
- 2022.03.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수리 및 관계기관(경찰서, 군부대) 협의 등
- 2022.03.~2022.12.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보상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집행액 : 11,554천원(보상금) ○ 포획수 : 970마리(고라니 등 : 161마리, 조류 809마리)	
2020년	○ 집행액 : 9,892천원 ○ 포획수 : 1,060마리(고라니 등 : 98마리, 조류 962마리)	
2021년	○ 집행액 : 1,452천원 ○ 포획수 : 821마리(고라니 등 : 25마리, 조류 796마리)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7,400	11,554	-	3,086	
2020년	18,400	9,892	-	8,508	
2021년	18,900	1,452	-	17,448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담당자	환경8급 박미선	전화	2246
-----	-----	------------	-----	----------	----	------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P - 42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구조 445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조난 및 부상 야생동물을 적기에 구조치료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로 인한 민원해소 및 자연생태계 보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28,630	32,000	32,000		32,000	0	
국 비							
도 비	6,326	5,000	5,000			-5,000	
시 비	22,304	27,000	27,000		32,000	5,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의뢰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구조·이송된 부상야생동물에게 원활히 먹이를 제공하여 야생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생물다양성 확보를 하기 위해 자체재원으로 추가지원 하고자 함
-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이송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가 종료되어 자체 재원으로 진행할 필요성.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포시 환경기본조례	제4조 및 제34조의4 제5조
근거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무를 진다. 3. 야생동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의뢰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구조·이송된 부상야생동물에게 원활히 먹이를 제공하여 야생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생물다양성 확보를 하기 위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부상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부상야생동물 구조 : 22,000,000원 = 22,000	
	206-01 재료비	·먹이구입비 : 10,000,000원 = 10,000	

※ 이 외 부상 야생동물 치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2 : 2022년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이송용역 추진계획 수립(매년), 계약 추진
- 2022.01.~2022.12. : 2022년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이송용역 추진, 부상야생동물 먹이 구입

[참고자료]

○ 근거 :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 운영지침(경기도 2008.2.)

○ 내용

2. 야생동물 구조·치료

가. 구조

- 조난 또는 부상동물 신고·접수 즉시 포획장비와 이송장비를 갖추어서 출동해야 함.
- 사고 현지 도착 후 신속하게 신고인과의 인계·인수 및 조난상태를 조사하고, 포획 및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함.

<중략>

사. 구조·치료비용의 지원

- 야생동물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구조 및 이송 처리건수 : 459건 ○ 먹이(생닭) 구입 : 1,000마리	
2020년	○ 구조 및 이송 처리건수 : 449건 ○ 먹이(생닭) 구입 : 1,200마리	
2021년	○ 구조 및 이송 처리건수 : 422건 ○ 먹이(생닭) 구입 : 2,000마리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6,605	26,588	-	17	-
2020년	28,630	28,493	-	137	-
2021년	32,000	27,096	-	4,904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담당자	환경8급 나운영	전화	2150
-----	-----	------------	-----	----------	----	------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보조)) (P - 42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사업규모 : 치료 40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조난 및 부상 야생동물을 적기에 구조치료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로 인한 민원해소 및 자연생태계 보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3,000	3,000	3,000		3,100	100	
국 비							
도 비					620	620	
시 비	3,000	3,000	3,000		2,480	-52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포시 환경기본조례	제4조 및 제34조의4 제5조
근거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무를 진다. 3. 야생동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 경기도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 운영지침 일부 첨부(별첨)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야생동물 보호의식 함양은 물론 생물자원의 가치가 점차 상향됨에 따라 야생동물 구조치료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
- 신도시가 조성되고 각종 산업도시화로 인해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의뢰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구조·이송 용역을 추진하고 부상 동물에 대한 먹이, 식수 지원 및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필요
- 멸종위기종의 경우 도 지정 동물병원에 치료를 의뢰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부상야생동물 구조·치료	307-01 의료 및 구료비	치료비 : 77,500원 * 40건 = 3,1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1년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이송용역 추진계획 수립(매년)
- 2021.02.~2022.12. : 2021년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이송 용역 추진(한국조류보호협회)
- 2022.12. : 2022년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지원(도지정기관 : 한마음동물병원)

[참고자료]

○ 근거 :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 운영지침(경기도 2008.2.)

○ 내용

2. 야생동물 구조·치료

가. 구조

- 조난 또는 부상동물 신고·접수 즉시 포획장비와 이송장비를 갖추어서 출동해야 함.
- 사고 현지 도착 후 신속하게 신고인과의 인계·인수 및 조난상태를 조사하고, 포획 및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함.

<중략>

사. 구조·치료비용의 지원

- 야생동물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처리건수 : 24건	
2020년	○ 처리건수 : 35건	
2021년	○ 처리건수 : 29건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000	3,000	-	-	
2020년	3,000	3,000	-	-	
2021년	3,000	-	-	3,0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담당자	환경8급 나운영	전화	2150
-----	-----	------------	-----	----------	----	------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P - 42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관 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의 효율적인 대처와 환경보전시책 추진과정의 이견조정 및
환경오염대책 마련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견수렴으로 환경정책 추진의 투명성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2회 추경 (C)			
계	2,240	1,120	1,120		1,120	0	
국 비							
도 비							
시 비	2,240	1,120	1,120		1,120	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1항
근거내용	제2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김포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를 둔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환경정책위원회 회의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민간위원 14명에 대하여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위원회 참석수당 : 80,000원 * 14명 * 1회 = 1,12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01.25. :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완료
- 2019.05.07. : 환경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회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 2019.07.19. : 2019년 제2회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 2019.12.12. : 2019년 제3회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 2020.11.30. : 2020년 제1회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 2021.01.28. : 2021년 제1회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 2021.11. ~ 12. : 2021년 제2회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2018.01.~12. :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추천	
2019년	○ 2019.05.07. : 환경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회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 2019.05.07. : 2019년 제2회 환경정책위원회 개최(2030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2020년	○ 2020.11.30. : 2020년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021년	○ 2021.01.28. : 2021년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400	2,400	-	0	
2020년	2,240	640	-	1,600	
2021년	1,120	560	-	56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담당자	행정6급 곽혜경	전화	2258
-----	-----	------------	-----	----------	----	------

(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사업비) (P - 420)

□ 지방보조사업 개요(운영비)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공모여부 : 비공모
- 보조사업자 : (사)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대표자 : 이만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로 청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2회 주경 (C)			
계					1,900	1,900	
시 비					1,500	1,500	
자부담					400	400	

□ 예산 증감사유

- 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환경정화활동에 필요한 사업활동비 보조(신규)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 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4조 제2항 제3조
근거내용	제54조(국고보조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김포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조직과 자연보호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연보호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자연정화활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총 계	계	시비	자부담
			1,900	1,500	400
자연보호 김포시 협의회 사업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합 계			
		· 현수막 제작 50,000원×8회	400	400	
		· 재료비(장갑,집게,호미 등)	300	300	
		· 기타재료 : 10,000원×12월	1,200	800	4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보조사업자 : (사)김포시자연보호협의회 ○ 추진실적 - 자연보호동산 숲 가꾸기 · 일 시 : 2019. 5. 28.(1회), 6. 26.(2회) · 장 소 : 대곶면 상마리 수안산 자연보호동산 · 인 원 : 28명 · 내 용 : 벤치설치, 나무가지치기, 풀베기 등 - 자연보호 캠페인 · 일 시 : 2019. 9. 1. · 장 소 : 김포시공설운동장 · 인 원 : 38명 · 내 용 : 자연보호 캠페인 및 주변 정화활동	
2020년	○ 보조사업자 : (사)김포시자연보호협의회 ○ 추진실적 - 굴포천 정화운동 · 일 시 : 2020. 1. 15. 10:00 · 장 소 : 굴포천 · 인 원 : 23명 · 내 용 : 정화활동 - 설맞이 대청소 · 일 시 : 2020. 1. 20. · 장 소 : 국도48호선 청소취약지 · 인 원 : 15명 · 내 용 : 설맞이 대청소 - 코로나19 이겨내기 클린산행 · 일 시 : 2020. 6. 20. · 장 소 : 장릉상~금정산 · 인 원 : 25명 · 내 용 : 정화활동	
2021년	○ 보조사업자 : (사)김포시자연보호협의회 ○ 추진실적 - 굴포천 정화운동(1,2차) · 일 시 : 2021.3.13.~3.14 10:00 · 장 소 : 굴포천 · 인 원 : 15명 · 내 용 : 굴포천 환경정화활동 - 계양천 환경정화활동(2021.3.27./13명) - 장릉산 환경정화활동(2021.4.11./30명) - 문수산 환경정화활동(2021.5.2./29명) - “자연아 푸르자” 자원봉사(2021.5.15./14명) - 자연보호동산 정리 및 가꾸기 활동(2021.5.29./30명) - 환경정화활동 및 유해식물 퇴치(2021.6.13./39명) - 가현산 환경정화활동(2021.6.26.)	

○ 최근3년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담당자	행정6급 곽혜경	전화	2258
-----	-----	------------	-----	----------	----	------

(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운영비) (P - 420)

□ 지방보조사업 개요(운영비)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공모여부 : 비공모
- 보조사업자 : (사)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대표자 : 이만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로 청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2회 주경 (C)			
계	10,809	10,951	10,951		11,306	355	
시 비	5,639	6,767	6,767		7,058	291	
자부담	5,170	4,184	4,184		4,248	64	

□ 예산 증감사유

- 전년대비 최저인건비 인상 및 전기요금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 김포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4조 제2항 제3조
근거내용	제54조(국고보조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김포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조직과 자연보호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연보호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환경실천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이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계	시비	자부담	
		총 계	11,306	7,058	4,248
		합 계	11,306	7,058	4,248
자연보호 김포시 협의회 운영 지원	307-03 민간법정운영보조	- 지원단체 : (사)김포시자연보호협의회 · 사무국장 인건비 : (8,850원×4시간×20일)×1명×12월 · 사무실 임대료 : 2,570,000원×1년 · 전기요금 : 20,000원×12월	8,496 2,570 240	4,248 2,570 240	4,248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보조사업자 : (사)김포시자연보호협의회 ○ 추진실적 - 자연보호동산 숲 가꾸기 · 일 시 : 2019. 5. 28.(1회), 6. 26.(2회) · 장 소 : 대곶면 상마리 수안산 자연보호동산 · 인 원 : 28명 · 내 용 : 벤치설치, 나무가지치기, 풀베기 등 - 자연보호 캠페인 · 일 시 : 2019. 9. 1. · 장 소 : 김포시공설운동장 · 인 원 : 38명 · 내 용 : 자연보호 캠페인 및 주변 정화활동	
2020년	○ 보조사업자 : (사)김포시자연보호협의회 ○ 추진실적 - 굴포천 정화운동 · 일 시 : 2020. 1. 15. 10:00 · 장 소 : 굴포천 · 인 원 : 23명 · 내 용 : 정화활동	
2021년	○ 보조사업자 : (사)김포시자연보호협의회 ○ 추진실적 - 굴포천 정화운동(1,2차) · 일 시 : 2021.3.13.~3.14 10:00 · 장 소 : 굴포천 · 인 원 : 15명 · 내 용 : 굴포천 환경정화활동 - 계양천 환경정화활동(2021.3.27./13명) - 장릉산 환경정화활동(2021.4.11./30명) - 문수산 환경정화활동(2021.5.2./29명) - “자연아 푸르자” 자원봉사(2021.5.15./14명) - 자연보호동산 정리 및 가꾸기 활동(2021.5.29./30명)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19년	9,792	5,126	4,666	9,792	5,126	4,666	-	-	-	
2020년	10,809	5,639	5,170	10,809	5,639	5,170	-	-	-	
2021년	10,951	6,767	4,184	10,951	6,767	4,184	-	-	-	10.31 현재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담당자	행정6급 곽혜경	전화	2258
-----	-----	------------	-----	----------	----	------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운영) (P - 42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운영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시 소음피해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통해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복지 증진 및 효율적인 소음피해 대책 마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480		480	480	0	
국 비							
도 비							
시 비		480		480	480	0	
기 타							자부담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근거내용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의 복지 증진과 소음 피해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민간위원 6명에 대하여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공항소음대책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위원회 참석수당 : 80,000원*6명*1회 =	48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1. 07. : 「김포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021. 09. :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 2021. 11. : 2021년 제1회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개최
- 2022. 10. : 2022년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1년	- 2021. 7. 2. : 김포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1. 8 ~ 9. :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1년	480	-	-	48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안전팀장 김선영	담당자	행정7급 오윤화	전화	2257
-----	-----	------------	-----	----------	----	------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방사 사후 모니터링 용역) (P - 42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4년 12월 (장기계속) ○ 위 치 : 김포시 김포한강11로 455(남알뜰넥)
- 사업규모 : 약 1,330평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금개구리의 포획·방사에 따른 대체 서식지로 이주 후 3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체수를 안정화하고 지속적인 종의 보존을 유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3,000	33,000	
국 비							
도 비							
시 비					33,000	33,0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4895(2021.7.23.)호	제14조제1항제6호 허가번호 제 2021-51호 허가조감
근거내용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호)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허가조건) 1. 사후 모니터링은 3년간('22년~'24년) 실시 후 그 결과를 매년 우리청으로 신고(조사·작성 일지, 사진 등 증빙)하여야 함.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2021.11.예정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의 허가업무 처리 가이드라인(환경부 자연보전국 2017.7.)에 따라 멸종 위기 야생생물 포획·방사를 실시할 경우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여야 하며, 우리 시 2021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금개구리 포획·방사 허가조건(허가번호 제2021-51호)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3년간(2022년 ~ 2024년) 진행하여야 함.

-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그 결과를 매년 허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금개구리와 방사지의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합 계 = 33,000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방사 사후 모니터링	207-01 연구용역비	· 직접인건비	
		- 모니터링 (방사지)	= 9,620
		-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	= 1,600
		· 직접경비	
		- 출장비	= 1,600
		· 제경비 직접인건비 × 110%	= 12,350
		·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5%	= 4,830
		· 부가가치세	= 3,000
			공급가액 : 만원이하 절사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6.10. :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방사 용역 착수
- 2021.07.06. :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방사 허가신청서 제출
- 2021.07.23. :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방사 허가 통보
(허가조건 : 사후 모니터링 3년간('22 ~ '24년) 실시 후 그 결과를 매년 한강유역환경청 신고)
- 2021.11.06. :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방사 용역 준공
- 2021.11. : 용역과제 심의자료 제출
- 2022.02.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 2022.03. : 용역집행 의뢰
- 2022.04. : 용역업체 선정
- 2022.05. ~ 2022.10. :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방사 사후 모니터링 실시
- 2023. ~ 2024. : 2차년도, 3차년도 모니터링 실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담당자	환경8급 나운영	전화	2150
-----	-----	------------	-----	----------	----	------

(슬레이트 처리지원) (P - 42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슬레이트 건축물 194동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건축물의 지붕으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제거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412,560	807,680	807,680		735,480	-72,200	
국 비	206,280	378,040	378,040		367,740	-10,300	
도 비	30,942	82,506	82,506		55,161	-27,345	
시 비	175,338	347,134	347,134		312,579	-34,555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비주택 철거 지원 사업량 감소, 비주택 철거시 추가지원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미편성에 따른 국도비 지원액 감소[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15432(2021.9.6.)호 국도비 보조 가내시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항
근거내용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라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처리비용 과다로 적기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 위험성 증가
- 보조금 지원을 통해 슬레이트 건축물의 안전한 처리기반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계	= 735,480
		·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 주택 지붕 철거 : 150가구 * 3,520,000원	= 528,000
		- 비주택 지붕 철거 : 14가구 * 5,400,000원	= 75,600
		·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 주택 지붕개량 : 30가구 * 4,396,000원	= 131,88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06.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및 석면슬레이트 제로화 종합계획 수립
- 2022. 01. :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 02. :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 2022. 02. ~ 2022. 11. : 슬레이트 면적조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2022. 12.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실적 : 58동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실적 : 128동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실적 : 190동(진행 중)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72,680	149,201	-	23,479	
2020년	412,560	412,560	-	31,892	
2021년	807,680	807,68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안전팀장 김선영	담당자	환경8급 송가은	전화	2855
-----	-----	------------	-----	----------	----	------

(슬레이트 처리지원(자체자원)) (P - 42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원 20동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후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사업을 통한 석면의 안전한 처리 기반을 조성하여 안전한 시민 생활권 보장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50,000	150,000		100,000	-5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50,000	150,000		100,000	-50,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석면건축물 적기 처리를 위해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주택 지붕개량 지원비를 자체재원으로 추가지원 하고자 함.

□ 법적근거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항
근거내용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라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 위험성 증가
- 2022년 국도비 슬레이트 지원사업의 비주택 철거 예산이 2021년 대비 30동 감소하여 자체재원으로 비주택 철거 적기 지원을 통해 슬레이트 건축물의 안전한 처리기반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 비주택 지붕 철거 및 주택 지붕개량 : 20가구 * 5,000,000원 = 10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 02. :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 2022. 02. ~ 2022. 12.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 2022. 12.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실적 : 45동(진행 중)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1년	150,000	150,00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안전팀장 김선영	담당자	환경8급 송가은	전화	2855
-----	-----	------------	-----	----------	----	------

(석면피해구제급여) (P - 42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석면피해자 17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90,000	260,000	200,000	60,000	280,000	20,000	
국 비	351,000	234,000	180,000	54,000	252,000	18,000	
도 비	19,500	13,000	10,000	3,000	14,000	1,000	
시 비	19,500	13,000	10,000	3,000	14,000	1,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증가(16명 → 17명) 및 구제급여 지급액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
근거내용	구제급여는 기술원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건강피해 신속 구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석면피해구제급여	301-12 기타보상금	· 석면피해인정자(17명)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지급 280,000,000원 = 280,000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0 : 국도비 보조금 내시
- 2022. 01 ~ 2022. 12 : 매월 피인정자에게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47명에게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2020년	38명에게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2021년	16명에게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04,840	402,529	-	2,311	
2020년	390,000	382,606	-	7,394	
2021년	260,000	222,368	-	37,632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안전팀장 김선영	담당자	환경8급 송가은	전화	2855
-----	-----	------------	-----	----------	----	------

(전국오염원 조사) (P - 42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3월
- 위 치 : 관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전국오염원 조사 중 산업계 오염원 조사를 위한 조사표 인쇄 및 발송 비용으로, 산업계 폐수의 실제 발생·처리·배출 현황 조사를 통해 전국 오염원 조사의 정확성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776	1,134	1,134		1,269	135	
국 비							
도 비							
시 비	776	1,134	1,134		1,269	135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배출업소 증가 및 우편요금 상승

□ 법적근거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3조 제2조 제1항
근거내용	제23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재위임사항) 제1항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물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의2)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환경부 전국오염원조사 지침에 따라 4~5종 폐수배출사업장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대상 사업장에 전국오염원조사 안내문, 조사표, 작성요령 등을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비용 발생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전국오염원 조사	201-02 공공운영비	· 조사표 인쇄·발송료 : 1,410원 * 900개소 = 1,269	1,269	우체국 e-그린우편 이용요금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2021.03. : 관내 폐수배출업소(약 900개소)에 전국오염원 조사표 및 작성방법 우편발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사업기간: 2019.01.~2019.03. - 조사표 및 작성방법(약 12장) 관내 폐수배출업소(약800개소 발송) - 폐수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발생, 배출량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	
2020년	- 사업기간: 2020.01.~2020.03. - 조사표 및 작성방법(약 12장) 관내 폐수배출업소(약840개소 발송) - 폐수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발생, 배출량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	
2021년	- 사업기간: 2021.01.~2021.03. - 조사표 및 작성방법(약 12장) 관내 폐수배출업소(약840개소 발송) - 폐수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발생, 배출량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76	729	-	46	
2020년	776	775	-	1	
2021년	1,134	1,097	-	37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수질오염총량팀장 백혜선	담당자	환경8급 박지수	전화	2281
-----	-----	--------------	-----	----------	----	------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P - 42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환경기초시설 등 17개소
- 사업규모 : 공공하수처리장, 산업폐수배출시설 등 17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의 유량 및 방류수질 감사를 통해 배출 및 삭감부하량 산정자료로 활용하여 이행평가 정확성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24,300	24,300	24,300		23,700	-600	
국 비	24,300	24,300	24,300		23,700	-600	
도 비							
시 비							
기 타							기금

□ 예산 증감사유

- 조사대상 18개소 중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따라 1개소(오수처리시설)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17개소로 감소하여 그에 따른 예산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근거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8-6호)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강수계기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합 계 = 23,700	만원단위절사
배출악감시설 모니터링	207-01 연구용역비	· 인건비 - 책임연구원 : 1인×11월×참여율(2/50)×4,057,348원 = 1,785 - 연구보조원 : 1인×11월×참여율(3/50)×2,079,678원 = 1,373	기준단가 1개월을 22일로 하여 참여율 50% 산정
		· 경비 - 수질분석비 : 154회 × 108,700원 = 16,740 - 유인물비 = 162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3.5% = 702	
		· 이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4% = 830	
		· 부가가치세 : 10% = 2,159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업체선정 및 착수
- 2022.05. ~ 2022.06. : 배출악감시설모니터링 이행중간보고(경기도 수자원본부)
- 2022.12. ~ 2023.01. : 배출악감시설모니터링 이행완료보고(경기도 수자원본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사업기간 : 2019.01.~2019.12. ○ 총 18개소 대상 173회 완료	
2020년	○ 사업기간 : 2020.01.~2020.12. ○ 총 18개소 대상 155회 완료	
2021년	○ 사업기간 : 2021.01.~2021.10. ○ 총 17개소 대상 133회 완료(총 154회, 추진율 86%)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4,839	21,117	-	3,722	낙찰차액
2020년	24,300	20,919	-	3,381	낙찰차액
2021년	24,300	16,610	-	7,69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수질오염총량팀장 백혜선	담당자	환경7급 안희명	전화	2245
-----	-----	--------------	-----	----------	----	------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P - 42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산출내역참조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할당부하량 초과 시 대책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총량관리 추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요구액 (D)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2회 추경 (C)			
계	62,000	62,000	62,000		62,000	0	
국 비	62,000	62,000	62,000		62,000	0	
도 비							
시 비							
기 타							기금

□ 법적근거

근거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근거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오염원 및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및 삭감부하량을 산정하여 우리 시 시행계획 상 할당부하량과 비교평가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며, 한강수계기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이행평가비용	207-01 연구용역비	·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 62,000,000원 = 62,000	

- 용역비 : 오염총량관리 용역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기본금 + 면적 가산금 + 인구 가산금)
 - 기본금 : 42,000천원
 - 면적 및 인구 가산금 : 20,000천원(면적 가산금 5,000천원 + 인구 가산금 15,000천원)

면적	가산금(천원)	인구	가산금(천원)
50km ² 미만	0	1만명 미만	0
50 ~ 300km ² 미만	5,000	1만 ~ 10만명 미만	5,000
		10만 ~ 30만명 미만	10,000
300km ² 이상	10,000	30만 ~ 100만명 미만	15,000
		100만명 이상	20,000

※ 김포시 한강수계 면적 : 195.28km²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2022.02. : 계약체결 및 착공
- 2022.05. : 2021년 이행평가보고서 제출(시→경기도→한강유역환경청)
- 2022.06. ~ 2022.11. : 이행평가 검토, 보완, 수정 진행
- 2022.12. : 이행평가보고서 용역 준공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19.02. : 계약체결 및 착공 ○ 2019.05. : '18.이행평가보고서 제출 ○ 2019.06.~2019.11. : 이행평가 검토 보완, 수정 ○ 2019.12. : 준공	
2020년	○ 2020.02. : 계약체결 및 착공 ○ 2020.05. : '19.이행평가보고서 제출 ○ 2020.06.~2020.11. : 이행평가 검토 보완, 수정 진행 중 ○ 2020.12. : 준공	
2021년	○ 2021.01. : 계약체결 및 착공 ○ 2021.05. : '20.이행평가보고서 제출 ○ 2021.06.~2021.10. : 이행평가 검토 보완, 수정 진행 중 ○ 2021.12. : 준공 예정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2,000	48,696	-	13,304	낙찰차액
2020년	62,000	47,304	-	14,696	낙찰차액
2021년	62,000	38,000	-	24,0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수질오염총량팀장 백혜선	담당자	환경7급 안희명	전화	2245
-----	-----	--------------	-----	----------	----	------

(하천수질 모니터링) (P - 42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김포시 하천 19개 지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관내 주요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분석을 통한 하천수질 현황 파악으로, 김포시 하천 수질 관리 및 각종 물환경 관련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9,966	19,966	19,966		35,200	15,234	
국 비							
도 비							
시 비	19,966	19,966	19,966		35,200	15,23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한강서해권역)에서 지정한 소권역 대표 수질측정지점인 포내천의 법적 측정항목 증가에 따른 분석 수수료의 증가(기존 6개 항목 → 11개 항목)

□ 법적근거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제9조 제22조 제1항
근거내용	-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수질 모니터링 용역을 통한 관내 하천의 수질 상태 및 주변 현황 등 수질변화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각종 물 관련 계획 및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한강서해권역)에서 지정한 소권역 대표 수질측정지점인 포내천 수질검사 실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하천수질 모니터링	201-01 사무관리비	· 측정수수료 - 포내천 수질분석비 = 2,400 : 209,700원/회 * 12회 * 1지점 - 포내천 외 18개 지점 수질분석비 = 26,000 : 122,000원/회 * 12회 * 18개지점 - 출장비 = 1,670 : 139,000원/회 * 12회 · 유인물비 : 7,037원/부 * 5부 = 30 · 일반 관리비 : 3% = 800 · 이윤 : 4% = 1,100 · 부가가치세 : 10% = 3,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2. : 하천수질 모니터링 용역 계획 수립
- 2022.01. : 하천수질 모니터링 용역 계약 체결
- 2022.01.~2022.12. : 매월 하천 수질 상태 및 주변 현황 등 분석결과 보고
- 2022.12. : 하천 수질 모니터링에 따른 연간 수질변화 추이 결과 최종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사업기간 : 2019.01. ~ 2019.12. - 매월 하천 수질 검사를 통한 하천 수질 현황 파악	
2020년	- 사업기간 : 2020.01. ~ 2020.12. - 매월 하천 수질 검사를 통한 하천 수질 현황 파악	
2021년	- 사업기간 : 2021.01. ~ 2021.07. - 매월 하천 수질 검사를 통한 하천 수질 현황 파악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9,966	19,608	-	358	
2020년	19,966	18,504	-	1,462	
2021년	19,966	10,238	-	9,728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위치도 (지방하천 15개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수질오염총량팀장 백혜선	담당자	환경8급 박지수	전화	2281
-----	-----	--------------	-----	----------	----	------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 (P - 42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분뇨 3,200톤/월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관내에서 발생된 분뇨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지급 및 분뇨 처리시설에 반입된 분뇨를 체계적이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19,000	330,009	326,000	4,009	322,700	-7,309	
국 비							
도 비							
시 비	319,000	330,009	326,000	4,009	322,700	-7,309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김포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25조 제49조제1항 ~ 2항
근거내용	제49조1항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주무관청에 사용료를 청구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제49조2항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에서 처리 방류되는 하수량을 계량(검침)하여 산정된 사용료를 익월 7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여, 주무관청은 동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2017.02.10.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분뇨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내에서 발생된 분뇨를 적정 처리하기 위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	307-05 민간위탁금	·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 (3,200톤/월 * 7,568원/톤 * 12월) *1.1 = · 분뇨처리시설 보험료 : 3,000,000원 * 1회 =	319,700 3,000	

※ 참고자료 : 연도별 물가변동비 반영한 사용료 단가

년 도	2019	2020	2021	2022(추정)
사용료단가(원)	7,587	7,454	7,493	7,56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12. : 월별 운영비 지급 및 수시 분뇨처리시설 운영 지도·점검
- 2022.07. : 분뇨처리시설 운영보험 가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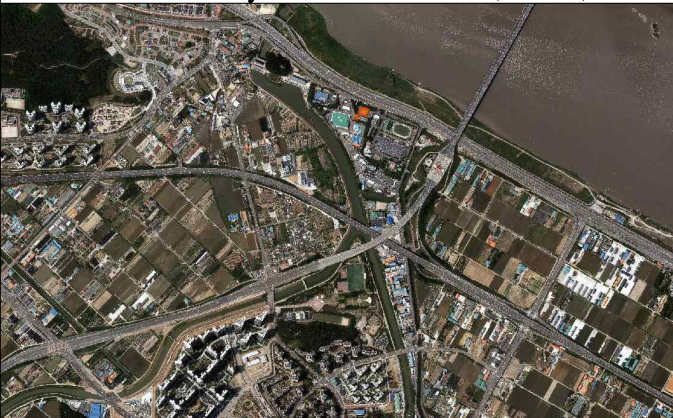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계획 규모 : 3,100톤/월 ○ 예산액 : 350,440,000원 ○ 사업 집행액 : 333,389,320원 ○ 집행률 : 95.1%	
2020년	○ 계획 규모 : 3,200톤/월 ○ 예산액 : 319,000,000원 ○ 현재 집행액 : 307,932,010원 ○ 현재 집행률 : 96.5%	
2021년	○ 계획 규모 : 3,200톤/월 ○ 예산액 : 326,000,000원 ○ 현재 집행액 : 232,864,200원 ○ 현재 집행률 : 71.4%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50,440	333,389	-	17,051	
2020년	319,000	307,932	-	11,068	
2021년	326,000	232,864	-	93,136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10,000 :1 이상 (칼라)	현장사진(칼라)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오수관리팀장 이윤석	담당자	행정7급 윤아라	전화	2251
-----	-----	------------	-----	----------	----	------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 (P - 4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공중화장실
- 사업규모 : 환경과 소관 공중화장실 4개소, 안심비상벨 설치된 공중화장실 1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적기 납부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중심의 편의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중화장실 조성 및 공중화장실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청소 전문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청결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80,600	80,600	80,600		80,600	0	
국 비							
도 비							
시 비	80,600	80,600	80,600		80,600	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교체 등 내부 환경 개선으로 시민중심의 편의와 문화가 공존하는 선진 공중화장실 조성
- 공중화장실 전기, 통신, 수도요금의 적기 납부 및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에 따른 통신비 및 관제 이용료 납부
- 취약지역 공중화장실에 대한 범죄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벨 운영으로 신속대응을 위한 단계별 대응 체계 확립과 주기적인 시설관리로 고장 등 시설 오작동 예방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청소 관리를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 : 208,330원 * 4개소 * 12월 = 10,000 ○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 430,000원 * 4개소 * 12월 = 20,640 ○ 비상벨 통신비 및 관제 이용료 : 30,000원*11개소*12개월 = 3,960 ○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용역 · 인건비 및 보험료 : 2,500,000원 * 12월 = 30,000 · 유류비 : 250,000원 * 12월 = 3,000 · 재료비 : 216,660원 * 4개소 * 12월 = 10,400 · 일반관리비 = 2,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1.~2021.12. :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위탁 계획 수립
- 2022.01.~2022.12. :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적기납부 및 유지관리 및 청소 용역 위탁 진행(매달 용역비 지급)
- 2022.12. :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위탁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집행 내역 : 요금(전기/수도/통신비) 납부 및 시설물 수리비 ○ 예산액 : 34,600,000원 ○ 사업 집행액 : 26,818,760원 ○ 집행률 : 77.52%	
2020년	○ 집행 내역 : 요금(전기/수도/통신비) 납부 및 시설물 수리비 ○ 예산액 : 80,600,000원 ○ 사업 집행액 : 70,086,180원 ○ 집행률 : 86.96%	
2021년	○ 집행 내역 : 요금(전기/수도/통신비) 납부 및 시설물 수리비 ○ 예산액 : 80,600,000원 ○ 사업 집행액 : 59,790,220원 ○ 집행률 : 74.2%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4,600	26,819	-	7,781	
2020년	80,600	70,086	-	10,514	
2021년	80,600	59,790	-	20,81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오수관리팀장 이윤석	담당자	행정9급 최우철	전화	2488
-----	-----	------------	-----	----------	----	------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P - 4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지정 개방화장실 39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개방화장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편의용품 등을 지급하여 시민중심의 편의와 문화가 공존하는 화장실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45,000	45,000	45,000		50,000	5,000	
국 비							
도 비							
시 비	45,000	45,000	45,000		50,000	5,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개방화장실 지정 개소 확대에 의한 편의용품 지급량 증가하여 예산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3조
근거내용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부재로 시민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주요 도로변 및 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방화장실을 지정, 화장실 관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편의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상등급 100,000원*20개소*12월 = 24,000 ○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중등급 80,000원*18개소*12월 = 17,280 ○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하등급 60,000원*1개소*12월 = 720 [추가 지정 및 등급 변동에 따른 비용] ○ 개방화장실 추가지정(중등급 기준) 80,000원*6개소*12월 = 5,760 ○ 등급변동에 따른 비용 = 2,24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12.: 사업진행(개방화장실 물품 화장지, 핸드타올, 세제 등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계획 규모 : 지정 개방화장실 64개소 ○ 예산액 : 60,000,000원 ○ 예상 집행액 : 43,163,370원 ○ 예상 집행률 : 71.94%	
2020년	○ 계획 규모 : 지정 개방화장실 34개소 ○ 예산액 : 45,000,000원 ○ 예상 집행액 : 36,793,250원 ○ 예상 집행률 : 81.76%	
2021년	○ 계획 규모 : 지정 개방화장실 39개소 ○ 예산액 : 45,000,000원 ○ 예상 집행액 : 39,831,110원 ○ 예상 집행률 : 88.51%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0,000	49,067	-	10,933	
2020년	45,000	36,794	-	8,206	
2021년	45,000	39,831	-	5,169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오수관리팀장 이윤석	담당자	행정9급 최우철	전화	2488
-----	-----	------------	-----	----------	----	------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P - 4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개인하수처리시설 21,600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428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수질 오염 사전예방 및 수질환경 개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9,580	9,580	9,580		16,180	6,600	
국 비							
도 비							
시 비	9,580	9,580	9,580		16,180	6,600	
기 타							자부담

□ 법적근거

근거법령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9조제2항 제17조제3항
근거내용	「하수도법」 제7조, 제39조제2항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지도점검용 방제복·안전복·채수통 및 채수물품 구입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내부청소 독려를 위한 우편발송에 따른 우편비 지급
- 지도점검용 핸드폰 사용을 위한 통신비 지급 필요
- 주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한 악취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악취포집과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등 행정조치에 활용

- 측정수수료 : 220,000원/건
- 오염물질 별 측정수수료 : 복합악취(132,000원)
- 출장비(2인), 부속기기, 부가세 포함 반영
- 측정수수료 등 측정비용 단가 근거 : 사단법인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측정수수료, 견적서 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방제복 : 5,000원 * 6명 * 100개 = 3,000 · 채수통 및 채수물품 : 1,500원 * 1,000개 = 1,500 · 악취 측정 : 220,000원 * 30개지점 = 6,600	
	201-02 공공운영비	·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발송 : 400원 * 10,000매 = 4,000 · 민원처리 통신비 : 45,000원 * 2대 * 12월 = 1,08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개인하수처리시설 5,099건 인허가 및 490개소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 가축분뇨배출시설 116개소 인허가 및 130개소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2020년	○ 개인하수처리시설 4,834건 인허가 및 536개소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 가축분뇨배출시설 167건 인허가 및 122개소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2021년	○ 개인하수처리시설 4,375건 인허가 및 606개소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 가축분뇨배출시설 103건 인허가 및 111개소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9,490	8,805	-	685	
2020년	9,580	8,647	-	933	
2021년	9,580	7,787	-	1,793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오수관리팀장 이운석	담당자	환경7급 박장호	전화	2250
-----	-----	------------	-----	----------	----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P - 4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
- 사업규모 :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 8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28,744	155,796	172,700	-16,904	239,190	83,394	
국 비							
도 비							
시 비	128,744	155,796	172,700	-16,904	239,190	83,39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산업단지 4개 사업 17개소, 도시개발사업 4개 사업 16개소에 대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신규 인수 예정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에 따라 시설별 맞춤형 유지관리(준설 및 전기 이입 시설 전기로 납부 등) 시행으로 예산 증가

□ 법적근거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근거내용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개발사업 시행 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유지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 전기시설이 이입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기료 적기 납부를 통해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합 계		239,190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전기료 납부 : 36,000원 × 50개소 × 12월 = 21,600 · 부품 교체비 : 350,000원 × 50개소 = 17,500	
	401-01 시설비	· 인건비 - 중급기술자 : 207,859원 × 1명 × (4회×5일) = 4,157 - 초급기술자 : 190,246원 × 1명 × (21회×5일) = 19,976 - 보 통 인 부 : 141,096원 × 1명 × (17회×5일) = 11,993	
		· 경비 - 수질분석비 : 66,800원 × 80회 × 2회 = 10,688 - 준설비 : 1,553,680원 × 50회 = 77,684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3% = 3,734	
		·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4.5% = 5,770	
		· 폐기물처리비 : 58,000원/톤 × 827톤 = 47,966	
		· 부가세 : 10% = 18,190	만원이하절사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1. :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 의뢰
- 2021.12. : 회계과 용역의뢰 및 업체 선정
- 2022. 1.~2022.12. : 시설 유지관리 용역 및 전기요금 매월 납부
- 2022. 8. : 신규 인수대상 비점오염저감시설 기술진단 용역 완료에 따른 설계변경
- 2022.12. : 시설 유지관리 용역 정산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용역 업체 : 보람환경개발(주) ○ 용역집행액 : 65,112천원 ○ 전기납부액 : 5,318천원 (동력 시설 17개소)	
2020년	○ 용역 업체 : (주)대일이앤지 ○ 용역집행액 : 108,755천원 ○ 전기납부액 : 8,738천원 (동력 시설 18개소)	
2021년	○ 용역 업체 : (주)수정환경플랜트 ○ 용역집행액 : 87,934천원(60% 선금지급) ○ 전기납부액 : 7,500천원 (동력 시설 18개소)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6,950	70,430	-	6,520	
2020년	128,744	117,493	-	11,251	
2021년	155,796	95,434	-	60,362	10.31.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수질오염총량팀장 백혜선	담당자	행정9급 강도연	전화	2259
-----	-----	--------------	-----	----------	----	------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구입) (P - 4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4년 12월
- 사업규모 : 차아염소산칼슘 980kg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제독물자(차아염소산칼슘)를 비축하여 비상사태 시 대규모 오염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4,361	4,361	
국 비							
도 비							
시 비					4,361	4,361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관리 지침」에 따라 제독물자(차아염소산칼슘)의 순환 대체
- 환경정책과-12960(2021.07.20.)호에 따라 2022년 상반기에 추진

□ 법적근거

근거법령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제1항
근거내용	제13조(비축) ①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 지침」시·도지사는 정부비축물자의 구매, 관리 및 순환대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비축물자 구매 및 운용·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정부비축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독물자(차아염소산칼슘)의 순환대체(2021.9월)필요
- 제독물자를 비축하여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대규모 오염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3회추경 요구액	비 고
공 통		○ 단가(원)×인원(명)×개소(회수)×일수(일)×비율(%)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구입	206-01 재료비	· 차아염소산칼슘 구입 : 4,450원 * 980kg =	4,361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2.01. : 정부비축물자 순환대체 계획수립
- 2022.01. : 순환대체 수요조사
- 2022.02. : 정부비축물자 구입 및 보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담당자	환경9급 박미선	전화	2246
-----	-----	------------	-----	----------	----	------

(신규 인수 대상 비점오염저감시설 기술진단 용역) (P - 4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7월
- 사업규모 : 김포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인수대상(8개 사업, 33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우리 부서로 인수예정인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전문 기술진단으로 인수 전 문제점을 사전 보완하여 안정성 제고 및 저감 효율을 사전 검증하고자 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2,000	22,000	
국 비							
도 비							
시 비					22,000	22,0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제65조제2항
근거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사업이 재개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2021.11.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2년 상반기 내 인수예정인 산업단지(양촌산단, 학운2산단, 학운3산단, 학운4산단) 및 도시개발사업(걸포3지구, 향산지구, 풍무2지구, 신곡6지구)의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담당자 전문성 부족에 따라 시설의 정확한 진단의 어려움 발생
- 8개 사업의 비점오염저감시설 33개소에 대하여 설치신고증명서를 바탕으로 시공 적정성을 평가하고 시설 공정별 검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효율화·유지관리 방안 등을 전문 업체의 기술진단으로 사전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합 계 = 22,000	
신규 인수 대상 비점오염저감시설 기술진단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 인건비	
		- 책임연구원 : 1인×6개월×참여율(7/50)×3,245,879원 = 2,727	
		- 연구원 : 1인×6개월×참여율(17/50)×2,488,897원 = 5,077	
		- 연구보조원 : 2인×6개월×참여율(17/50)×1,663,743원 = 6,788	
		· 경비	
		- 출장비 = 3,420	
		- 유인물비 = 240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4.4% = 803	
		· 이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5% = 953	
		· 부가가치세 : 10% = 2,000	총원가: 천원단위 절사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0. : 용역과제 심의자료 제출
 - 2021.11.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 2022.01. : 용역업체 선정
 - 2022.02.~2022.07. : 비점오염저감시설 기술진단 실시
 - 2022.08. : 비점오염저감시설 문제점 보완 및 인수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수질오염총량팀장 백혜선	담당자	환경7급 안희명	전화	2245
-----	-----	--------------	-----	----------	----	------

(김포시 비점오염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 (P - 42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 ~ 2022. 12.
- 사업규모 : 김포시 전체 유역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강우 시 유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비점오염원의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비점오염원 특성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40,000	14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40,000	140,0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2021.11.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 종합대책 수립(환경부)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사후적 관리체계(저감시설 설치)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로 전환
-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한강수계 목표수질 강화 및 2020년 김포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한강수계 오염원 배출량 중 비점오염원이 85% 차지
 - 김포시 총 오염원 배출량 : 점오염원 973kg/일(15%) + 비점오염원 5,308kg/일(85%)
- 건가·우기 시 하천 수질검사 및 유량 조사를 통해 비점오염물질의 배출특성과 유출량 조사
- 관내 하천의 유역환경 및 유출특성 조사를 통해 우선관리지역 선정과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마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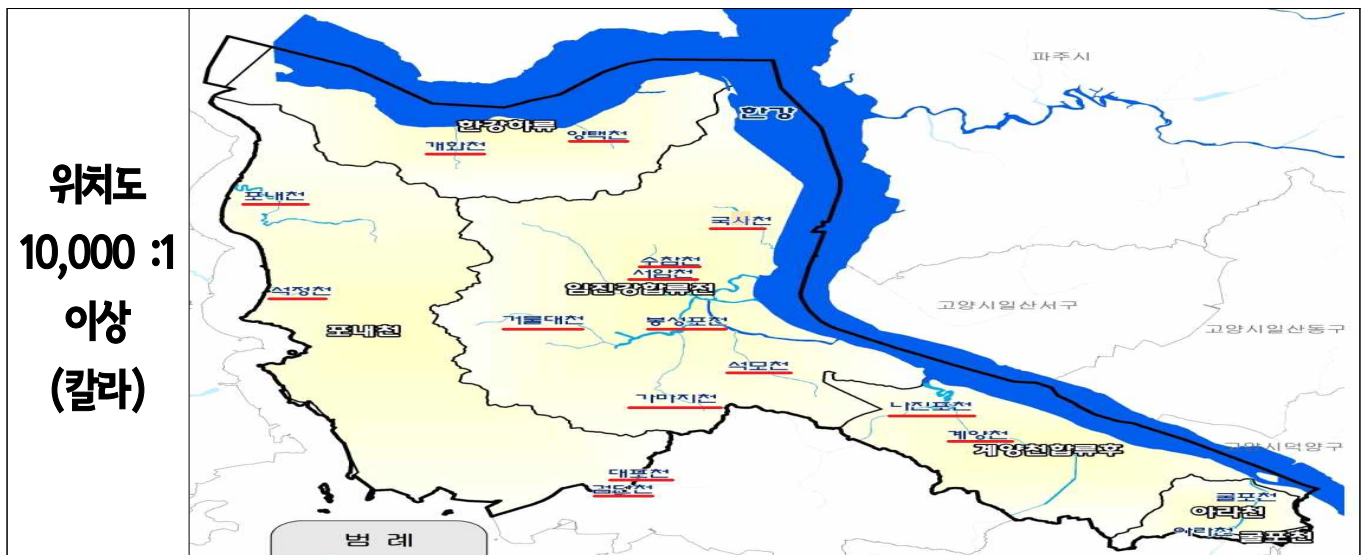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합 계 =	140,000	
김포시 비점오염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 인건비 - 책임연구원 : 1인×11개월×참여율(4/50)×3,245,879원 =	2,856	기준단가 1개월을 22일로 하여 참여율 50% 산정
		- 연구원 : 4인×11개월×참여율(13/50)×2,488,897원 =	28,473	
		- 연구보조원:5인×11개월×참여율(16/50)×1,663,743원 =	29,282	
		· 경비 - 여비 =	4,455	
		- 회의비 : 100,000원×2인 =	200	
		- 유인물비 =	1,469	
		- 수질분석비 : 264회×190,300원(7개 항목) =	50,239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3.6% =	4,211	
		· 이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5% =	6,059	
		· 부가가치세 : 10% =	12,720	총원가 : 만원단위 절사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2. : 제3차(2021~2025)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환경부)
- 2020.12. : 2020년 김포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제출(김포시→경기도→환경부)
- 2021.09. : 김포시 비점오염 관리방안 추진계획 수립
- 2021.10. : 용역과제 심의자료 제출
- 2021.11.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요청
- 2022.02. : 용역착수

□ 위치도 (지방하천 15개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수질오염총량팀장 백혜선	담당자	환경7급 안희명	전화	2245
-----	-----	--------------	-----	----------	----	------

(환경오염검사) (P - 42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환경오염검사 2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통해 수질환경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4,568	3,144	3,144		3,100	-44	
국 비							
도 비							
시 비	4,568	3,144	3,144		3,100	-4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도시 재개발·재정비 촉진 사업 및 석면 자재 5천㎡ 이상 건축물 해체 사업장 석면비산 정도 측정

□ 법적근거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근거내용	제28조제4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 및 다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재개발사업 및 재정비사업 지구에서 석면해체 시 지자체장은 석면비산을 측정하여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증진하여야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환경오염검사	201-01 사무관리비	· 석면비산 농도 측정검사 - 석면해체작업장 석면비산 측정 수수료 : 1,550,000원 * 2회 = 3,1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2022. 12. : 석면해체작업장 점검 및 석면비산농도 측정, 결과 공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석면해체작업장 석면비산농도 측정 : 3회	
2021년	석면해체작업장 석면비산농도 측정 : 2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4,568	4,558	-	10	-
2021년	3,144	2,728	-	416	2021.10.31. 현재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안전팀장 김선영	담당자	환경8급 송가은	전화	2855
-----	-----	------------	-----	----------	----	------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관리) (P - 42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단속차량 3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등 유지관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41,000	56,000	6,000	50,000	56,840	840	
국 비	6,000	8,000		8,000	6,000	-2,000	
도 비							
시 비	35,000	48,000	6,000	42,000	50,840	2,84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단속차량 증대에 따라 연료비 (유류비+전기충전비) 예산 책정 필요
- 점차 증가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계획적인 지도점검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차량구매 필요

□ 법적근거

근거법령	「하수도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39조 제2항 제4조
근거내용	제39조 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실시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등 유지관리에 따른 유류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수리비 등 지급
- 관내 약 2만여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담당인력 증원(1명→3명)이 되었고, 이에 지도점검반 2개조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관용차량 증차 필요
-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외에 인허가 시 현장준공검사(3명)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지도점검(2명) 등 출장을 위한 관용차량 부족(현재 보유 1대, 회계과 차량 지속배차 1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201-01 사무관리비	· 고속도로통행료(하이패스) : 300,000원 * 3대 = 900	
	201-02 공공운영비	· 연료비 : 3,000,000원 * 1대 + 120,000 * 2대 = 3,240 ·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 900,000원 * 3대 = 2,7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승용전기차(니로 전기차 노블레스) = 50,000	신규 구입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12. : 단속차량 유류비 지급 및 유지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차량 유류비 및 하이패스 요금 지급 ○ 차량 수리비 지급	
2020년	○ 차량 유류비 및 하이패스 요금 지급 ○ 차량 수리비 지급	
2021년	○ 차량 유류비 및 하이패스 요금 지급 ○ 차량 수리비 지급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500	5,917	-	1,583	
2020년	41,000	38,032	-	2,958	
2021년	56,000	53,024	-	2,976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담당자	환경8급 박미선	전화	2246
-----	-----	------------	-----	----------	----	------

(환경민원 비상근무 운영) (P - 42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피복 및 안전화 구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환경민원 비상근무의 효율성과 직원의 안전확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2회 추경 (C)			
계	9,760	9,760	9,760		10,480	720	
국 비							
도 비							
시 비	9,760	9,760	9,760		10,480	72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 제3항 [별표3]
근거내용	제19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③ 수시지도·점검은 별표3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해당 년도 정기지도점검계획 횟수의 3분의 1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 [별표3] 수시 지도·점검 기준 1. 가름, 장마철, 추석·설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2. 환경오염관련 민원 다발지역, 오염우심지역 및 취약지역 3.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생략)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18.9.27.부터 운영되고 있는 환경민원 비상근무의 현장대응 시 근무복 착용을 통해 상대방에게 시소속 공무원임을 인지시키고, 특히 야간근무 시 시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환경민원 비상근무 운영	201-02 사무관리비	○ 환경민원비상근무 피복비 · 동절기 피복 : 100,000원 * 27명 = 6,480 · 하절기 피복 : 70,000원 * 27명 = 2,700 · 안전화 : 70,000원 * 27명 = 1,890 ○ 환경민원비상근무 급식비 · 급식비 : 8,000원 * 2명 * 250일 = 4,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9.27.~계속 : 환경민원비상근무 운영
- 2022.01. : 동절기 피복 및 안전화 구입
- 2022.06 : 하절기 피복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2021년	○ 환경민원비상근무 운영 - 운영기간 : 2018.09.27.~계속 - 운영시간 : 평일 18:00~22:00(동절기 18:00~21:00), 휴일 09:00~17:00 - 운영방법 : 2인 1조 근무 - 근무대상 :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전직원 - 근무내용 : 환경민원처리(악취,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등)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9,760	9,583	-	177	
2021년	9,760	8,108	-	1,652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담당자	행정6급 곽혜경	전화	2258
-----	-----	------------	-----	----------	----	------

(생활환경 점검 및 관리) (P - 42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규모 : 수질오염물질 검사 10회, 측정기기 점검 2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수질오염물질 검사비용과 측정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400	1,400		1,300	-100	
국 비							
도 비							
시 비		1,400	1,400		1,300	-1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오염 검사를 통해 시설 이용자들의 물놀이 안전 예방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6호에 근거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빗공해 측정기기 교정검사를 의뢰하여 장비 신뢰성 확보

□ 법적근거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제4항 제6조 제1항
근거내용	④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19의2 - 유리잔류염소 수질기준 : 0.4~4.0mg/L)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빗공해 공정시험기준 - 휘도계, 조도계는 사용 전에 최초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교정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에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오염 측정을 통해 관리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한 수질환경 조성을 하고자 함.
- 빗공해 측정기기 정기검사 및 교정검사 하여 장비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빗공해 측정을 통해 관내 인공조명 관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생활환경 점검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 수질오염물질 검사 수수료 : 20,000 * 10회 = 200 ○ 생활환경 측정기기 유지관리 · 휘도계 점검 및 교정 수수료 = 880 · 조도계 점검 및 교정 수수료 = 22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생활환경 측정기기(휘도계,조도계) 점검 및 교정 실시
- 2022. 07. ~ 2022. 09.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실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안전팀장 김선영	담당자	행정7급 오윤화 환경8급 송가은	전화	2257 2855
-----	-----	------------	-----	----------------------	----	--------------

(배출시설인허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P - 42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4월 ~ 11월
- 사업규모 : 기간제근로자 1인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22,261	22,478	22,478		21,477	-1,001	
국 비							
도 비							
시 비	22,261	22,478	22,478		21,477	-1,001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 제5항
근거내용	제3조 제5항 계절적인 수요나 일시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4.6.11.)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각종 인허가 대장 등 정확하고 신속한 전산입력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빠르고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배출시설인허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본급 : 10,860원*8시간*1명*167일 = 14,509 · 유급휴일수당 : 10,860원*8시간*1명*46일 = 3,997 · 명절휴가비 : 500,000원*1명*1회 = 500 · 4대보험료 : 19,005,440원*1명*13% = 2,47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3.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22.04.~2022.11.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약 및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계획규모 : 기간제근로자 1인 - 예산액 : 19,657,000원 - 집행액 : 17,764,000원 - 집행률 : 90.37%	
2020년	- 계획규모 : 기간제근로자 1인 - 예산액 : 22,261,000원 - 집행액 : 20,486,630원 - 집행률 : 92.03%	
2021년	- 계획규모 : 기간제근로자 1인 - 예산액 : 22,478,000원 - 집행액 : 17,943,440원 - 집행률 : 79.82%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9,657	17,764	-	1,893	
2020년	22,261	20,487	-	1,774	
2021년	22,478	17,943	-	4,535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인허가팀장 이수영	담당자	환경9급 권정현	전화	2183
-----	-----	-------------	-----	----------	----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 (P - 42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어린이활동공간 1,12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유해 인자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친환경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정 (C)			
계					8,300	8,300	
국 비							
도 비							
시 비					8,300	8,300	
기 타							자부담

□ 법적근거

근거법령	환경보건법	제23조
근거내용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어린이활동공간 중 주택단지 내에 소재한 어린이 모래놀이터(26개소)를 중점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중금속(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 기생충(란) 검사 실시
 - ※ 어린이활동공간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 어린이집(보육실), 키즈카페 등
- 점검항목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측정 시행으로 명확하고 투명한 지도점검 실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	201-01 사무관리비	· 중금속 등 검사수수료 : 319,000원*26개소 ≒ 8,3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2. 01. : 김포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계획 수립
- 2022. 02. ~ 2022. 11. : 어린이 활동공간 자체점검 실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안전팀장 김선영	담당자	행정7급 오윤화	전화	2257
-----	-----	------------	-----	----------	----	------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P - 42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김포시 관내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등을 위한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조성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함으로써 기업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000,000				2,000,000	2,0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000,000				2,000,000	2,000,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19.12.)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체 스스로 환경관리체계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환경정책기본법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6조 제2조
근거내용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 관리체계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조(기금의 설치) 김포시장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을 제정하고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을 통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 등 중소기업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 확보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702-01 기금전출금	·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 2,000,000 -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200,000,000원 * 4개소 = 800,000,000원 - 위원회 참석수당 80,000원 * 4명 * 4회 = 1,280,000원 - 환경경영체제 인증 등 보조금 지원 5,000,000원 * 18개소 = 88,570,000원 - 환경보전기금 예치금 = 1,110,150,000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12. :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 2020.02. ~ 11. : 2020년 제1~4회 환경보전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 2021.03. : 2021년 1회 환경보전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 2021.03. ~ 11. : 2021년 환경경영체제 인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2021.10. : 2022년 2회 환경보전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 2022.01. : 2022년도 환경보전기금 사업 시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환경보전기금 1,000,000,000원 조성	
2021년	해당없음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해 기금 미출연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1,000,550	90	1,000,460	1,000,460	예금이자 포함
2021년	1,000,460	51,920	948,540	948,54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김기수	담당자	행정6급 곽혜경	전화	2258
-----	-----	------------	-----	----------	----	------

2022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기후에너지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P - 42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산출내역 참조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09,144	82,474	109,144	-26,670	82,474		
국 비							
도 비							
시 비	109,144	82,474	109,144	-26,670	82,474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제1항
근거내용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 사무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및 허가 취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시군종합평가 지표)향상을 위한 부과·징수 및 체납 고지서 비용
- 시민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가상계좌, ARS 결제, 자동이체 시스템 운영 수수료를 적기 납부하기 위함
- G-banking서비스 문자안내 및 전자압류시스템을 이용한 문자독촉 및 예금압류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	201-01 사무관리비	· 정기분/연납분 고지서 : 60원 * 20,000건 * 2회 = 2,400 · 체납분 고지서 : 60원 * 43,000건 * 3회 = 7,740 · 압류통지서 및 환급안내문 : 60원 * 7,500건 * 2회 = 900 · 현수막 홍보 : 660,000원 * 2회 = 1,320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서비스 수수료	201-01 사무관리비	· 가상계좌 수수료 : 80원 * 20,000건 * 1년 = 1,600 · ARS결제시스템 수수료 : 100원 * 1,000건 * 1년 = 100 · 우편물 반송정보 수수료 : 30원 * 35,000건 * 1년 = 1,050 · 자동이체 지로수수료 : 50원 * 1,000건 * 1년 = 50 · 자동이체 송수신 수수료 : 22,000원 * 12회 = 264 · 전자압류시스템 이용료 : 2,550,000원 * 1년 = 2,550 · G-banking 문자서비스 사용료 : 100,000원 * 1년 = 100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요금	201-02 공공운영비	· 정기분/연납분 고지서 : 350원 * 20,000건 * 2회 = 14,000 · 체납분 고지서 : 350원 * 43,000건 * 3회 = 45,150 · 압류통지서 및 환급안내문 : 350원 * 7,500건 * 2회 = 5,2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연납분(1차) 고지처리 및 발송
- 2022.03. : 연납분(2차) 및 정기분(1기분) 고지처리 및 발송
- 2022.05. : 정기분(1기분) 독촉분 고지서 발송 및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 발송
- 2022.06. : 정기분(1기분) 체납자 압류 및 압류통지서 발송
- 2022.07. :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 2차 발송
- 2022.09. : 정기분(2기분) 고지처리 및 발송
- 2022.11. : 정기분(2기분) 독촉분 고지서 발송 및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 3차 발송
- 2022.12. : 정기분(2기분) 체납자 압류 및 압류통지서 발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부과		징수		체납		
	54,961건	2,402,448	50,880건	2,231,003	4,081건	171,445	
2020년	부과		징수		체납		
	44,798건	1,946,102	39,734건	1,732,551	5,064건	213,551	
2021년	부과		징수		체납		10.31까지 추진실적
	34,638건	1,483,915	27,579건	1,205,029	7,059건	278,886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18,144	101,815	-	16,329	
2020년	109,144	93,604	-	15,540	
2021년	82,474	48,983	-	33,491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대기팀장 이한재	담당자	공무직 박주희	전화	4079
-----	--------	------------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P - 42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전기승용차 1,120대(민간 1,112대, 관용 8대), 전기화물차 600대(민간 599대, 관용 1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대기오염물질 감소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 예산요구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2,068,040	27,149,480	18,087,500	9,061,980	24,338,000	-2,811,480	
국 비	7,523,640	17,281,980	11,596,000	5,685,980	15,058,000	-2,223,980	
도 비	1,201,200	1,488,000		1,488,000		-1,488,000	
시 비	3,343,200	8,379,500	6,491,500	1,888,000	9,280,000	900,5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관용차 보급에 따른 기후에너지과 국비 감소 : -62,000천원 (관용차 구매부서로 국비보조금 배정)
 - 전기승용(8대) : 48,000천원 / 전기화물(1대) : 14,000천원
- 전기버스 물량 미배정에 따른 보조금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근거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18.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0.1.1.이후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차량구매 시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 제도 강화
- 2020년 전기화물차 출시로 물류회사, 개인영업자 등 경유차에 대한 전환 및 구매 폭 확대
-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간,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를 확대 보급하여 우리시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전기승용차 1,120대 - 10,000천원*1,120대 = 11,200,000천원 - 6,000천원*8대(관용) = 48,000천원 · 전기화물차 600대 - 22,000천원*600대 = 13,200,000천원 - 14,000천원*1대(관용) = 14,000천원	· 전기승용(민간) - 국 6,000/대 - 시 4,000/대 · 전기승용(관용) - 국 6,000/대 - 시비보조없음 · 전기화물 - 국 14,000/대 - 시 8,000/대 · 전기화물(관용) - 국 14,000/대 - 시비보조없음 ※차종별 차등지급 (정액 보조)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02. : 보급계획 수립
- 2022.03.~2022.12. :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 및 접수 실시, 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전기승용차 203대 보급, 전기버스 36대 보급	
2020년	○ 전기승용차 303대 보급, 전기화물 63대, 전기버스 44대 보급	
2021년	○ 전기승용차 524대, 전기화물 329대, 전기버스 10대 보급 완료 ○ 잔여대수 진행 중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977,000	6,322,750	-	654,250	
2020년	12,068,040	11,217,530	603,810	246,700	
2021년	27,753,290	15,299,450	2,560,000	9,893,84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이한재	담당자	환경9급 이미현	전화	4078
-----	--------	------------	-----	----------	----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P - 42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전기이륜차 77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으로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
- 예산요구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20,800	181,800	185,400	-3,600	138,600	-43,200	
국 비	100,400	90,900	92,700	-1,800	69,300	-21,600	
도 비							
시 비	110,400	90,900	92,700	-1,800	69,300	-21,6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전기이륜차 사업량 감소(101대 -> 77대)에 따른 보조금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근거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민간에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이륜차를 보급하여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도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전기이륜차 77대 - 1,800천원*77대 = 138,600천원	= 138,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02. : 보급계획 수립
- 2022.02.~2022.12. :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 및 접수 실시, 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전기이륜차 43대 보급	
2020년	○ 전기이륜차 90대 보급	
2021년	○ 전기이륜차 69대 보급 완료, 잔여대수 보급 진행 중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00,000	99,330	-	670	
2020년	220,800	209,700	-	11,100	
2021년	181,800	172,310	-	9,49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이한재	담당자	환경9급 이미현	전화	4078
-----	--------	------------	-----	----------	----	------

(수소차 보급 사업) (P - 42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수소차 118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탄소중립 및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 구매 지원으로 대기질 개선
- 예산확보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00,000	3,422,500	3,445,000	-22,500	3,835,000	412,500	
국 비	270,000	2,362,500	2,385,000	-22,500	2,655,000	292,500	
도 비							
시 비	120,000	1,060,000	1,060,000		1,180,000	120,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수소충전소 설립에 따라 2022년 수소차 보급 확대(106대→118대)에 따른 국도비, 지방비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근거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간에 수소차를 보급하여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수소차 보급 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수소차 118대 - 32,500천원*118대 = 3,835,000천원 = 3,83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02. : 보급계획 수립
- 2022.02.~2022.12. :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 및 접수 실시, 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수소차 2대 보급	
2020년	○ 수소차 12대 보급	
2021년	○ 수소차 41대 보급 완료 및 잔여 대수 보급 진행 중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5,000	65,000	-	-	
2020년	390,000	390,000	-	-	
2021년	3,422,500	1,365,000	-	2,057,5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이한재	담당자	환경9급 이미현	전화	4078
-----	--------	------------	-----	----------	----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P - 43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어린이통학용 LPG차 50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80,000	280,000	175,000	105,000	350,000	70,000	
국 비	90,000	140,000	87,500	52,500	175,000	35,000	
도 비							
시 비	90,000	140,000	87,500	52,500	175,000	35,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사업량 증가(40대 -> 50대)에 따른 보조금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제1항
근거내용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 “생략”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하여 노후경유차량을 LPG차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 및 미세먼지로부터 대기질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50대 - 7,000천원*50대= 350,000천원	= 35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계획 수립
- 2022.02.~2022.12. :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 및 접수 실시, 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어린이통학용 LPG차 7대 보급 ※ 2019년 신규사업	
2020년	○ 어린이통학용 LPG차 7대 보급완료	
2021년	○ 어린이통학용 LPG차 20대 보급 완료 및 잔여대수 보급 진행 중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5,000	35,000	-	-	
2020년	178,000	43,000	-	135,000	
2021년	280,000	140,000	77,000	63,0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이한재	담당자	환경9급 이미현	전화	4078
-----	--------	------------	-----	----------	----	------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P - 43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천연가스차량 대형 4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천연가스 사용하는 친환경 버스 보급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44,000	216,000	204,000	12,000	48,000	-168,000	
국 비	72,000	108,000	102,000	6,000	24,000	-84,000	
도 비							
시 비	72,000	108,000	102,000	6,000	24,000	-84,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환경부 보조사업 연장평가(18 '21) 결과에 따라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축 [2022년 대형 11대 예정→대형 4대 예산으로 감축]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16843(2021.10.20.)호와 관련하여 2022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가내시분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근거내용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관내 친환경버스 보급률을 향상시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CNG 버스 대형 : 12,000,000원*4대 = 48,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9. : 관내 운수업체 수요 파악
- 2022.02. :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2.03. ~ 예산 소진 시 : 사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계 획 규 모 : 대형 32대, 중형 28대 ○ 지 원 실 적 : 대형 26대, 중형 4대 ○ 예 산 액 : 580,000,000원 ○ 사업 집행액 : 340,000,000원	
2020년	○ 계 획 규 모 : 대형 12대 ○ 지 원 실 적 : 대형 12대 ○ 예 산 액 : 144,000,000원 ○ 사업 집행액 : 144,000,000원	
2021년	○ 계 획 규 모 : 대형 18대 ○ 지 원 실 적 : 대형 18대 ○ 예 산 액 : 216,000,000원 ○ 사업 집행액 : 216,000,000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80,000	340,000	-	240,000	
2020년	144,000	144,000	-	0	
2021년	216,000	216,000	-	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이한재	담당자	공무직 박주희	전화	4079
-----	--------	------------	-----	---------	----	------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P - 43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천연가스차량 407대 및 기준대수 미만 천연가스충전소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천연가스 버스 충전소간 공차운행 보조금 및 기준대수 이하 고정식 충전소 보조금 지원으로 친환경 버스 보급 확대를 도모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444,600	297,480	297,480		414,400	116,920	
국 비	222,300	148,740	148,740		207,200	58,460	
도 비							
시 비	222,300	148,740	148,740		207,200	58,46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천연가스버스운영에 따른 차고지에서 충전소사이 공차운행 연료비 보조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16843(2021.10.20.)호와 관련하여 2022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가내시분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근거내용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후변화 대응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보급에 따른 충전소 간 공차 운행 및 기준대수 이하 충전하는 고정식 충전소 보조금 지원으로 친환경차량 확대 보급사업의 참여 유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연료비 보조금 : 700,000원 * 407대 * 1년 = 284,900 · 충전소 보조금 : 129,500,000원 * 1개소 * 1년 = 129,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2. : 신청 접수
- 2022.02. ~ 2022.12. : 월별 신청 및 사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예 산 액 : 444,000,000원 ○ 사업 집행액 : 411,257,380원 ○ 집 행 률 : 92.63%	
2020년	○ 예 산 액 : 444,600,000원 ○ 사업 집행액 : 325,200,970원 ○ 집 행 률 : 73.14%	
2021년	○ 예 산 액 : 297,480,000원 ○ 사업 집행액 : 247,983,600원 ○ 집 행 률 : 83.36%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44,000	411,257	-	32,743	
2020년	444,600	325,201	-	119,399	
2021년	297,480	247,964	-	49,516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이한재	담당자	공무직 박주희	전화	4079
-----	--------	------------	-----	---------	----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운영관리) (P - 43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감암로 125 등 3개소
- 사업규모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3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김포시에서 직접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전기차 충전 편의성 증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0,200	13,800	13,800		13,800		
국 비							
도 비							
시 비	10,200	13,800	13,800		13,8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관리 및 처분)
근거내용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시 소유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3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급속충전기 수선유지비 : 600,000원 * 3개소 = 1,800	
	201-02 공공운영비	· 급속충전기 위탁관리비 : 500,000원 * 12월 = 6,000	
		· 급속충전기 전기 및 통신요금 : 500,000원 * 12월 = 6,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2.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3대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 계약 체결(전기차 충전사업자)
 - 2022.01.~2022.12.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3대 유지·관리 실시
- ※ 설치지점

시설위치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	차량등록사업소
위치	김포시 모담공원로 170	김포시 모담공원로 170	김포시 감암로 125
시설사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3대에 대한 시스템변경 등 수리 수선 실시	
2020년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3대 유지관리	
2021년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3대 유지관리 실시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000	3,927	-	73	
2020년	10,200	7,365	-	2,835	
2021년	13,800	8,700	-	5,1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이한재	담당자	환경9급 이미현	전화	4078
-----	--------	------------	-----	----------	----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P - 43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조기폐차 1,460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640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후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을 도모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4,396,334	11,945,000	11,615,000	330,000	5,433,500	-6,511,500	
국 비	7,888,770	6,783,000	6,585,000	198,000	3,079,600	-3,703,400	
도 비	1,079,725	597,250	232,300	364,950	271,675	-325,575	
시 비	5,427,839	4,564,750	4,797,700	-232,950	2,082,225	-2,482,525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기 사업 진행에 따라 관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량 감소로 인한 감액(2021.10.31.기준 5,129대)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근거내용	제58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0.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인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필요
- 2022년 말까지 관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저공해조치 완료 목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성능확인검사 - 37,400원 * 935대 = 35,000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노후차량 조기폐차 - 1,600,000원 * 1,460대 = 2,336,000 · 매연 저감장치 장착 - 3,300,000원 * 400대 = 1,320,000 · 건설기계 엔진교체 - 16,500,000원 * 75대 = 1,237,500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 11,000,000원 * 5대 = 55,000 · LPG 화물차 신차구입 - 3,000,000원 * 150대 = 450,00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01.~2022.02.. : 사업 공고 및 언론홍보
- 2022.01. ~ 예산 소진 시 : 사업 집행 및 보조금 교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조기폐차 3,060대, 저감장치 850대	
2020년	○ 조기폐차 2,231대, 저감장치 1,34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58대 등	
2021년	○ 조기폐차 1,352대, 저감장치 391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99대 등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3,210,780	10,140,570	-	3,070,210	
2020년	14,396,334	12,082,779	-	2,313,555	
2021년	11,945,000	4,935,235	-	7,009,765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환경8급 김소현	전화	4082
-----	--------	--------------	-----	----------	----	------

(운행차 저공해조치 및 배출가스검사 안내) (P - 43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안내문 14,105부,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28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및 계절관리제 안내문 발송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시민의 피해 최소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6,000	10,582	10,582	-	13,174	2,592	
국 비							
도 비							
시 비	6,000	10,582	10,582	-	13,174	2,592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홍보대상 증가로 인한 안내문 발송 요금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
근거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계절관리제등 운행제한제도와 저공해조치 신청 홍보물 개별발송 필요
-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저공해 조치 명령서 발부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이행 지원 안내를 위한 예산 필요
- 저감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사후점검 진행시 홍보와 안내물 필요
- 우편미수취 시민을 위한 현수막 홍보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운행차 저공해조치 및 배출가스 검사 안내	201-01 사무관리비	·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점검 안내 및 홍보물 : 25,000원 * 3개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홍보현수막 제작 및 게시 : 50,000원 * 25개 =	75 1,250	
	201-02 공공운영비	· 5등급 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안내 : 840원 * 10,105부 = · 저감장치 장착차량 사후점검 안내 : 840원 * 4,000부 =	8,489 3,36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공고 및 언론홍보 실시, 계절관리제 홍보 현수막 제작 및 게시
- 2022.02.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안내문 10,105부 발송
- 2022.05. : 저감장치 장착차량 사후점검 홍보물 제작 및 안내문 4,000부 발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안내문 발송 15회 ○ 토너 및 용지 구입	
2020년	○ 안내문 발송 6회 ○ 사후점검 진행 물품 구입	
2021년	○ 안내문 발송 7회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400	6,344	-	2,056	
2020년	6,000	5,883	-	117	
2021년	10,582	1,883	-	8,669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환경8급 김소현	전화	4082
-----	--------	--------------	-----	----------	----	------

(조기폐차 업무대행) (P - 43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조기폐차 1,460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전문적인 업무처리로 조기폐차 행정처리 능력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24,000	40,000	40,000	-	14,600	-25,400	
국 비							
도 비							
시 비	24,000	40,000	40,000	-	14,600	-25,4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조기폐차 사업량이 1,460대로 감소함에 따른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4항
근거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업무를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함에 따라 소요되는 관리비를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조기폐차 업무대행	201-01 사무관리비	·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 10,000원 * 1,460대	14,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추진계획수립
- 2022.03. :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3,000대 분량 24,000천원	
2020년	○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3,000대 분량 24,000천원	
2021년	○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3,000대 분량 30,000천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4,000	24,000	-	-	
2020년	24,000	24,000	-	-	
2021년	40,000	30,000	-	10,000	10.31.기준 실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환경8급 김소현	전화	4082
-----	--------	--------------	-----	----------	----	------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P - 43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1,064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증기간이 경과한 저감장치 및 동시저감장치 장착 차량의 사용상 효율을 증진하고 탈거한 저감장치의 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저공해화 사업의 효과를 지속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63,362	60,000	60,000	60,000	88,000	28,000	
국 비	31,681	30,000	30,000	0	44,000	14,000	
도 비	4,752	4,500	3,000	1,500	6,600	2,100	
시 비	15,911	25,500	27,000	-1,500	37,400	11,9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인한 저감장치 장착 차량 증가에 따른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7항 제79조의6 제1 내지 3호
근거내용	제58조 제7항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6.12.27> 제79조의 6 법 제58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 1. 보증기간이 경과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클리닝, 무상점검, 콜모니터링 및 그 밖의 사후관리 2. 재사용·재활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선별 및 관리 3.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회수·보관·매각 등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동시저감장치의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저공해조치 차량의 효율을 증진
- 탈거, 반납한 장치의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에 기여
- 반납한 장치 및 엔진의 선별, 매각을 통해 저감장치 관리의 통합성 확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클리닝 150,000원 * 485대 = 72,750 ·반납운송비 6,000원 * 273대 = 1,638 ·재사용장치클리닝 150,000원 * 30대 = 4,500 ·창고보관 및 관리비 30,950원 * 275대 ≈ 8,512 ·요소수 주입비 600,000원 * 1대 = 6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향후계획

- 2022.03. : 보조금 지급
- 2022.03.~2022.12. : 성능유지 사업 진행
- 2022.12. : 보조금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보증기간 경과 차량 516대 정비	
2020년	○ 보증기간 경과 차량 303대 정비	
2021년	○ 보증기간 경과 차량 317대 정비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7,437	37,437	-	-	
2020년	63,362	35,502	-	27,860	
2021년	60,000	60,000	-	-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환경8급 김소현	전화	4082
-----	--------	--------------	-----	----------	----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사업 추진) (P - 43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사업규모 : 기간제근로자 4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미세먼지(비산먼지 등) 발생사업장 점검 및 단속지원, 매연 및 공회전 단속 지원, 미세먼지 대책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장·공사장 불법배출 등 미세먼지 배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우리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94,904	104,952	104,952		100,480	-4,472	
국 비	47,452	52,476	52,476		50,240	- 2,236	
도 비	23,726	26,238	26,238		25,120	- 1,118	
시 비	23,726	26,238	26,238		25,120	- 1,118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16684(2021. 10. 18.)호 2022년도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가내시분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8조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지원
 - 미세먼지 배출원(공장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 예방 및 감시
 -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및 계절관리제 기간 사업장 및 공사장 점검업무 지원
 - 기타 미세먼지 측정 및 미세먼지 대책 홍보 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지원(인건비) - 기 본 급 : 1,832,000원 * 4명 * 8월 = 58,624,000원 - 정액급식비 : 130,000원 * 4명 * 8월 = 4,160,000원 - 사 회 보 험 : 200,000원 * 4명 * 8월 = 6,400,000원 = 80,224 - 명절 휴가비 : 800,000원 * 4명 * 8월 = 3,200,000원 - 출 장 비 : 220,000원 * 4명 * 8월 = 7,040,000원 - 피 복 비 : 200,000원 * 4명 = 800,000원	
	201-01 사무관리비	·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지원(관리비) - 차량임차료 : 1,000,000원 * 2대 * 8월 = 16,000,000원 = 18,256 - 기 타 경 비 : 70,500원 * 4명 * 8월 = 2,256,000원	
	201-02 공공운영비	·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지원(운영비) - 연 료 비 : 80,000원 * 2대 * 8월 = 1,280,000원 = 2,000 - 통 신 비 : 40,000원 * 8월 = 320,000원 - 운 영 경 비 : 50,000원 * 8월 = 400,000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8. : 계획 수립
- 2022.09. :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2.10. ~ 2023.05. :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명사이월	
2020년	○ 민간점검원 운영(기간제근로자 4명, 사업기간 2020년1월~6월, 10월~12월)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70회,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1,208회,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업무지원 등	
2021년	○ 민간점검원 운영(기간제근로자 4명, 사업기간 2021년1월~5월, 10월~12월)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164회,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1,391회,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업무지원 등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7,200	-	67,200	-	명사이월
2020년	162,104	89,464	-	72,640	-
2021년	104,952	69,628	-	35,324	10.31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환경7급 이순복	전화	4080
-----	--------	--------------	-----	----------	----	------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센터 운영) (P - 43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신고포상금 15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민간감시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해 환경보전에 참여 의식 확산 및 민간에 의한 배출가스 감시기능 강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500	1,500	1,500		1,500		
국 비							
도 비							
시 비	1,500	1,500	1,500		1,5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5조
근거내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포상금의 지급)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제5조(포상 및 지급기준)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시민 참여를 통한 배출가스 감시 기능 강화 및 미세먼지 저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센터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 10,000원 * 150건 = 1,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12. :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환경과 사무실 내외 안내판 부착 : 200,000원 -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 114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 : 1,140,000원	
2020년	-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 112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 : 1,410,000원	
2021년	-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 44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 : 750,000원	10.31.일 기준 집행현황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700	1,340	-	360	
2020년	1,500	1,410	-	90	
2021년	1,500	750	-	750	10.31.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행정9급 이호중	전화	4083
-----	--------	--------------	-----	----------	----	------

(매연측정장비 유지관리) (P - 43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매연측정장비 2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매연측정장비 정도검사를 통해 환경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효율적 업무처리로 시민만족 행정 구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000	1,000	1,000		1,000		
국 비							
도 비							
시 비	1,000	1,000	1,000		1,0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근거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 수시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공단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집중단속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매연측정장비 정도검사 및 수리비용 확보를 통하여 환경 장비 신뢰성 확보하고 효율적인 단속
- 환경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장비 유지 관리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매연측정장비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매연측정장비 정도 검사비 : 400,000원 * 2개 = 800 ·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 200,000원 = 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4. : 매연측정장비 정도검사 실시(연1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소모품구입 330,000원 - 정도검사비용 308,000원	
2019년	- 소모품구입 456,500원 - 정도검사비용 308,000원	
2020년	- 정도검사비용 308,000원	
2021년	- 정도검사비용 770,000원	10.31.일 기준 집행현황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000	638	-	362	
2019년	1,000	765	-	235	
2020년	1,000	308	-	692	
2021년	1,000	770	-	230	10.31.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공업7급 김혜원	전화	4081
-----	--------	--------------	-----	----------	----	------

(LEZ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P - 43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총 7대(3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교통수요 관리의 일환으로 기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50,000	64,800	64,800		52,221	-12,579	
국 비							
도 비							
시 비	50,000	64,800	64,800		52,221	-12,579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에서 총괄로 메인서버 관리함에 따라 센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감소

□ 법적근거

근거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근거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3.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용 CCTV 시스템 및 장비 유지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LEZ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308-1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위탁대행수수료(10%) 및 기본경비 = 3,929 · 현장시스템 유지관리비용 = 23,168 - 초·중급기술자 인건비 : 607,220원*12월 = 7,286,620원 -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 1,323,490원*12월 = 15,881,880원 · 센터시스템 유지관리비용 = 11,124 - HW 유지보수 : 5,239,000원 - 상용SW 유지보수 : 3,465,000원 - 백신, OS : 2,420,000원		
	201-02 공공운영비	· 전기요금 : 66,667원 * 12월 = 800 · 통신요금 : 1,100,000원 * 12월 = 13,2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2.10. : 위탁대행협약체결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2022.01.~2022.12. : LEZ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유지보수 위수탁협약 계약금 지급 : 35,289,200원 ○ 전기 및 통신요금 지급 : 12,757,360원	
2021년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유지보수 위수탁협약 계약금 지급 : 50,800,000원 ○ 전기 및 통신요금 지급 : 8,478,430원	10.31 기준 실집행현황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50,000	48,047	-	1,953	
2021년	64,800	59,278	-	5,522	10.31 기준 실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환경8급 김소현	전화	4082
-----	--------	--------------	-----	----------	----	------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P - 43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대기오염측정망 5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으로 시민 건강 위험요소 신속한 전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50,000	150,000	150,000	0	150,000	0	
국 비							
도 비	45,000	45,000	45,000	0	45,000	0	
시 비	105,000	105,000	105,000	0	105,000	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5457(2021.10.21.)호와 관련하여 2022년도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 관리」 가내시분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 측정 등) 제1항
근거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제①항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으로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관내 대기오염 상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확보로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측정소 유지관리 : 30,000천원 * 5개소 * 1년 = 150,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1.12. : 측정망 유지관리 용역 계획수립 및 계약
- 2022.01.~2022.12. : 측정망 유지관리 실시
- 2022.01.~2022.12. : 측정망 소모품비, 정도검사비 및 전기·통신요금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19년 측정망 유지관리용역 및 정도검사비, 소모품비, 전기·통신요금 집행	
2020년	○ 2020년 측정망 유지관리용역 및 정도검사비, 소모품비, 전기·통신요금 집행	
2021년	○ 2021년 측정망 유지관리용역 및 정도검사비, 소모품비, 전기·통신요금 집행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5,000	66,339	-	8,661	
2020년	150,000	114,675	-	35,325	
2021년	150,000	91,945		58,055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공업7급 김혜원	전화	4081
-----	--------	--------------	-----	----------	----	------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보수) (P - 43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대기오염 전광판 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통해 측정되는 우리시 대기오염농도를 실시간으로 표출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3,800	29,800	29,800		35,500	5,700	
국 비							
도 비							
시 비	23,800	29,800	29,800		35,500	5,7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사우전광판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2021.6.)됨에 따라 2022년도 유지관리비 증가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오염원 관리 업무 통합지침	제3조 제3항 제24조 제3항
근거내용	제3조 제3항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를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제3항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전광판과 대기오염측정소를 전문관리 업체에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대기오염도 실시간 표출 및 시 정책 홍보 표출을 위한 전광판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소모품비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 구래전광판 유지관리비 : 1,000,000원 * 1대 * 12월 = 12,000 · 사우전광판 유지관리비 : 1,000,000원 * 1대 * 12월 = 12,000 · 전광판 전기 및 통신요금 : 437,500원 * 2대 * 12월 = 10,500 · 전광판 소모품 : 1,000,000원 * 1대 = 1,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2. : 전광판 유지관리 계획보고 및 업체계약
- 2022.01.~2022.12. : 유지관리 실시 및 전기·통신요금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19년 전광판 유지관리용역 및 소모품비 등 집행 - 유지관리 용역 : 7,017천원 - 소모품비 및 전기·통신요금 : 8,713천원	
2020년	○ 2020년 전광판 유지관리용역 및 소모품비 등 집행 - 유지관리 용역 : 10,725천원 - 소모품비 및 전기·통신요금 : 12,467천원	
2021년	○ 2021년 전광판 유지관리용역 및 소모품비 등 집행 - 유지관리 용역 : 10,716천원 - 소모품비 및 전기·통신요금 : 7,111천원	10.31.일 기준 집행현황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4,800	15,730	-	9,070	
2020년	23,800	23,192	-	608	
2021년	29,800	17,827	-	11,973	10.31.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공업7급 김혜원	전화	4081
-----	--------	--------------	-----	----------	----	------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P - 43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비산업부문 사업장 약 250개소 대상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 유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2,000	20,000	20,000		20,000		
국 비	6,000	10,000	10,000		10,000		
도 비							
시 비	6,000	10,000	10,000		10,000		
기 타							자부담

□ 법적근거

근거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1항
근거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심각성 등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기후변화 교육 및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통해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방법을 제공
- 학교, 가정 등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홍보물 제작 : 600원 * 2,500매 = 1,500 · 활동비 지원 : 10인 * 20,000원 * 60회 = 12,000 · 교육 강사비 : 150,000원 * 25회 = 3,750 · 교구구입 및 재료비 = 2,75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2022.02. : 추진계획 수립
- 2022.03. : 보조금 지급
- 2022.04.~2022.12. : 탄소중립캠페인, 기후변화교육,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김포 관내 184가구 컨설팅 대상 진행(총 181가구 컨설팅 완료) ○ 관내 초등학교 대상 기후변화대응 교육 진행(총 905명 교육 진행)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캠페인 진행(총 4회 진행)	
2020년	○ 김포 관내 180가구 컨설팅 대상 진행 ○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대상 기후변화대응 교육 진행(총 10회)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캠페인 진행(풍무동, 운양동 등 공동주택 단지 내)	
2021년	○ 김포 관내 180가구 컨설팅 진행 ○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대상 기후변화대응 교육 진행(총 3회 진행) ○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캠페인 등 8차례 진행(풍무동, 운양동 등 공동주택 단지 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2,000	12,000			
2020년	12,000	12,000			
2021년	20,000	20,0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이한재	담당자	환경7급 김민재	전화	4077
-----	--------	------------	-----	----------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P - 43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2022년 6월
- 사업규모 : 김포시 온실가스 배출원(공공시설 폐기물부문)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시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산정계획서, 명세서 제출 등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의 효율적 관리 필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35,000		35,000	35,000		
국 비							
도 비							
시 비		35,000		35,000	35,0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근거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한다. <개정 2020.3.24>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1. 7. 30. 제3차 기간(2020년 ~ 2025년) 신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로 지정되어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받고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에 따라 목표관리 지정업체(김포시자원화센터)의 2021년 명세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등 작성·제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201-01 사무관리비	· 명세서 검증수수료 = 검증일일단가 * 검증소요일수 - 680,000월/일 * 20일 = 13,600천원 (vat별도) = 15,000 (참고 :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검증수수료 산출기준 및 방법 공고- 국립환경과학원)	
	207-01 연구용역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 = 18,165천원 (vat별도) - 인건비(연구원 + 보조원) = 14,148천원 - 경비(여비+유인물비) = 2,540천원 - 일반관리비 + 이윤 = 1,477천원 = 2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7.30. : 제3차 기간(2020년 ~ 2025년) 김포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 지정
- 2021.09.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등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을 위한 용역 추진
- 2021.11. : 검증기관 검증 완료 후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
- 2022.03. :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 추진
- 2022.03. : 2021년 명세서,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및 검증지원
- 2022.06. : NGMS 시스템 입력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이한재	담당자	환경7급 김민재	전화	4077
-----	--------	------------	-----	----------	----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P - 43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우리시 기후에너지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추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5,000	5,000	
국 비							
도 비							
시 비					5,000	5,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우리시 기후에너지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연회비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조제8호
근거내용	시는 국가 및 경기도 계획에 순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외부 지방정부협의회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와 대외협력 강화
-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기후에너지 역량 강화
- 기후에너지 전문가 구성을 통한 제도·정책 개선 및 건의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연회비 필요

그룹	인구 수	회비	비 고
가	인구 50만 명 초과	7,000,000원	
나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이하	5,000,000원	
다	인구 30만 명 미만	3,000,000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201-02 공공운영비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 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6.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요청(고양시)
- 2021.07.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검토 보고
- 2021.09. : 제212회 임시회 일반안건 상정 및 원안가결
- 2021.11.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동의서 회신(고양시)
- 2022.01. ~ : 기후위기 대응 등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과 협력 추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이한재	담당자	환경7급 김민재	전화	4077
-----	--------	------------	-----	----------	----	------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P - 43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전역
- 사업규모 : 탄소포인트 가입자 2,300가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가정 및 학교시설 등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현금 등)를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4,600	4,600	
국 비							
도 비					2,300	2,300	
시 비					2,300	2,3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31342(2021.10.12.)호 2022년도 「탄소포인트제 운영」 가내시분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제2항 제4호
근거내용	② 환경부장관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가정 및 학교 등의 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 2원 * 2,300가구 = 4,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03. : 제도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2022.03. : 신청 접수
- 2022.11. : 감축실적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이한재	담당자	행정7급 장문희	전화	4076
-----	--------	------------	-----	----------	----	------

(탄소포인트제 기간제근로자 보수) (P - 43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4월 ~ 11월
- 사업규모 : 기간제근로자 1인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20,996	21,102	21,102		21,500	398	
국 비							
도 비							
시 비	20,996	21,102	21,102		21,500	398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
	김포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 제5항
근거내용	제3조 제3항 제4호 전기 등 사용량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운영프로그램에 자료 입력(행정구역 변동에 따른 추가 및 삭제 포함) 제3조 제5항 계절적인 수요나 일시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4.6.11.)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온실가스 줄이기의 시민실천운동인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로 기후변화의 대응 및 녹색실천운동 확산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탄소포인트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 기본급 : 10,860원*8시간*1명*167일 = 14,509 · 유급휴일수당 : 10,860원*8시간*1명*46일 = 3,997 · 명절휴가비 : 500,000원*1명*1회 = 500 · 4대보험료 : 19,179원*1명*13% = 2,494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3.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22.04.~2022.11.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약 및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계획규모 : 기간제근로자 1인 - 예산액 : 20,780,000원 - 집행액 : 18,493,810원 - 집행률 : 89%	
2020년	- 계획규모 : 기간제근로자 1인 - 예산액 : 20,996,000원 - 집행액 : 19,829,490원 - 집행률 : 94%	
2021년	- 계획규모 : 기간제근로자 1인 - 예산액 : 21,102,000원 - 집행액 : 18,000,000원 - 집행률 : 85%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0,780	18,494	-	2,286	
2020년	20,996	19,829	-	1,167	
2021년	21,102	18,000	-	3,102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대기팀장 이한재	담당자	행정7급 장문희	전화	4076
-----	--------	------------	-----	----------	----	------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지원) (P - 43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살수차 3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살수차를 임차 운영하여 도로변 재비산먼지 등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50,000	75,000	75,000		75,000		
국 비							
도 비	15,000	22,500	22,500		22,500		
시 비	35,000	52,500	52,500		52,500		
기 타							자부담

□ 법적근거

근거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8조
근거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계절관리제(12월~3월) 및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도로변 재비산먼지 등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살수차를 임차 운영하여 확대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도30%, 시70%)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지원 - 500,000원 * 3대 * 50일 = 75,000,000원 = 75,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4. : 계획 수립 및 차량 임차
- 2022.06.~2021.12. :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영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운영함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0년	435,588원/1대*2일*50일 = 43,558,800원	
2021년	445,500원/1대*59일 = 26,286,500원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0년	50,000	43,558	-	6,442	
2021년	75,000	26,284	-	48,716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환경7급 이순복	전화	4080
-----	--------	--------------	-----	----------	----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P - 43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미세먼지 신호등 5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여 어린이 및 어르신 등 인지력이 약한 시민도 대기질 미세먼지 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0	50,000	40,000	10,000	50,000	0	
국 비							
도 비	0	15,000	12,000	3,000	15,000	0	
시 비	0	35,000	28,000	7,000	35,000	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미세먼지 안내를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 확대 추진으로 기존 12개소에서 17개소로 5개소 추가 설치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16678(2021.10.19.)호와 관련 2022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 가내시분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4호 제3조 제1항
근거내용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①항 제14호 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경기도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조례」 제3조 제①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상 조치 및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미세먼지 신호등을 다중이용시설 등 야외활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확대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 후 외부활동 자제 또는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을 용이하게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401-01 시설비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10,000천원 * 5개소 = 5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04.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장소 선정
- 2022.05.~2022.08. : 계약심사, 업체선정(공개입찰 또는 나라장터 구매) 및 착공
- 2022.09. : 설치완료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19년 미세먼지 신호등 7개소 설치 완료	
2020년	-	
2021년	○ 2021년 미세먼지 신호등 5개소 설치 완료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0,000	66,555	-	3,445	
2020년	-	-	-	-	
2021년	50,000	49,767	-	233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공업7급 김혜원	전화	4081
-----	--------	--------------	-----	----------	----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P - 43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저녹스보일러 3,950대(일반 및 저소득층)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보일러를 가정에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유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354,000	460,000	324,000	136,000	405,000	-55,000	
국 비	812,400	276,000	194,400	81,600	243,000	-33,000	
도 비							
시 비	541,600	184,000	129,600	54,400	162,000	-22,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저녹스보일러 일반 지원 금액 감소[보일러 일반 지원금 20만원 (2021) → 10만원(2022)]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16101(2021.10.8.)호와 관련하여 2022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가내시분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근거내용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가정의 노후 보일러를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보일러로 설치시 필요한 설치비를 지원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반가정) 100천원 * 3,930대 = 393,000천원 · 저소득층) 600천원 * 20대 = 12,000천원	= 393,000 = 1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계획 수립
- 2022.02. :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2.03. ~ 예산 소진 시 : 사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계 획 규 모 : 200대 ○ 지 원 실 적 : 200대 ○ 예 산 액 : 40,000천원 ○ 사업 집행액 : 40,000천원 ○ 집 행 률 : 100%	
2020년	○ 계 획 규 모 : 6,710대 ○ 지 원 실 적 : 5,764대(일반 5761대, 저소득층 3대) ○ 예 산 액 : 1,154,000천원 ○ 사업 집행액 : 1,153,700천원 ○ 집 행 률 : 99.9%	
2021년	○ 계 획 규 모 : 2,300대 ○ 지 원 실 적 : 939대 ○ 예 산 액 : 460,000천원 ○ 사업 집행액 : 188,200천원 ○ 집 행 률 : 40.9%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0,000	40,000	-	-	
2020년	1,154,000	1,153,700	-	300	
2021년	460,000	188,200	-	271,800	10.31.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행정9급 이호중	전화	4083
-----	--------	--------------	-----	----------	----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P - 43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384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27,440	127,440	127,440		127,440		
국 비							
도 비	38,232	38,232	38,232		38,232		
시 비	89,208	89,208	89,208		89,208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
근거내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최근 미세먼지를 포함한 실외공기질이 악화되어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지원 및 임차비 자금을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 및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27,656원 * 384대 * 12개월 = 127,44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12. : 공기청정기 임차비 매월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19.01.~2019.12. : 임차비 매월 지급(384대)	
2020년	○ 2020.01.~2020.12. : 임차비 매월 지급(384대)	
2021년	○ 2021.01.~2021.10. : 임차비 매월 지급(384대)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27,440	109,276	-	18,164	
2020년	127,440	109,276	-	18,164	
2021년	127,440	81,957	-	45,483	10.31.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행정9급 이호중	전화	4083
-----	--------	--------------	-----	----------	----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P - 43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30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지원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8,400	30,000	30,000		21,000	-9,000	
국 비							
도 비	2,520	15,000	15,000		6,300	-8,700	
시 비	5,880	15,000	15,000		14,700	-3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16790(2021.10.20.)호와 관련하여 2022년도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가내시분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
근거내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행정적·재정적 지원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최근 미세먼지를 포함한 실외공기질이 악화되어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법정규모 미만의 건강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이용시설은 대부분 영세하고 관리상태가 취약하여 환경성 질환에 노출이 우려되므로 시에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실내공기질 측정 70,000원 * 300개소 = 21,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선정
- 2022.02.~2022.11. : 법적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 2022.12. : 측정결과를 토대로 시설개선 안내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주)EHS기술연구소 위탁 :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390개소 (도비 + 시비 추가 자체 예산)	
2020년	○ (주)생활환경기술연구소 위탁 :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260개소 (도비 + 시비 추가 자체 예산)	
2021년	○ (주)생활환경기술연구소 위탁 :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320개소 (도비 + 시비 추가 자체 예산)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400	8,400	-	-	
2020년	8,400	8,400	-	-	
2021년	30,000	26,388	-	3,612	10.31.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행정9급 이호중	전화	4083
-----	--------	--------------	-----	----------	----	------

(IoT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자원) (P - 43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5개소(25대 설치)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 및 자동관제를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2회 추경 (C)			
계	30,000	17,500	17,500		26,500	9,000	
국 비							
도 비	9,000	5,250	5,250		7,950	2,700	
시 비	21,000	12,250	12,250		18,550	6,3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0년 이월금액 및 계약 차액 발생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16396(2021.10.13.)호와 관련하여 2022년도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 및 자동관제」 가내시분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
근거내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행정적·재정적 지원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반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2019.11월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IoT 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센서 설치 및 자동관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내공기질 상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IoT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5,300천원 * 5개소 = 26,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1. : 측정망 유지관리 용역 계약
- 2022.01.~2022.12. : 매월 임차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19. 7. : IoT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자동관제 사업 수요조사 제출 (장기도서관, 중봉도서관, 고촌도서관, 풍무도서관, 통진도서관)	
2020년	○ 2020. 6~ 12.: IoT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자동관제 시스템 운영 (장기도서관, 중봉도서관, 풍무도서관, 통진도서관, 시립 꿈에그린 어린이집)	
2021년	○ 2021.1.~ 2021.8.5. : IoT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자동관제 시스템 운영 (장기도서관, 중봉도서관, 풍무도서관, 통진도서관, 시립 꿈에그린 어린이집)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30,000	8,750	21,250	-	
2021년	21,250	17,500	-	3,75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행정9급 이호중	전화	4083
-----	--------	--------------	-----	----------	----	------

(미세먼지 제거 청소로봇 구입) (P - 43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청소로봇 2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이면도로, 골목길 등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취약지역 관리 및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로봇 구입

○ 위 치 : 관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66,000	66,000	
국 비							
도 비							
시 비					66,000	66,0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2021~2025 김포시 (초)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계획(기후에너지과-32244호, 2021.8.11.)에 따른 세부사업의 추진

□ 법적근거

근거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근거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①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미세먼지와 흙먼지 쓰레기 등을 모아 흡입하고 물을 분사해 재비산 방지효과 및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시민건강 보호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상세하게 작성)	비 고
미세먼지제거 청소로봇 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청소로봇 구입 : 33,000,000원 * 2대 = 66,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3. : 청소로봇 구입
- 2022.04. : 읍면동에 배부하여 시범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환경7급 이순복	전화	4080
-----	--------	--------------	-----	----------	----	------

(미세먼지 저감 시민아이디어 공모사업) (P - 43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시민아이디어 6개 부문 시상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민공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공감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800	3,800	
국 비							
도 비							
시 비					3,800	3,8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2021~2025 김포시 (초)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계획(기후에너지과-32244호, 2021.8.11.)에 따른 세부사업의 추진

□ 법적근거

근거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근거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①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제안을 접수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우수아이디어를 선정하여 향후 우리시 정책에 반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미세먼지 저감 시민아이디어 공모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시민아이디어 심사수당 : 80,000원 * 5명 · 홍보리플릿 및 책자 제작 등 : 300원 * 3,000매 = 1,700 · 기타 심사 물품 구입 : 400,000원	
	301-12 기타보상금	·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금 - 210,000원*10명 = 2,100,000원	2,1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4. : 시민대상 공모 및 제안서 접수
- 2022.05. : 심사를 통한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포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심사수당 : 240,000원 ○ 홍보포스터 구매 : 220천원 ○ 상품권 구입 : 문화상품권 3,900천원 집행	
2020년		-
2021년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500	4,360	-	1,140	-
2020년	-	-	-	-	-
2021년	-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환경7급 이순복	전화	4080
-----	--------	--------------	-----	----------	----	------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P - 43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 표지판 재정비 설치 40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회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공회전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안내 표지판 설치하여 배출가스 저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0,000	1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0,000	10,0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 표지판 40개 설치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근거내용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차고지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표 1(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바.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회전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공회전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시민건강 보호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상세하게 작성)	비 고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201-01 사무관리비	· 표지판 설치비 : 250,000원 * 40개소 = 1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3. : 안내 표지판 설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20년	2020. 6. : 공회전제한구역 안내표지판 10개소 설치	
2021년	-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
2020년	2,500	2,420	-	80	-
2021년	-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행정9급 이호중	전화	4083
-----	--------	--------------	-----	----------	----	------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 사업) (P - 43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시설 설치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 및 시민 건강보호
- 위 치 : 관 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50,000	50,000	
국 비							
도 비							
시 비					50,000	50,0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2021~2025 김포시 (초)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계획(기후에너지과-32244호, 2021.8.11.)에 따른 세부사업의 추진

□ 법적근거

근거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근거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①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를 다중이용시설 등 야외활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초등학교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 시범사업	401-01 시설비	· 청정시설 설치 : 50,000,000원 * 1개소 = 5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3. : 설치장소 선정
- 2022.04. : 계약심사, 업체선정(공개입찰 또는 나라장터 구매등) 및 착공
- 2022.08. : 설치완료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공업7급 김혜원	전화	4081
-----	--------	--------------	-----	----------	----	------

(미세먼지 저감 시민교육 및 홍보) (P - 43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리플릿 및 책자 5,000매 제작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미세먼지 관련 시민 교육 홍보를 위한 리플릿 및 책자 제작 배포를 통한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의식 확산하고자 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500	1,500	
국 비							
도 비							
시 비					1,500	1,5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2021~2025 김포시 (초)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계획(기후에너지과-32244호, 2021.8.11.)에 따른 세부사업의 추진

□ 법적근거

근거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근거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①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시민 대상 미세먼지 교육 홍보를 통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과 대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건강피해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의식 확산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미세먼지 저감 시민 교육 및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리플릿 및 책자제작 등 : 300원 * 5,000매 = 1,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4. : 리플릿 및 책자 제작
- 2022.05. : 시민대상 미세먼지 교육 홍보를 위한 리플릿 및 책자 배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공업7급 김혜원	전화	4081
-----	--------	--------------	-----	----------	----	------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 (P - 43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 1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이 대기질 미세먼지 상태를 쉽게 확인 후 대응토록 유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920	8,904	8,904		11,844	2,940	
국 비							
도 비							
시 비	1,920	8,904	8,904		11,844	2,94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2021. 9. 미세먼지 신호등 5개소 신규설치에 따른 관리 개소수 증가
 - 통신요금 증가 : (기존) 7개소 → (변경) 12개소
 - 유지관리비 증가 : 신규설치 미세먼지 신호등 5개소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 2022. 8.)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4호 제3조 제1항
근거내용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①항 제14호 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경기도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조례」 제3조 제①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상 조치 및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미세먼지 신호등을 다중이용시설 등 야외활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하고 외부활동 자제 또는 마스크 착용 등 대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을 통해 어린이 및 어르신 등 인지력이 약한 시민도 대기질 미세먼지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시민 홍보와 원활한 미세먼지 관리에 기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 : 76,000원 * 12개소 * 12월 = 10,944 · 미세먼지 신호등 통신요금 : 6,250원 * 12개소 * 12월 = 9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2. :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 계획보고 및 업체계약
- 2022.01.~2022.12. : 유지관리 실시 및 통신요금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19. 07. : 미세먼지 신호등 2개소 신규설치 ○ 2019. 12. : 미세먼지 신호등 5개소 신규설치 ○ 2019년 신호등 통신요금 집행 ※ 2019년 신규사업	
2020년	○ 2020년 신호등 통신요금 집행	
2021년	○ 2021. 09. : 미세먼지 신호등 5개소 신규설치 ○ 2021년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 용역 및 신호등 통신요금 집행	10.31.일 기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80	-	-	480	
2020년	1,920	481	-	1,439	
2021년	8,904	6,265	-	2,639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공업7급 김혜원	전화	4081
-----	--------	--------------	-----	----------	----	------

(IoT 활용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P - 43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미세먼지 측정기 100개소 운영 및 공간분포 시스템 구축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IoT를 활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김포시민이 관내 어디에 있더라도 미세먼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홍보와 원활한 미세먼지 관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00,000	1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00,000	100,0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2021~2025 김포시 (초)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계획(기후에너지과-32244호, 2021.8.11.)에 따른 세부사업의 추진

□ 법적근거

근거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근거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①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대기질에 민감도가 높고 야외활동 인구가 많은 장소 및 인지력이 약한 어린이가 거주·야외활동하는 초등학교 주변 등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운영하고, 측정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관리하여 미세먼지를 공간분포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정밀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IoT 활용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IoT 활용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 1,000,000원 * 100개소 * 1년 = 10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2. : IoT 활용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보고 및 업체계약
- 2022.01.~2022.12. : 유지관리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공업7급 김혜원	전화	4081
-----	--------	--------------	-----	----------	----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P - 43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대회 참여를 통해 미세먼지 위기의식을 고취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 대한 시민 관심도 및 참여도를 제고하여 미세먼지 없는 김포시로의 환경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2,100	2,100	
국 비							
도 비							
시 비					2,100	2,1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2021~2025 김포시 (초)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계획(기후에너지과-32244호, 2021.8.11.)에 따른 세부사업의 추진

□ 법적근거

근거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근거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①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미세먼지에 대한 경진대회 개최(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웁변대회,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 후 참여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장 발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201-01 사무관리비	· 경진대회 심사수당 : 80,000원 * 5명 * 2회 · 홍보리플릿 및 책자 제작·인쇄 등 : 300원 * 3,000매 · 기타 심사 물품 구입 : 400,000원	800 900 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12. :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장 임송미	담당자	공업7급 김혜원	전화	4081
-----	--------	--------------	-----	----------	----	------

(공사민원 현장 단속 운영) (P - 43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전지역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시 전지역 공사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시민의 행정 신뢰도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400	37,278	37,278		44,810	7,532	
국 비							
도 비							
시 비	3,400	37,278	37,278		44,810	7,532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측정장비(소음측정기) 교체 예정에 따른 증액
 - 2011년식 소음측정기 3대에 대한 내용연수(11년) 도래에 따라 신규 소음측정기 2대 구입 예정
- 환경지도과에서 운영중이던 드론 4대 중 1대 기후에너지과 이첩

□ 법적근거

근거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근거내용	제21조 제1항 시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제43조 제1항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생활환경(비산먼지·소음) 민원 급증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 소음측정기 3대 내용연수(11년) 도래 → 취득일 : 2011.07.22.(기기고유번호 : T228735, T228740, T228752)
- 인력 투입이 어려운 취약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모니터링 등을 통해 점검 시 보조수단으로 활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44,810	
공사민원 현장단속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사민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 기본급 : 10,860원*8시간*1명*167일 - 유급휴일수당 : 10,860원*8시간*1명*46일 - 명절휴가비 : 500,000*1명*1회 · 4대보험료 : 19,179,200*13% =	19,006 2,494	
	201-01 사무관리비	· 환경장비 정도검사 및 유지관리비 : 200,000*5회 = · 드론 수리 및 유지비 : 1,500,000 =	1,000 1,500	
	201-02 공공운영비	· 공사민원처리 통신비 : 60,000*12월*2대 = · 드론 배상책임보험 : 650,000 =	1,440 650	
	202-01 국내여비	· 업무추진 여비 : 140,000*12월*4인 =	6,720	
공사민원 측정장비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소음측정기 : 6,000,000*2대 =	12,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2.01~2022.12 : 공사민원 관련 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민원처리 등
- 2022.01~2022.02 : 환경장비(소음·진동 측정기) 정도검사 실시, 드론보험 가입 및 유지보수 실시
- 2021.02~2021.03 : 측정장비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환경피해 민원건수			행정처분 건수			
	계	비산먼지	생활소음	계	비산먼지	생활소음	
2019년	1,955	650	1,305	239	136	103	
2020년	2,146	714	1,432	283	140	143	
2021년	2,231	907	1,324	168	86	82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780	2,845	-	934	
2020년	3,400	1,623	-	1,777	
2021년	37,278	33,400	-	3,878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공사민원팀장 김성훈	담당자	환경8급 홍준서	전화	4085
-----	--------	------------	-----	----------	----	------

(환경민원 비상근무 지원) (P - 43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피복 및 안전화 구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환경민원 비상근무의 효율성과 직원의 안전 확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6,560		6,560	7,520	960	
국 비							
도 비							
시 비		6,560		6,560	7,520	96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1. 8. 20.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정원 증가

□ 법적근거

근거법령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 제3항 [별표3]
근거내용	제19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③ 수시지도·점검은 별표3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해당 년도 정기지도점검계획 횟수의 3분의 1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 [별표3] 수시 지도·점검 기준 1. 가뭄, 장마철, 추석·설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2. 환경오염관련 민원 다발지역, 오염우심지역 및 취약지역 3.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생략)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18.9.27.부터 운영되고 있는 환경민원 비상근무의 현장대응 시 근무복 착용을 통해 상대방에게 시소속 공무원임을 인지시키고, 사업장 지도점검시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환경민원 비상근무 피복비	201-01 사무관리비	· 환경민원비상근무 피복비 - 동절기 피복 : 100,000원 * 18명 = 1,800 - 하절기 피복 : 70,000원 * 18명 = 1,260 - 안전화 : 70,000원 * 18명 = 1,260 · 환경민원비상근무 급식비 - 급식비 : 8,000원*2명*200일 = 3,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09.27. ~ 계속 : 환경민원 비상근무 실시
- 2022.06. : 하절기 피복비 및 안전화 구입
- 2022.09. : 동절기 피복비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21년	○ 하절기 피복 및 안전화 구입 ○ 환경민원비상근무 급식비 지급	10.31일까 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21년	6,560	3,689	-	2,871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이한재	담당자	행정7급 장문희	전화	4076
-----	--------	------------	-----	----------	----	------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P - 43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9월
- 사업규모 : 김포시 에너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시 지역 내 사회 경제 환경 및 에너지 소비성향을 감안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전략 계획 수립을 통한 친환경도시 이미지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5,000	25,000	
국 비							
도 비							
시 비					25,000	25,000	
기 타					25,000	25,000	에너지공단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달성을 위한 2차 실행계획으로 체계적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3조
근거내용	제3조(기본방향)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실행계획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정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의 협력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지역 내 사회,경제, 환경 및 에너지 소비 성향을 감안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 김포시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000원 = 50,000	에너지공단 사업비 포함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3월 : 계약 및 착수(과업기간 6개월)
- 2022. 3월 ~ 2022. 9월 : 과업수행 및 최종보고서 작성
- 2022. 9월 : 과업준공

□ [참고자료: 용역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비	목		
인 건 비	책임연구원	6,491,757	
	연구원	13,937,821	
	연구보조원	11,978,949	
	소 계	32,408,527	
경 비	회의비	3,200,000	
	유인물비(보고서 인쇄비 등)	2,950,000	
	교통·통신비	1,300,000	
	소 계	7,450,000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인건비+경비)×5%이내]	1,985,000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이내	3,611,100	
총 원 가		45,454,627	
부 가 가 치 세		4,545,462	
용 역 설 계 금 액		50,000,000	백이하 절사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이윤희	담당자	행정6급 이관호	전화	4088
-----	--------	-------------	-----	----------	----	------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국비) (P - 43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하성면 일원
- 사업규모 : 171개소(태양광 142개소, 지열28개소, 태양열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융·복합에너지지원사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에너지 취약지역의 에너지자립 지원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에 탄소배출 제로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0				1,331,934	1,331,934	
국 비	0				819,510	819,510	
도 비							
시 비	0				512,424	512,424	
기 타					286,033	286,033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공모사업 선정(2021. 9.30.)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3조
근거내용	제3조(기본방향)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시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의 협력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형 뉴딜 추진단 발족식 개최(2021. 3월)
 - 그린뉴딜 핵심과제 친환경에너지 확산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지원
- 우리시 그린뉴딜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E-POWER CITY’ 추진(2020.11월)
 - 우리시의 강점인 에코(ECO)와 에너지(ENERGY)의 부합
 - 에너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 인프라 구축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공 통		o 단가(원) × 개소	합계 1,617,967	
신재생 에너지 보 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태양광건물 : 100kw이하 * 2개소 = 63,687 · 태양열건물 : 80㎡*1개소 = 92,480 · 태양광주택 : 2~3kw*140개 = 645,120 · 지 열 : 17.5kw*28개 = 646,800 · 설계감리비 : 설계용역 및 감리비 = 15,000 · 모 니 터 링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관리 = 154,880		자부담포함 286,033천원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2.01. : 2022년 신재생에너지 컨소시엄 협약
- 2022.03. : 사업추진설계, 준공계획 확정
- 2022.03. ~ 2022.09. : 융복합공사 착공
- 2022.09. ~ 2022.10. : 준공 및 현장확인
- 2022.10. : 정산 및 보고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산업 팀장 이윤혜	담당자	공업7급 이호걸	전화	4089
-----	--------	--------------	-----	----------	----	------

2022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환경지도과



(토양오염 조사) (P - 44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토양오염우려지역 1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토양오염 조사를 통해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오염토양의 정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7,320	4,500	4,500		6,500	2,000	
국 비							
도 비							
시 비	7,320	4,500	4,500		6,500	2,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토양오염 시료조사 10회 수수료지급으로 인한 예산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2항
근거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토양환경보전법」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 환경부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 발생 시 오염토양 정화를 명령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토양오염 조사	201-01 사무관리비	· 시료채취 : 150,000원*10개소*3개 지점 = 4,500 · 토양오염시료조사 수수료 : 200,000원*5개소*2개 지점 = 2,00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토양오염실태조사 예정지 선정
- 2022.06. :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 업체 선정
- 2022.07. :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 2022.12. :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삼광잉크제조(주) 외 9개소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 2019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송부	
2020년	○ 김포폐차장 외 9개소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 2020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송부 ○ 원산리 성진잉크 등 3개소 토양오염 민원현장 토양오염도조사 실시(기준치 이내) ○ 석모리 토양오염 민원현장 토양오염도조사 실시(기준치 이내) ○ 거물대리 도로부지(토양정밀조사 제외부지) 토양오염도조사 실시(기준치 이내)	
2021년	○ 신일자동차주식회사 외 9개소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 2021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송부 예정(12월)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500	2,890		1,610	
2020년	7,320	4,637		2,683	
2021년	4,500	1,367		3,133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관리팀장 손동휘	담당자	환경8급 윤자은	전화	2837
-----	-------	------------	-----	----------	----	------

(수질오염 및 화학사고 처리·관리) (P - 44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김포시 전지역 공공수역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유류오염사고, 화학사고 발생 시 방제작업 위탁용역, 방제장비를 이용한 신속한 방제 처리를 통해 오염확산 방지 및 환경피해를 줄이고자 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9,800	35,320	31,700	3,620	31,000	△4,320	
국 비							
도 비							
시 비	39,800	35,320	31,700	3,620	31,000	△4,32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구입한 방제장비(방독면 및 부수기재 등) 제외에 따른 재료비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근거내용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대규모 기름유출, 물고기 폐사 등 자체방제가 어려운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 이용 방제작업 실시
- 방제장비 및 보호구를 구비하여, 유류오염사고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수질오염 및 화학사고 처리·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방제전문업체 용역비 : 3,500,000원*6회 =	21,000	
	206-01 재료비	○ 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 유류흡착분해제거제 : 130,000원*30박스 = 3,900 · 유흡착제(패드형) : 100,000원*20박스 = 2,000 · 유흡착제(분형) : 150,000원*20팩 = 3,000 · 케미칼흡착제(패드형,100매/박스) 110,000원*10박스 = 1,10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2022.02. : 방제작업 위탁 용역 계약
- 2022.01. ~ 2022.12. : 오염사고 발생 시 자체방제·방제용역 실시 및 방제장비 구입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수질오염사고					
	계	자체방제	원인자방제처리	위탁업체 방제처리	비고	
	22	17	2	3	-	
	- 방제장비 구입내용 : 케미칼흡착제 10박스, 유흡착제 15박스, 유흡착분해제거제 41박스 등					
2020년	수질오염사고					
	계	자체방제	원인자방제처리	위탁업체 방제처리	비고	
	31	17	11	3	-	
	- 방제장비 구입내용 : 유흡착제(분형) 10박스, 유흡착분해제거제 30박스, 방독면 12개 등					
2021년	수질오염사고					10.31일까지 추진실적
	계	자체방제	원인자방제처리	위탁업체 방제처리	비고	
	20	6	14	0	-	
	- 방제장비 구입내용 : 유처리제 20통, 유흡착제(분형) 25박스, 유흡착분해제거제 40박스 등					
	화학사고: 1건					
	초원지리 두레냉동 암모니아 유출사고					
	- 방제장비 구입내용 : 전면형마스크 12개, 마스크필터 30개, 화학물질보호복 10벌 등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6,400	25,701	-	10,699	
2020년	39,800	24,671	-	15,129	
2021년	35,320	13,024	-	22,296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2팀장 최인라	담당자	공업7급 하재현 환경8급 이종왕	전화	5474 5883
-----	-------	-------------	-----	----------------------	----	--------------

(무인항공기 활용감시 지원체계 운영) (P - 44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치 : 김포시(비행금지구역인 휴전선 부근 월곶통진·하성 일부지역 제외)
- 사업규모 : 관내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업소
- 사업목적 : 취약지역에서의 촬영·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장 점검시 보조수단으로서 활용하여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적발에 용이하게 하기 위함
- 기대효과 :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으로 배출업소 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예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5,600	8,600	8,600		6,450	△2,150	
국 비							
도 비							
시 비	15,600	8,600	8,600		6,450	△2,15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환경지도과에서 운영중이던 드론 4대 중 1대 기후에너지과 이첩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근거내용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드론 활용 환경감시의 효율적인 운영
- 인력 투입이 어려운 취약지역에서의 촬영·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장 점검시 보조수단으로 활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무인항공기 활용감시 지원 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 드론 수리 및 유지비 : 1,500,000원*3대 = 4,500	
	201-02 공공운영비	· 드론 배상책임보험 : 650,000원*3대*1년 = 1,95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국방부 사진촬영 허가 및 국토교통부 비행승인, 드론보험 가입
- 2022.02. : 드론 고장·결함 여부 확인 및 유지보수 실시
- 2022.01. ~ 2022.12. : 드론 활용하여 사업장 점검 및 환경오염행위 감시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1월~2월: 드론비행, 촬영 가능 구역 확인 및 국방부·국토교통부 사전 승인(1개월 단위) 2월: 드론구입 후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드론동호회와 연계하여 비행교육 실시 3월~12월: 드론을 활용한 지도·단속 실시	-
2020년	1월~2월: 드론 유지보수 실시(날개 및 배터리교체 등), 드론보험가입 3월~12월: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드론활용 사업장 점검 실시 5월: 추가로 드론2기 구입하여 활용범위 확대 실시(공사장 비산먼지, 오염우심지역 순찰 등)	-
2021년	1월~2월: 드론보험가입,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점검 1월~8월: 드론을 활용한 지도·단속 실시 5월: 드론 보안점검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9,500	8,682	-	818	-
2020년	15,600	11,722	-	3,878	-
2021년	8,600	1,827	-	6,773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담당자	환경9급 김현승	전화	5654
-----	-------	-------------	-----	----------	----	------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P - 44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신고된 대기배출시설
- 사업규모 : 35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기술인력 부재 및 비용 부담으로 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적발위주의 지도단속에서 환경산업체 전문인력을 활용한 관리지원 및 유지보수 중심으로 관리체계의 변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80,000	287,500	287,500		205,500	△82,000	
국 비							
도 비	25,500	93,750	93,750		65,250	△28,500	
시 비	54,500	193,750	193,750		140,250	△53,5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근거내용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사업□	보조사업■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2년 경기도 도비 보조 사업 추진에 따라 시 부담에 대한 예산임.
- 사업내용 및 보조율
 - 기술관리 지원 : 포집(송풍)시설 등 방지시설 주기적 관리, 배출원 조사 및 기술인 교육 등 (도비 30%, 시비 70%)
 - 유지보수 지원 : 활성탄, 충전물, 여과포 교체(청소), 후드(플렌지), 덕트, 송풍기 교체, 본체도장 등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 성능검사 지원 : 방지시설의 후드, 덕트, 본체, 송풍기 등의 유속·유량·가스유출 여부 등을 측정 (도비 30%, 시비 70%)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 5,871,430원 * 35개소 = 205,500	

□ 사업 추진계획

- 2022년 경기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관리지원 : 40개소 - 유지보수 : 24개소 - 243,224천원 집행	
2020년	- 관리지원 : 15개소 - 유지보수 : 11개소 - 79,531천원 집행	
2021년	- 관리지원 : 40개소(41개소 신청, 1개소 포기) - 유지보수 : 30개소 - 성능검사 : 23개소 - 206,217천원 집행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52,000	243,224	-	8,776	
2020년	80,000	79,531	-	469	
2021년	287,500	206,217	-	81,283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기술지원팀장 김성철	담당자	환경7급 소지현	전화	5672
-----	-------	--------------	-----	----------	----	------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지설 지원사업 (P - 44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신고된 대기배출시설
- 사업규모 : 10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지설에 대한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지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관내 미세먼지 저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7,100,000	10,053,000	12,033,000	△1,980,000	9,180,000	△873,000	
국 비	9,500,000	5,585,000	6,685,000	△1,100,000	5,100,000	△485,000	
도 비	3,800,000	2,234,000	2,674,000	△440,000	2,040,000	△194,000	
시 비	3,800,000	2,234,000	2,674,000	△440,000	2,040,000	△194,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사업량 감소 및 환경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예산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근거내용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사업□	보조사업■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2년 환경부 국도비 보조 사업 추진에 따라 시 부담 20%에 대한 예산임.
 -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
-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지설 교체비용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 90,000,000원 * 102개소 = 9,180,000	

□ 사업 추진계획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추진 예정
 - 2022.01. : 기본계획수립
 - 2022.02. ~ 2022.10. : 사업집행
 - 2022.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78개소(방지시설 100개) : 5,544,919천원 집행	
2020년	- '20. 12. 31. 기준 : 39개소(방지시설 50개) 2,779,139천원 집행, 74개소(방지시설 93개) 4,811,890천원 선지급 - '21. 10. 31. 기준 : 143개소(방지시설 184개) 6,488,073천원 집행, 7개소(방지시설 13개) 492,526천원 선지급	잔액 21년까지 이월하여 집행, 10.31일까지 추진실적
2021년	- 11개소(방지시설 13개) 325,311천원 집행, 75개소(방지시설 93개) 4,220,189천원 선지급 - 1~2차 공고 : 총 114개소(방지시설 140개) 신청, 포기 9개소(방지시설 12개)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426,000	5,544,919	-	881,081	
2020년	17,100,000	14,571,630	-	2,528,37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잔액 12월까지 집행예정)
2021년	10,053,000	4,545,500	-	5,507,5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기술지원팀장 김성철	담당자	환경7급 소지현	전화	5672
-----	-------	--------------	-----	----------	----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P - 44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영세주유소 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전환되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영세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기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대기환경개선 효과 기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5,500	110,500	110,500		13,600	△96,900	
국 비	15,300	69,700	69,700		8,500	△61,200	
도 비							
시 비	10,200	40,800	40,800		5,100	△35,7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근거내용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사업□	보조사업■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0년부터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휘발성유기화합물)회수 설비가 의무화되어 조기 설치 시 설치비를 지원하여 영세주유소 부담완화와 대기환경 개선 유도
- 2022년 환경부 국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시 부담 10%~20%에 대한 예산임
 -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 미만 : 국비 25%, 시비 15%, 자부담 60% (지원율 40%)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6,800,000원 * 2개소 = 13,600	자부담 별도

□ 사업 추진계획

- 2022.01. : 추진계획수립
- 2022.02. ~ 2022.12. : 사업공고 및 사업진행
- 2022.11. ~ 2022.12.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20년	- 2020. 10. : 보조금지급 결정통보(6개소) - 2020. 11. : 유증기 설치 공사 중 - 2020. 12. : 보조금 지급 예정(6개소, 24,490천원)	
2021년	- 2021. 3. ~ 10. :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10개소 접수 - 2021. 3. ~ 11. : 유증기 설치 공사 중 - 2021. 8. : 보조금 지급 1개소(4,177천원) - 2021. 12. : 보조금 지급 예정(9개소, 38,725천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25,500	24,490	-	1,010	
2021년	110,500	4,177	-	106,323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기술지원팀장 김성철	담당자	환경7급 소지현	전화	5672
-----	-------	--------------	-----	----------	----	------

(환경피해대응 주민건강모니터링 사업) (P - 44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10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에 대한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마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6,204	122,632	0	122,632	206,438	83,806	
국 비							
도 비							
시 비	6,204	122,632	0	122,632	206,438	83,806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증가(68명 ⇒ 100명)
- ☞ 2019년도 지급 결정자 8명(2명 사망) 중 6명과 2021년도 지급 결정자 94명(검진주기 2년)

□ 법적근거

근거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근거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피해의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① 건강영향조사결과 단기간 내에 환경유해인자 노출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건강위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 및 건강에 관한 조사자료 및 주민명부를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2021.11월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환경부에서 추진한 「김포시 환경오염정밀조사 및 피해구제방안 용역(2018)」 관련, 거물대리·초원지3리 주민(2019년 8명, 2020년 68명, 2021년 94명)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었기에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자를 대상으로 주민건강모니

터링을 추진하고자 함.(검진주기 2년)

-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역학적으로 입증된 질환 뿐 아니라 환경오염에 의해서 발생 가능한 질환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주민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환경피해대응 주민건강모니터링	207-01 연구용역비	· 검진비 : 1,408,000원 * 100명 = 140,800 · 주민이동차량 임차비 : 440,000원 * 5회 = 2,200 · 인건비 : 31,274,000원 = 31,274 · 경비 : 2,775,000원 = 2,775 · 일반관리비 : 10,622,000원 = 10,622 · 부가세 : 18,767,000원 = 18,767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2. ~ 2022.03. : 입찰 및 용역업체 선정
- 2022.04. ~ 2022.12. : 「환경피해대응 주민건강모니터링 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 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김포시 환경오염정밀조사 및 피해구제방안 용역」 추진	환경부
2019년	환경피해구제급여 선 지급 결정(8명) 환경피해구제급여 선 지급 시범사업 추가공고(170명 추가접수)	환경부
2020년	환경피해구제급여 추가 신청자 170명의 환경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위한 건강피해조사용역 추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급여 추가 신청자 170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 환경피해구제급여 선 지급 결정(68명)	환경부
	주민건강모니터링(2019년도 결정자) 실시(8명 중 2명 사망 확인되어 6명 실시 - 5,910천원)	김포시
2021년	환경피해구제급여 추가 신청자 중 65세 미만 비고령자 환경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94명)	환경부
	환경피해대응 주민건강모니터링(2020년도 결정자) 진행 중	김포시

○ 최근 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6,204	5,910	-	294	
2021년	122,632	95,890	-	26,742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관리팀장 손동휘	담당자	환경7급 김명희	전화	5665
-----	-------	------------	-----	----------	----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P - 44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전지역
- 사업규모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8명, 연 2회 회의 개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	-			1,280	1,280	
국 비							
도 비							
시 비	-	-			1,280	1,28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제2호 및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2년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8명에 대하여 회의 참석수당 지급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근거내용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제2호 및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호 규정에 따라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함.
- 김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8명에 대하여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화학안전 관리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 80,000원*8명*2회 =	1,28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3.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2022.04. : 상반기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2022.09. : 하반기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2022.10.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보고(경기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담당자	환경8급 황보라	전화	5655
-----	-------	-------------	-----	----------	----	------

(자연기원 불소 조사 및 위해성평가 용역) (P - 44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3년 12월
- 사업규모 : 4,975,283㎡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기존 토양정밀조사 지역 외 8개 지점에서 불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불소로 인한 토양, 농작물, 지하수 등의 2차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장래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위해성 관리방법으로의 합리적 정화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토양정밀조사 지역 외 인접 지역에 불소 토양정밀조사(자연기원 조사 포함)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피해지역(거물대리·초원지3리 일원)에 대한 친환경 복원 등 지역사회 회복·치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	-			3,248,000	3,248,000	
국 비					1,624,000	1,624,000	
도 비					487,200	487,200	
시 비					1,136,800	1,136,8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환경오염 피해지역(거물대리·초원지3리 일원)의 친환경 복원사업 수립·추진을 위한 토양정밀조사 지역 외 인접 지역에 대한 불소 토양정밀조사(자연기원 조사 포함) 용역(신규사업)

□ 법적근거

근거법령	환경보건법	제17조의2 제5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5항, 제15조 제3항, 제15조의5 제1항
근거내용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 및 토양정화 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 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의5(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제23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존 토양정밀조사 지역 외 8개 지점에서 불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불소로 인한 토양, 농작물, 지하수 등의 2차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장래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위해성 관리방법으로의 합리적 정화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자연기원 불소 조사 및 위해성평가 용역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자연기원 불소 조사 및 위해성 평가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 시료채취비 = 1,568,000 · 분석비 = 1,68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022.02. : 입찰 및 용역업체 선정
- 2022.03. ~ 2023.12. : 「자연기원 불소 조사 및 위해성평가 용역」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관리팀장 손동휘	담당자	환경7급 김명희	전화	5665
-----	-------	------------	-----	----------	----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P - 44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60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신고를 통한 환경오염행위의 적발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000	3,000	3,000		3,000	-	
국 비							
도 비							
시 비	3,000	3,000	3,000		3,000	-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근거내용	제15조(포상금)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사항 중 환경오염행위가 확인되어 행정 조치된 사항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의 근절 및 시민 참여 유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301-12 기타보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 50,000원 × 60건 = 3,00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2022.12. : 2022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 15건 지급	-
2020년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 24건 지급	-
2021년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 8건 지급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000	2,000	-	-	-
2020년	3,000	3,000	-	-	-
2021년	3,000	1,250	-	1,75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담당자	환경9급 장은아	전화	5657
-----	-------	-------------	-----	----------	----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저감 관리) (P - 44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통해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49,767	50,877	50,037	840	53,909	3,032	
국 비							
도 비							
시 비	49,767	50,877	50,037	840	53,909	3,032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지도단속 인력 증가로 인한 피복비, 단속용 마스크 구입 등 예산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근거내용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 지도·점검을 위한 위반확인서 제작, 안내문 발송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저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환경전문가 자문수당 : 100,000원*10회 = 1,000 · 환경오염조사 분석수수료 : 500,000원*2회 = 1,000 · 단속용(악취확인서 첨부표 등) 용지 제작 인쇄 : 1,000,000원 = 1,000 · 단속반 피복비 : 240,000원*25명 = 6,000 · 공무원 피복비 : 500,000원*1명 = 500 · 단속용 마스크 구입 : 1,700원*26명*100매 = 4,420 · 환경 민원처리 비상근무 급식비 : 8,000원*26명*2회*12월 = 4,992 · 환경오염물질장비보관소 수리비 : 1,000,000원*2개소 = 2,000		
	201-02 공공운영비	· 환경오염 민원처리용 통신비 : 30,000원*6대*12월 = 2,160 · 무인악취포집기 전기요금 : 5,000원*6대*12월 = 360 · 무인악취포집기 통신비 : 10,000원*6대*12월 = 720 · 안내문 발송용 우편요금 - 방지사설지원사업 : 2,180원*6,000통 = 13,080 - 폐수위탁처리 실적 제출 : 2,180원*650통 = 1,417 -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 2,180원*500통 = 1,090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 2,180원*6,500통 = 14,17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등 : 23,733천원 - 민원처리용 휴대폰, 무인악취포집기 통신비 및 전기비 등 : 1,787천원	
2020년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등 : 39,263천원 - 민원처리용 휴대폰, 무인악취포집기 통신비 및 전기비 등 : 2,634천원	
2021년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등 : 31,358천원 - 민원처리용 휴대폰, 무인악취포집기 통신비 및 전기비 등 : 1,649천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9,769	25,521	-	4,248	
2020년	49,767	41,898	-	7,869	
2021년	50,877	33,007	-	17,87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환경지도2팀장 최인라	담당자	환경8급 황보라 공업9급 이현식 환경9급 장은아 환경9급 김수정	전화	5655 5659 5657 5825
-----	-------	----------------------------	-----	--	----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P - 44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 전지역
- 사업규모 :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적정관리 등 자발적 적법처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시 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7,000	8,500	17,000	△8,500	12,000	3,500	
국 비							
도 비							
시 비	17,000	8,500	17,000	△8,500	12,000	3,5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로 인한 2021년 환경교육 축소로 교육 필요성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소규모 대면교육 개최 횟수 증가 계획에 따른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제67조, 제77조, 제19조 제23조
근거내용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대다수가 영세사업장인 관내 배출사업장 특성상 환경법규 미숙지 및 시설관리 역량 부족으로 인한 환경 위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기적인 환경교육 필요
- 업종·지역별 맞춤 환경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제고 및 자발적인 환경관리 유도하여 환경 오염행위 사전예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 강사비 : 230,000원*2명*6회 = · 교육자료비 : 8,500원*100명*6회 = · 홍보유인물비 : 1,050원*2000부 = · 현수막·배너비 : 50,000원*3개*6회 = · 기타 운영비 : 190,000원*6회 =	2,760 5,100 2,100 900 1,14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배출사업장 자체교육 계획수립
- 2022.01. ~ 2022.12. : 상시(온라인) 및 정기(소규모 대면) 교육 실시
- 2022.12. : 결과보고 및 향후계획 수립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2019.02.19. : 주물주조업 배출업소 환경교육 실시 ⇒ 48명 수료 2019.05.23. : 2019년 상반기 환경오염배출시설사업장 자체교육(2회) 실시 ⇒ 364명 수료 2019.11.12. : 2019년 하반기 환경오염배출시설사업장 자체교육(2회) 실시 ⇒ 336명 수료	
2020년	2020.05.~12. : 온라인교육 및 교육자료 배부를 통한 비대면 교육 실시 ⇒ 교육 시청 수 4,000건 2020.11.4. : 2020년 하반기 환경오염배출시설사업장 자체교육(2회) 실시 ⇒ 106명 수료	
2021년	2021.01. ~ : 온라인교육 및 교육자료 배부를 통한 비대면 교육 실시 ⇒ 교육 시청 수 3,327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2,000	19,671		2,329	
2020년	17,000	13,062		3,938	
2021년	8,500	2,970		5,53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기술지원팀장 김성철	담당자	환경9급 이다솜	전화	5673
-----	-------	--------------	-----	----------	----	------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유지관리) (P - 44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12개월, 2,50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환경민원 접수 시 정확·정밀한 환경장비 사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7,300	13,000	13,000		10,000	△3,000	
국 비							
도 비							
시 비	7,300	13,000	13,000		10,000	△3,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전년도 자산취득비(용존산소측정기 구입완료)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
근거내용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 유지보수를 통한 측정장비 상시 가용
- 지도점검 시 방지시설 운영상태 확인 및 시료채취에 필요한 공구 사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환경장비 정도검사 : 100,000원*6회 = 600 · 환경장비 유지관리비 : 3,500,000원 = 3,500 · 악취 포집용기 구입 : 400,000원*3박스 = 1,200 · 폐수시료채취용 유리병 구입 : 9,000원*300개 = 2,700 · 지도점검용 공구 구입 : 2,000,000원 = 2,00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2022.12.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측정장비 유지 관리 및 소모품 구입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환경장비 유지관리 : 악취포집용기 구입 등 6,13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 : 휴대용 악취 측정 장비 구입 등 6,802천원	
2020년	환경장비 유지관리 : 악취포집용기 구입 등 7,258천원	
2021년	환경장비 유지관리 : 악취포집용기 구입 등 4,738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 : 휴대용 악취 측정 장비 구입 등 2,475천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5,252	12,935		2,317	
2020년	7,300	7,258		42	
2021년	13,000	7,213		8,496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환경기술지원팀장 김성철	담당자	공업9급 이현식 환경9급 이다솜	전화	5659 5673
-----	-------	-----------------------------	-----	----------------------	----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 (P - 44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대기배출업소
- 사업규모 : 5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먼지 및 탄화수소(THC)의 측정용역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 및 강제하여 시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2,000	22,000	22,000		22,000	-	
국 비							
도 비							
시 비	22,000	22,000	22,000		22,000	-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
근거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국민적 개선요구 증대
- 2018~2021년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민원다발사업장 50개소 측정 및 초과 사업장 연속측정으로 이행확인을 위해 예산 편성
- 측정수수료 : 440,000원/개소
 - 오염물질 별 측정수수료 : 먼지(175,200원), 탄화수소(THC) (76,900원)
 - 출장비(2인) 및 부가세 포함 반영
 - ※ 측정수수료 등 측정비용 단가 근거 : 사단법인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측정수수료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	201-01 사무관리비	·대기오염물질(먼지,THC) 측정비 : 440,000원*50개소 = 22,00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용역계획 수립 및 용역계약
- 2022.03. ~ 2022.11. : 용역실시(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 2022.12. : 용역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71개소(먼지70개, THC70개)	
2020년	80개소(먼지 70개, THC70개)	
2021년	30개소(먼지 41개, THC 48개)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2,000	18,823		3,177	
2020년	22,000	20,245		1,755	
2021년	22,000	-		22,0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계약금액 16,790천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담당자	환경8급 이은지	전화	5653
-----	-------	-------------	-----	----------	----	------

(악취유발 사업장 악취 측정) (P - 44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악취배출시설
- 사업규모 : 악취유발·민원 사업장 부지경계 및 배출구 100개 지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기본권 요구가 고취됨에 따라 심미적인 환경민원인 악취관련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대하여 악취 포집과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 그 결과를 행정처분에 활용하는 등 사업장의 악취를 개선시키코자 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8,000	22,000	22,000		22,000	-	
국 비							
도 비							
시 비	18,000	22,000	22,000		22,000	-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악취방지법」	제17조제1항, 제3항
근거내용	제17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제16조의3에 따른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최근 3~4년간 환경민원 중 악취민원 빈도가 제일 높으며, 이는 시민들이 악취 등 심미적 환경요인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함을 나타냄.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행정조치로 악취저감 및 시민만족도 고취 필요

○ 측정수수료 : 220,000원/건

- 오염물질 별 측정수수료 : 복합악취(132,000원)

- 출장비(2인), 부속기기, 부가세 포함 반영

※ 측정수수료 등 측정비용 단가 근거 : 사단법인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측정수수료, 견적서 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악취유발 사업장 악취 측정	201-01 사무관리비	· 악취 측정 : 220,000원*100개지점 = 22,00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용역계획 수립 및 용역계약
- 2022.03. ~ 2022.12. : 용역실시(악취포집 및 분석)
- 2022.12. : 용역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측정대행업체 : (주)태성환경연구소 ○ 측정 실적 : 27개업체 95개지점 ○ 처분 실적 : 개선권고 9개소	
2020년	○ 측정대행업체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측정 실적 : 58개업체 100개지점 ○ 처분 실적 : 개선권고 25개소, 조치명령 7개소, 조치명령 및 과태료 2개소	
2021년	○ 측정대행업체 : (주)태성환경연구소 ○ 측정 실적 : 100개 지점 중 93개 지점 ○ 처분 실적 : 개선권고 10개소, 조치명령 4개소, 조치명령 및 과태료 2개소	10.31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8,000	18,133	-	-133	
2020년	18,000	16,038	-	1,962	
2021년	22,000	-	-	22,0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계약금액 : 17,077천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담당자	환경7급 신소라	전화	5651
-----	-------	-------------	-----	----------	----	------

(전자복사기 구입) (P - 44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전자복사기 1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환경민원 접수 시 전자복사기 신규 구입으로 행정 효율화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	-			7,000	7,000	
국 비							
도 비							
시 비	-	-			7,000	7,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기존복사기의 내구연한(6년)이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과다 발생으로 신규 구입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제8조
근거내용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이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존복사기(2014.07. 취득)의 내구연한 6년 경과로 인한 신규 구매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환경민원 접수 등 현안업무 중 기존복사기 사용 시 잦은 고장으로 인한 불편 해소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전자복사기 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 : 7,000,000원*1대 =	7,00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 : 전자복사기 구입 조달청 계약 체결
- 2022.01. ~ 2022.02. : 물품 납품 및 검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관리팀장 손동휘	담당자	환경8급 김지연	전화	5618
-----	-------	------------	-----	----------	----	------

2022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 (P - 45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용역 1식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원순환사회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폐기물의 적정처리 방안 마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0	22,000	22,000	0	22,000	0	
국 비							
도 비							
시 비	0	22,000	22,000	0	22,000	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승인에 따른 시군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근거내용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0. 16.>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제시
- 환경부, 경기도 등 상위계획 반영 및 우리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종합적 계획 수립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o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 = 22,000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6. : 경기도 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 2022.07. : 김포시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 집행
- 2022.10. : 김포시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 준공
- 2022.11. : 김포시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제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 집행계획 수립 : 2021.04.12. - 수립용역 집행 : 2021.04.20. - 수립용역 준공 : 2021.07.30. (착수: 05.04.)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	-	-	-	
2021년	22,000	19,800	-	2,2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담당자	행정7급 장현영	전화	2798
-----	-------	------------	-----	----------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P - 45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및 용역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능력과 서비스 향상, 전문기관 평가의뢰로 객관적인 평가 결과 도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대한 적정 사업비 산출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 처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7,226,540	15,628,010	15,628,010	0	19,147,367	3,519,357	
국 비							
도 비							
시 비	17,226,540	15,628,010	15,628,010	-	19,147,367	3,519,357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인구수 증가, 크린넷 전담 수거반 신규 편성, 주간작업 및 매일수거 전환 등에 따른 원가상승 반영함.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제14조 제8항 제2호
근거내용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2020.10월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결과 도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원가 산출 용역
- 폐기물관리법 및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합 계		19,147,367
	201-01 사무관리비	○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 80,000원*10명*2회=1,600,000원 ○ 현장평가위원회 참석수당 · 120,000원*2명*3일=720,000원	= 2,320
	207-01 연구용역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 15,000,000원*1식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 22,000,000원*1식	= 37,000
	307-05 민간위탁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 19,108,047,000원	= 19,108,047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집행(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 2022.01.~1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수행
- 2022.04.~09.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수행
- 2022.08.~10.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수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대행업체(4개 업체) 평가 완료 -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원가산정 용역 실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91,035톤 (일반폐기물 57,607톤, 음식물 18,467톤, 재활용 5,271톤, 특수-대형 7,452톤)	
2020년	- 대행업체(6개 업체)평가 완료 -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원가산정 용역 실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03,276톤 (일반폐기물 60,247톤, 음식물 21,834톤, 재활용 6,324톤, 특수-대형 14,871톤)	
2021년	- 대행업체(8개 업체)평가(9월~11월) -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원가산정 용역 실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67,649톤 (일반폐기물 54,414톤, 음식물 15,914톤, 재활용 5,816톤, 특수-대형 11,505톤)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4,198,685	13,282,134	110,000	806,551	
2020년	17,226,540	16,900,828	-	325,712	
2021년	15,628,010	11,504,023	-	4,123,987	1031일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담당자	행정6급 이강은 행정7급 장현영	전화	2764 2798
-----	-------	------------	-----	----------------------	----	--------------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 (P - 45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35,000톤/년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로 안정적 반입 처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2,961,260	3,381,042	3,381,042	0	4,541,248	1,160,206	
국 비							
도 비							
시 비	2,961,260	3,381,042	3,381,042	-	4,541,248	1,160,206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반입 수수료 톤당 단가 상승 (2021년 : 70,056원 → 2022년 : 87,608원)
- 인구증가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증가 및 반입총량제 실시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반입총량제 (2021년 기준 : 18,164톤(연간), 실 반입량(예상) : 35,000톤 ⇒ 반입총량제초과 : 16,836톤)
 - 2022년 반입총량제 초과 시 반입수수료 100% 가산 (87,608원 → 175,216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 및운영에관한법률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및분담금부과징수규정	제19조 제4조,제9조,제10조
근거내용	- 법 제19조제1항제5호(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 징수규정 제4조 :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납부 의무자가 된다. - 징수규정 제9조 : 반입수수료,가산금 및 분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때에는 사장 또는 수입담당은 제2조제4호에 따라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징수규정 제10조제1항 : 반입수수료 단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시·도보에 고시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김포시자원화센터(소각), 파주환경관리센터 등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어 일부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고 그 수수료 예산 편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 · 87,608원*18,164톤=1,591,311,712원 · 175,216원*16,836톤=2,949,936,576원 (반입총량제 초과분 가산금 100%)	= 4,541,248	2021년 반입총량제 기준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2.01.~12. :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및 반입 수수료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수도권매립비 폐기물 반입량 : 27,963.93톤 - 반입수수료 납부액 : 1,631,440,200원	
2020년	- 수도권매립비 폐기물 반입량 : 32,562.27톤 - 반입수수료 납부액 : 3,211,044,310원	
2021년	- 수도권매립비 폐기물 반입량 : 25,546톤 (1월~9월) - 반입수수료 납부액 : 1,790,649,240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792,890	1,592,791	162,000	38,099	
2020년	3,123,260	2,123,546	986,276	13,438	
2021년	4,367,318	3,035,390	950,000	381,928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담당자	행정6급 이강은	전화	2764
-----	-------	------------	-----	----------	----	------

(폐기물 처분 부담금) (P - 45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5월
- 사업규모 : 2021년 김포시 생활폐기물 매립, 소각 처리량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로 폐기물 소각매립 최소화 및 재활용 유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821,485	1,342,500	1,342,500	0	906,300	-436,200	
국 비							
도 비							
시 비	821,485	1,342,500	1,342,500	-	906,300	-436,2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전년도 소각, 매립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량을 근거로 편성하며, 2021년 예산책정시 2020년 폐기물량 예산을 다소 과다책정하여 2021년 대비하여 감액 편성하고자 함.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제1호
근거내용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0.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2018.1.1.)됨에 따라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 동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2022년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2021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량을 추정하여 편성함.
 - 단가 : 소각 10원/kg, 매립 15/kg
 - 요율 : 1.06(예상)
 - ※ 요율은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치수에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 = 906,300 · 매립: 15원*35,000,000kg*1.06 = 556,500 · 소각: 10원*33,000,000kg*1.06 = 349,8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04 : 2021년 폐기물 처리량 산정 및 자료 제출(경기도)
- 2022.05.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매립 : 19,709,370kg - 소각 : 32,741,840kg	
2020년	- 매립 : 32,562,270kg - 소각 : 39,519,040kg	
2021년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 864,168,390원 · 매립 : 32,562,270kg * 15원 * 1.023 = 499,668,030원 · 소각 : 39,519,040kg * 10원 * 1.023 = 364,500,360원 ※ 2021.5.13. 납부 : 864,168,390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66,848	566,847	-	1	
2020년	821,485	821,485	-	0	
2021년	1,342,500	864,168	-	478,332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담당자	행정7급 장현영	전화	2798
-----	-------	------------	-----	----------	----	------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 (P - 45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305번길 69(석정리)
- 사업규모 : 사무동, 적환동, 계근대, 파쇄기 1대, 중장비 3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반입불가 폐기물 등의 생활폐기물 적환 및 대형폐기물 파쇄처리를 통해 김포시 관내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51,500	210,500	110,500	100,000	72,000	-138,500	
국 비							
도 비							
시 비	151,500	210,500	110,500	100,000	72,000	-138,500	
기 타							

□ 예산 감소사유

- 시설공사 완료로 인한 감액
- (불연성)쓰레기 처리수수료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근거내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폐기물, 반입불가폐기물 등을 임시 적환하여 분리·선별 후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로 반입하여 처리하기 위한 시설 유지관리 비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	합 계		72,000
	201-01 사무관리비	○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 · 공무직 피복비 : 1,500,000원 · 임차료 : 8,000,000원 · 무인경비시스템 : 1,300,000원 · 파쇄기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 4,200,000원 · 소모품비 : 7,000,000원	= 22,000
	201-02 공공운영비	○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 · 공공요금 : 30,000,000원 · 시설장비 유지비 : 15,000,000원 · 차량유지비 : 5,000,000원	= 5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12. : 매월 공공요금 지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19.5.23. 계근대 수리비 지급(3,650천원) - 2019.8.30. 파쇄기 수리비 지급(4,850천원) - 2019.12.6. 프린트토너 교체 등(2,592천원) 외 전기사용료 등 공과금 납부	
2020년	- 2020.1.20. 계근용지 구매(2,200천원) - 2020.6.24. 카메라 교체 및 설치비(2,640천원) - 2020.7.31. 고정식 크레인 구매 설치(31,309천원) - 2020.11.20. 폐매트리스 위탁처리 비용 지급(4,944천원) 외 전기사용료 등 공과금 납부	
2021년	-2021.3.12. 웬스 보수공사(19,049천원) -2021.8.10. 컨베이어주변 안전공사(8,323천원) -2021.7.1. 유압모터 구매 낙찰(55,092천원) -2021.10.28. 경계석 개선공사(10,780천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23,600	105,119	-	18,481	
2020년	151,500	52,254	-	99,246	
2021년	210,500	81,945	-	128,555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이용준	담당자	시설9급 정태환	전화	2771
-----	-------	------------	-----	----------	----	------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사업) (P - 45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305번길 69(석정리)
- 사업규모 : 17,000톤(폐기물 위탁처리량)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수도권매립지 및 자원화센터, 파주환경관리센터에 반입불가 폐기물을 민간 폐기물 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 주민 편익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510,000	2,900,000	2,500,000	400,000	2,900,000	0	
국 비							
도 비							
시 비	2,510,000	2,900,000	2,500,000	400,000	2,900,000	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근거내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신도시 내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발생
- 대청소 및 상습 무단투기 지역 청소, 읍·면·동 방치폐기물 수거·처리로 반입불가 폐기물 증가
- 수도권 매립지 및 김포시자원화센터, 파주환경관리센터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간시설에 위탁처리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사업	307-05 민간위탁금	○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 폐합성수지 : 2,600,000,000원 = 2,900,000 · 폐목재 : 300,000,000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1. : 2021년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계획보고 및 집행의뢰(회계과)
- 2021.12. : 일반경쟁입찰 공고 및 낙찰자 결정
- 2022.01.~12. : 매월 폐기물처리량 검토 및 기성금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7,517톤 * 231,113.68원/톤 = 1,737,182,080원	
2020년	- 폐합성수지 1차 : 7,142.9톤 * 215,900원/톤 = 1,542,152,110원 - 폐목재 1차 : 2,516 톤 * 52,670원/톤 = 132,516,080원 - 폐합성수지 2차 : 1,547.7톤 * 210,200원/톤 = 325,326,540원 - 폐합성수지 3차 : 1,935.81톤 * 228,000원/톤 = 410,400,000원 - 폐목재 2차 : 1147.4 톤 * 52,801원/톤 = 68,640,990원	
2021년	- 폐합성수지 : 9,600톤 * 201,594원/톤 = 2,479,610,130원 - 폐 목 재 : 8,000톤 * 49,314원/톤 = 394,510,990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800,000	1,737,182	-	62,818	
2020년	2,552,903	2,544,843	-	8,060	
2021년	2,900,000	1,883,452	-	1,016,548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이용준	담당자	시설9급 정태환	전화	2771
-----	-------	------------	-----	----------	----	------

(폐기물 지도점검 차량 등 유지관리) (P - 45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 ~ 12월
- 사업규모 : 폐기물 단속차량 7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효율적인 청소 및 폐기물 단속을 위한 차량 유지관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45,684	42,720	37,920	4,800	45,120	2,400	
국 비							
도 비							
시 비	145,684	42,720	37,920	4,800	45,120	2,4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폐기물 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 클린기동대 현장단속 및 지도점검 차량 운용 증가로 유류비 및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근거내용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차량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폐기물 단속차량 유지비용 편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폐기물 지도점검 차량 등 유지관리	합 계		45,120	
	201-02 공공운영비	○ 차량유지비 및 공공요금		
		· 유류 구입비 2,300,000원*12월	= 27,600	
		· 차량 수리비 : 1,300,000원*12월	= 15,600	
		· 차량 검사비 : 100,000원*7대	= 700	
		· 차량관계시스템 사용료 : 35,000원*12월	= 420	
		· 자동차세 : 800,000원	= 8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41,884	183,649	-	58,235	
2020년	145,684	106,505	-	39,179	
2021년	42,720	34,158	-	8,562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담당자	행정8급 이현정	전화	2767
-----	-------	------------	-----	----------	----	------

(종량제봉투 제작 등 관련업무 추진) (P - 45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종량제봉투(34,385천매), 대형폐기물 수거신고필증(356천매) 제작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규격봉투와 스티커 제작유통관리 및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수거신고필증의 원활한 공급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789,069	1,790,949	1,790,949	0	1,969,713	178,764	
국 비							
도 비							
시 비	1,789,069	1,790,949	1,790,949	-	1,969,713	178,76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공급·판매를 위하여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임
※2021.10. 기준 세입 현황 - 종량제봉투: 7,258,621천원 / 대형폐기물 수거신고필증: 1,107,382천원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근거내용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거신고필증은 시민들의 폐기물 배출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재고부족 시 시민들의 폐기물 배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인터넷 납부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수료 지급
- 물류관리 시스템 전산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 종량제봉투 34,385천매 제작, 대형폐기물스티커 356천매 제작 예정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종량제봉투 등 업무 추진	합 계		1,969,713	
	201-01 사무관리비	○ 대형폐기물 수거신고필증 제작 · 200원*29,700매*12월=71,280,000원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인터넷처리 수수료 · 120,000원*12월=1,440,000원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 제작 · 7,000원*250개=1,750,000원 ○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비 · 1,016,800원*4분기=4,068,000원	= 78,538	
	206-01 재료비	○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 55원*8,596,250매*4회	= 1,891,175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제작량 : 29,403천매 - 판매량 : 22,239천매	
2020년	- 제작량 : 29,038천매 - 판매량 : 28,360천매	
2021년	- 제작량 : 25,338천매 - 판매량 : 16,519천매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593,598	1,290,476	227,481	75,641	
2020년	1,789,069	1,748,208	-	40,861	
2021년	2,080,640	1,666,166	-	414,474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담당자	환경9급 김수미	전화	2765
-----	-------	------------	-----	----------	----	------

(종량제봉투 배송업무 추진) (P - 45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배송차량 1대(전기차)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종량제봉투(스티커) 지정판매소 증가에 따른 배송 지연 해소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0	0	0	0	48,000	48,000	
국 비							
도 비							
시 비	0	0	0	0	48,000	48,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김포시 연도 별 인구 및 지정판매소 증가에 따른 종량제봉투(스티커) 판매량 증가
- 기존 운행차량 1대 배송으로 인한 지정판매소(1,078개소) 판매 배송 지연 발생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근거내용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안정적인 공급·판매 필요
- 1일 평균 60개소의 지정판매소 배송에 따른 예산편성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종량제봉투 (스티커) 운영차량 증차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종량제봉투(스티커) 운영차량 구입 · 48,000,000원*1대 =	48,000	

□ 사업 추진계획

- 2021.08. : 공용차량 정수배정 요청
- 2022.01. : 나라장터 차량구매 계약
- 2022.05. : 차량 구매 완료(구매일로부터 150일)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담당자	환경9급 김수미	전화	2765
-----	-------	------------	-----	----------	----	------

(찾길 동물사고 처리 사업) (P - 45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로드킬 동물사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로드킬 동물사체의 적정처리를 통한 생명존엄성 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22,000	22,000	22,000	0	22,000		
국 비							
도 비							
시 비	22,000	22,000	22,000	-	22,0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근거내용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도로 위 동물사체 처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 도로 위 동물사체 방치 시 발생할 시민통행 불편 및 주변 환경 훼손 방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찾길 동물사고 처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찾길 동물사고 처리 사업 : 12,100원*1,819kg = 22,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처리예산 : 34,973,370원 - 처리단가 : 9,350원/kg - 연간 위탁처리량 : 3,740kg	
2020년	- 처리예산 : 22,000,000원 - 처리단가 : 9,900원/kg - 연간 위탁처리량 : 1,616kg	
2021년	- 처리예산 : 22,000,000원 - 처리단가 : 10,890원/kg - 총 위탁처리량 : 1,508.8kg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2,000	34,973	-	7,027	
2020년	22,000	15,998	-	6,002	
2021년	22,000	10,223	-	11,777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담당자	환경9급 이승민	전화	1936
-----	-------	------------	-----	----------	----	------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 (P - 45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신고포상금 지급 300건, 무단투기금지 홍보물 및 현수막 500매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 등 주민참여 유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66,320	35,084	30,084	5,000	28,000	-7,084	
국 비							
도 비							
시 비	166,320	35,084	30,084	5,000	28,000	-7,08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안내문 및 현수막 제작 완료에 따른 예산 감소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근거내용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쓰레기 투기 민원 사전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한 무단투기 방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	합 계		28,000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물제작비 · 무단투기 금지안내문 및 현수막 등 : 50,000원*500매 = 25,000,000원	25,000	
	301-12 기타보상금	○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 · 10,000원*300건 = 3,000,000원	3,000	

□ 사업 추진계획

- 2022.01.~12. : 무단투기 현수막 설치 및 홍보물 배포, 이동식 감시장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사무관리비 : 홍보물제작 및 대청소 추진(41,043,800원), 읍면 방치쓰레기 수거(66,000,000원) - 공공운영비 : 무단투기 감시장비(블랙박스) 유지관리 (1,874,600원) - 기타운영비 :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55건(1,570,000원)	
2020년	- 사무관리비 : 홍보물제작 및 대청소 추진(18,965,280원), 읍면 방치쓰레기 수거(66,000,000원) - 공공운영비 : 무단투기 감시장비(블랙박스) 유지관리 (1,206,680원) - 기타운영비 :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199건(2,900,000원)	
2021년	- 사무관리비 : 홍보물제작(15,672,000원) ※ 코로나19 극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안내 홍보물 및 현수막 : 8,184,000원 - 공공운영비 : 무단투기 감시장비(블랙박스) 유지관리 (806,030원) - 기타운영비 :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115건(1,940,000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18,620	190,116	-	28,504	
2020년	166,320	89,072	-	77,248	
2021년	35,084	26,602	-	8,482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담당자	환경9급 김수미	전화	2765
-----	-------	------------	-----	----------	----	------

(클린기동대 운영) (P - 45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동물사체 처리, 생활 폐기물 단속 400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처리를 위한 클린기동대 운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55,124	43,233	58,818	-15,585	17,380	-25,853	
국 비							
도 비							
시 비	55,124	43,233	58,818	-15,585	17,380	-25,853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클린기동대 차량 구입 완료에 따른 예산 감소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근거내용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급격한 인구증가 및 농촌, 공장지대의 폐기물 혼합 투기 등으로 인한 쓰레기 증가
- 무단투기의 지속적 감시 및 단속을 위한 인력 및 방치쓰레기 등 수거를 위한 처리비용 증가
- 단속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피복비, 특근 매식비 등 지원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클린기동대 운영	합 계		17,380	
	201-01 사무관리비	○ 클린기동대 운영 · 정수기 임대료 : 50,000원*12월=600,000원 · 청소장비 구입비 : 1,500,000원 · 사무용품 구입비 : 1,000,000원 ·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8,000원*3명*365일=8,760,000원 · 피복비 : 240,000원*9명 = 2,160,000원	14,020	
	201-02 공공운영비	○ 폐기물 단속 민원처리용 통신비 · 70,000원*4대*12월 = 3,360,000원	3,360	

□ 사업 추진계획

- 2022.01.~12. : 관내 방치쓰레기 처리, 무단투기 적발 및 단속, 로드킬 처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사무관리비 : 클린기동대운영비(4,115,500원), 단속용 피복비(1,980,000원) - 공공운영비 : 단속 민원처리용 통신비(2,671,190원) -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적발건수 226건, 로드킬 수거 3,740kg, 방치쓰레기 수거 485톤	
2020년	- 사무관리비 : 클린기동대운영비(2,104,840원), 단속용 피복비(4,486,000원) - 공공운영비 : 단속 민원처리용 통신비(2,880,050원) -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적발건수 437건, 로드킬 수거 945.2kg, 방치쓰레기 수거 211톤	
2021년	- 사무관리비 : 클린기동대 운영, 단속용 피복비 등(8,505,940원) - 공공운영비 : 단속 민원처리용 통신비 등(2,552,910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클린기동대 현장행정용 차량구입(22,715,630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8,764	39,776	-	8,988	
2020년	55,124	23,929	-	31,195	
2021년	43,233	33,774	-	9,459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담당자	행정8급 이현정	전화	2767
-----	-------	------------	-----	----------	----	------

(무단투기 방치쓰레기 처리 사업) (P - 45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 ~ 12월
- 사업규모 : 읍면동 방치폐기물 처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읍면동에 적체된 방치폐기물 처리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01,000	50,000	50,000	0	5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01,000	50,000	50,000	-	50,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읍면동 무단투기 방치쓰레기 처리 예산과 방치폐기물 수거차량 임차료 예산의 통합운영 실시
- 클린기동대의 석정리 적환장 이동식 크레인 사용으로 방치폐기물 수거차량 임차료 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1항
근거내용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읍면동 무단투기 방치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치폐기물 수거차량 임대료 등 지출비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무단투기 방치쓰레기 처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무단투기 방치쓰레기 처리 : 500,000원*100회 =	50,000	

□ 사업 추진계획

- 2022.02. : 읍면지역 예산 재배정 실시
- 2022.01.~12. : 동지역 방치폐기물 수거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방치폐기물 수거차량 임대(31,000,000원) - 읍면지역 예산 재배정 : 66,000,000원	
2020년	- 방치폐기물 수거차량 임대(11,000,000원) - 읍면지역 예산 재배정 : 59,000,000원	
2021년	- 방치폐기물 수거차량 임대(2,000,000원) - 읍면지역 예산 재배정 : 22,750,000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97,500	71,762	-	25,738	
2020년	101,000	64,582	-	36,418	
2021년	50,000	24,750	-	25,25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담당자	행정8급 이현정	전화	2767
-----	-------	------------	-----	----------	----	------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P - 45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0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10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상습 무단투기 발생지역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배치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및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기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67,232	159,312	159,312	0	251,200	91,888	
국 비	83,616	79,656	79,656	-	125,600	45,944	50%
도 비	41,808	39,828	39,828	-	62,800	22,972	25%
시 비	41,808	39,828	39,828	-	62,800	22,972	25%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사업규모(8명→10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 운영경비 증가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근거내용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감시, 홍보가 필요하나 클린기동대 만으로는 단속 및 계도가 어려움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을 활용하여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에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를 실시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합 계		251,2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 수 - 1,740천원*10명*8월 : 139,200,000원 ·급 식 비 - 130,000원*10명*8월 : 10,400,000원 ·사회보험 - 200,000원*10명*8월 : 16,000,000원 ·명절휴가비 - 800,000원*10명 : 8,000,000원 ·출 장 비 - 220,000원*10명*8월 : 17,600,000원	= 191,200
	201-01 사무관리비	·교 육 비 - 200,000원*10명 : 2,000,000원 ·피 복 비 - 200,000원*10명 : 2,000,000원 ·기타 운영경비 - 16,000,000원 ·차량운영비 - 임차비 : 700,000*5대*8월 : 28,000,000원	= 48,000
	201-02 공공운영비	·차량운영비 - 유류비 : 300,000*5대*8월 : 12,000,000원	= 1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계획 보고
- 2022.02. :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모집공고 및 면접 실시
- 2022.03. : 감시원 채용 및 운영 착수
- 2022.10. : 감시원 운영 종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감시원 운영비 : 72,426,100원 - 무단투기 관련 계도건수 : 348건 - 무단투기 관련 홍보건수 : 421건	
2020년	- 감시원 운영비 : 147,614,550원 - 무단투기 관련 계도건수 : 2,118건 - 무단투기 관련 홍보건수 : 1,826건	
2021년	- 감시원 운영비 : 134,170,110원 - 무단투기 관련 계도 및 홍보건수 : 2,026건 - 무단투기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 : 161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93,223	71,486	-	21,737	
2020년	167,232	147,615	-	19,617	
2021년	159,312	134,170		25,142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담당자	환경9급 김수미	전화	2765
-----	-------	------------	-----	----------	----	------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P - 45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4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감시카메라 설치하여 무단투기 근절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0	16,000	16,000	0	16,000	0	
국 비							
도 비	-	4,800	4,800	-	4,800	-	30%
시 비	-	11,200	11,200	-	11,200	-	7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1항
근거내용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2021.11월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제한된 인원으로 김포시 전지역의 무단투기 단속이 어려움에 따라 이동식 감시장비 구매 필요
- 상습 민원발생지역에 이동식 감시장비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방지 및 투기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이동식 감시장비 구매 : 4,000,000원*4대 = 16,000	

□ 사업 추진계획

- 2021.11. :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실시
- 2022.03.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실시
- 2022.04. : 이동식 감시장비 구매 및 설치
- 2022.04. ~ 12. : 이동식 감시장비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도비보조사업 : 이동식 감시장비 및 배터리 구매 1대(4,981천원) ※ 자체사업 : 이동식 감시장비 20대 구매(79,628천원)	
2020년	- 해당없음 ※ 자체사업 : 이동식 감시장비 10대 구매(39,784천원)	
2021년	- 도비보조사업 : 이동식 감시장비 및 배터리 구매 : 15,925천원(4대)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000	4,981	-	18	
2020년	해	당	없	음	
2021년	16,000	15,926	-	74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담당자	행정8급 이현정	전화	2767
-----	-------	------------	-----	----------	----	------

(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 (P - 45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김포한강4로 419-37
- 사업규모 : 소각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수영장 등)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한강신도시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김포시 자원화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김포한강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익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8,244,304	8,152,857	8,814,157	-661,300	8,632,871	480,014	
국 비							
도 비							
시 비	8,244,304	8,152,857	8,814,157	-661,300	8,632,871	480,01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자원화센터 운영 인건비 및 자본적 지출 증가에 따른 필요예산 증가
- 자원화센터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가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근거내용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한강신도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김포시 자원화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84톤/일), 음식물처리시설(40톤/일)] 운영
 -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의 점검을 통한 노후된 시설 보수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보완 및 폐기물처리 후 발생된 폐기물 처리비용 등 시설운영 비용
- 김포시자원화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인 김포한강스포츠센터(수영장, 헬스장, 다목적강당) 운영
- 김포시자원화센터 운영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	합 계		8,632,871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 · 인건비 : 859,112,000원 · 운영비 : 7,613,658,000원	= 8,472,770
	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자원화센터 자본적 지출 : 160,101,000원	= 160,10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1차 전출금 교부(900,761천원)
- 2021.02. : 2차 전출금 교부(1,663,328천원)
- 2021.03. : 3차 전출금 교부(2,570,044천원)
- 2021.05. : 4차 전출금 교부(1,954,503천원)
- 2021.06. : 5차 전출금 교부(1,725,521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생활폐기물 처리량 ·소각시설 : 22,851.14톤, 음식물처리시설 : 8,025.16톤 - 수익금 : 702,026천원 ·소각시설 : 697,710천원(여열 및 고철판매) ·음식물처리시설 : 4,315천원(사료판매) ·주민편익시설 : 1,363,197천원(수영장 등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요금)	
2020년	-생활폐기물 처리량 ·소각시설 : 23,906.79톤, 음식물처리시설 : 8,360.50톤 - 수익금 : 870,719천원 ·소각시설 : 760,636천원(여열 및 고철판매) ·주민편익시설 : 110,083천원(수영장 등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요금)	
2021년	-생활폐기물 처리량 ·소각시설 : 20,118.13톤, 음식물처리시설 : 6,386.90톤 - 수익금 : 882,596천원 ·소각시설 : 626,455천원(여열 및 고철판매) ·주민편익시설 : 256,141천원(수영장 등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요금)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012,230	7,407,020	-	605,210	
2020년	8,613,505	7,039,302	-	1,205,002	
2021년	8,152,857	8,152,857	-	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이용준	담당자	시설9급 정태환	전화	2771
-----	-------	------------	-----	----------	----	------

(김포시 자원화센터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P - 45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4월
- 사업규모 : 음식물류처리시설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악취저감장치의 노후화로 성능저하로 인한 배출허용 기준 초과 및 고농도 악취물질 처리에 부적합하여 배출허용기준 충족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교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0	86,000	0	86,000	1,500,000	1,414,000	
국 비							
도 비							
시 비	-	86,000	-	86,000	1,500,000	1,414,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악취방지법 제16조의2(기술진단 등)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 결과 개선 지적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 사료화시설 악취방지시설 보완 설치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근거내용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악취방지법 제16조의2(기술진단 등)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 실시
- 한강신도시 음식물 처리시설인 자원화센터의 악취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에 4~6배 높은 고농도 악취가 측정되어, 내년도에 있을 악취 재측정 대비 및 신도시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악취방지 시설개선을 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김포시 자원화센터 악취방지시설 개선 용역	401-01 시설비	○ 악취방지 시설 설치 · 탈취로(직접연소식) : 1,030,000원 · 구조물 공사 : 70,000원 · 전기 공사 : 50,000원 · 가스 배관 : 200,000원 · 탈취 배관 교체 : 100,000원 · 기타 부대설비 : 50,000원 = 1,50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3.~07. : 악취기술진단(한국환경공단)
- 2021.10. : 악취방지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
- 2022.03. : 악취방지시설 교체(직접 연소식 탈취기 설치)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이용준	담당자	시설9급 정태환	전화	2771
-----	-------	------------	-----	----------	----	------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P - 45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파주시 방촌로 1213-52
- 사업규모 : 10,000톤/년(김포시 생활폐기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우리시와 파주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소각시설인 ‘파주환경관리센터’를 운영하여 김포시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처리용량 확보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2,800,000	2,800,000	2,800,000	0	2,800,000	0	
국 비							
도 비							
시 비	2,800,000	2,800,000	2,800,000	0	2,800,000	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광역화건설사업 협약서	제8조
근거내용	사업비 부담액 결정은 추후 실시설계 완료 후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되 부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운영규약서)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우리시 가연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일일 약 46톤씩 ‘파주환경관리센터’로 반입 처리함에 따른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지급(정산비)
-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라 파주시로 납부하여야 하는 우리시 부담금 지급(비정산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 비정산비(김포40 : 파주60) = 2,800,000 · 정산비(반입폐기물 비율에 따라 정산)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1999.02.01. :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건설 공사 착공
- 2000.07.21. :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광역화 건설사업 협약서 체결
- 2003.05.22. :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준공
- 2016.07.11. ~ 현재 : 파주시 생활쓰레기 반입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19년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 납부 - 폐기물 처리량 : 7,384.53톤(1월~12월) - 운영비 부담금 : 2,200,248천원 · 비정산비 : 1,487,493천원(김포40%, 파주60%) · 정 산 비 : 712,754천원[김포115.12%, 파주84.88%] - 주민지원기금 : 191,253천원 - 온실가스 배출권부담액 : 82,608천원(김포18.65%, 81.35%) - 절탄기 교체 : 49,593천원 - 온실가스 저감시설 개선 : 49,593천원	
2020년	- 2020년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 납부 - 폐기물 처리량 : 7,777.01톤(1월~12월), 일평균 28톤(반입일 기준) - 운영비 부담금 : 2,268,836천원 · 비정산비 : 1,505,853천원(김포40%, 파주60%) · 정 산 비 : 762,982천원[김포13.51%, 파주86.49%] - 주민지원기금 : 190,737천원[김포13.51%, 파주86.49%] - 온실가스 배출권구매 : 52,472천원(김포15.12%, 파주84.88%) - 매립시설 3단계 증설사업 : 176,532천원(김포40%, 파주60%)	
2021년	- 6.11. 운영비 1차 납부 : 1,400,000천원 - 폐기물 처리량 : 3,809.24톤(1월~7월), 일평균 23톤(반입일 기준)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800,000	2,339,456	-	460,544	
2020년	2,800,000	2,800,000	-	0	선납 후 정산
2021년	2,800,000	1,400,000	-	1,400,000	2차 납부 예정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이용준	담당자	시설7급 박성민	전화	2769
-----	-------	------------	-----	----------	----	------

(자동집하시설(크린넷) 운영) (P - 45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 장기자동집하시설 : 김포한강2로 120(장기동)
 - 양곡자동집하시설 : 김포한강5로 372(양촌읍)
 - 한강제1자동집하시설 : 김포한강4로 417(마산동)
 - 한강제2자동집하시설 : 김포한강11로 182(운양동)
- 사업규모 : 자동집하시설 4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자동집하시설을 위탁운영
 - 생활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로 수거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6,004,410	5,207,950	4,848,950	359,000	6,225,940	1,017,990	
국 비							
도 비							
시 비	6,004,410	5,207,950	4,848,950	359,000	6,225,940	1,017,99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집하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유지비용 증가
- 김포한강신도시 인구증가로 쓰레기 처리 집하시간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의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교대근무 시행 등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근거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한강신도시 및 양곡택지지구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처리를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4개소의 자동집하 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 자동집하시설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여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이 효율적
- 김포시 인구는 20년 472천명, 21년 502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인구 증가는 김포한강신도시에 집중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경험이 많은 위탁 운영자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운영	합계		6,225,940	
	201-02 공공운영비	○ 자동집하시설 전력비 · 49,000,000원*4개소*12개월=2,352,000,000원 ○ 자동집하시설 용수비 · 1,250,000원*4개소*12개월=60,000,000원	2,412,000	
	307-05 민간위탁금	○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 · 66,748,750원*4개소*12개월=3,203,940,000원	3,203,940	
	401-01 시설비	○ 자동집하시설 시설유지비 · 25,000,000원*12개월=300,000,000원 ○ 이송관로 점검에 따른 CCTV 촬영비 · 500,000원*10회*4개소=20,000,000원 ○ 자동집하시설 안전진단비 · 5,000,000원*4개소=20,000,000원 ○ 집하장 조경유지관리비 · 5,000,000원*4개소=20,000,000원	360,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암롤박스 구입설치 · 25,000,000원*10대=250,000,000원	25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12 : 자동집하시설 운영 용역 실시
전기, 용수 사용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
- 2021.06.~08 :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실시
- 2021.08.~12 :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계약추진
- 2022.01.~12. : 자동집하시설 운영 용역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한강제1집하장 컨테이너 계류장 설치 - 한강제1집하장 대차설비 프로그램 수정 - 양곡집하장 제어실 이전 - PDV실 배관 교체공사 - 한강제1집하시설 송풍기 벨런싱 작업 - 자동집하시설 쓰레기 집하 현황 · 장기집하장 : 일반 6,258톤 · 한강1집하장: 일반 8,535톤 · 양곡집하장 : 일반 1,282톤 · 한강2집하장: 일반 6,525톤	
2020년	-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계약추진 - 김포한강제2집하장 탈취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 추진 - 장기집하장 원심분리기 교체공사 실시설계 추진 - 김포한강제2집하장 탈취설비 개선공사 - 장기집하장 관로파손 복구공사 진행 - 김포한강제1집하장 옥상누수에 따른 실시설계 추진 - 김포한강제2집하장 조경공사 추진 - 자동집하시설 쓰레기 집하 현황 · 장기집하장 : 일반 6,145톤 · 한강1집하장: 일반 9,209톤 · 양곡집하장 : 일반 1,508톤 · 한강2집하장: 일반 7,371톤	
2021년	- 01.~12.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 집행 - 01.~12. : 자동집하장 조경공사 추진 - 03. : 김포한강제1집하장 화장실 시설물 보수공사 - 03.~05. : 장기집하장 크린넷 투입구 도장공사 집행 - 03.~06. : 장기집하장 관로교체 공사[세무서 인근] - 04.~06. : 양곡집하장 옥상 방수공사 집행 - 05.~06. : 장기집하장 관로교체 공사[장기집하장 내부] - 06.~08. :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집행 - 08.~09. : 한강제2집하장 이송관로 교체공사 실시설계 추진 - 10.~11. : 한강제2집하장 이송관로 교체공사 집행 - 10.~12. : 장기집하장 탈취설비 활성화 구매 집행 - 08.~12. :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계약추진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650,830	4,550,361	-	100,469	
2020년	6,004,410	5,185,181	-	819,229	
2021년	5,470,867	4,004,400	-	1,446,467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장기자동집하시설	양곡자동집하시설	한강제1자동집하시설	한강제2자동집하시설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이용준	담당자	행정8급 고명찬	전화	2772
-----	-------	------------	-----	----------	----	------

(자동집하시설 암롤박스(25m³) 구입) (P - 45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 장기자동집하시설 : 김포한강2로 120(장기동)
 - 양곡자동집하시설 : 김포한강5로 372(양촌읍)
 - 한강제1자동집하시설 : 김포한강4로 417(마산동)
 - 한강제2자동집하시설 : 김포한강11로 182(운양동)
- 사업규모 : 자동집하시설 4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동집하시설 내 부식된 암롤박스를 교체하여 쓰레기 집하·운반 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0	0	0	0	250,000	250,000	
국 비							
도 비							
시 비	-	-	-	-	250,000	250,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4개소 자동집하장의 생활폐기물 집하·운반용 암롤박스의 노후화로 인해 침출수 누수 등 안정적인 집하·운반 및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암롤박스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임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근거내용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동집하시설(크린넷) 내 암롤박스가 부식되어 쓰레기 집하 및 운반 시 침출수 누수 등 악취 및 오염 발생으로 원활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있으므로 노후화된 암롤박스의 교체가 필요한 사항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운영	405-01 자산취득비	○ 암롤박스 구입설치 · 25,000,000원*10대=250,000,000	= 25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2.01. : 자동집하시설(크린넷) 운영 현안사항 보고
- 2022.03. : 암롤박스 구매

□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이용준	담당자	행정8급 고명찬	전화	2772
-----	-------	------------	-----	----------	----	------

(양곡자동집하시설 탈취시설 개선공사) (P - 45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양곡자동집하시설(김포한강5로 372)
- 사업규모 : 양곡자동집하시설 내 탈취설비 전면교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양곡자동집하시설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설비 개선공사 및 주변 악취저감 기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0	0	0	0	22,000	22,000	
국 비							
도 비							
시 비	-	-	-	-	22,000	22,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기존 설치되어 있는 탈취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탈취 효과 저하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발생
- 구래동 일부 아파트 블록 8개 단지 쓰레기 발생량을 양곡집하장에서 처리예정(약 6천 세대) 및 쓰레기 발생량 증가 예상에 따라 양곡집하시설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탈취설비 개선공사 설계 용역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1항
근거내용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자동집하시설 시설개선공사에 따라 약 6천 세대의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예정으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탈취설비 개선공사 필요
- 기존 설치되어 있는 탈취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탈취 효과 저하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양곡자동집하시설 탈취시설 개선공사	401-01 시설비	○ 양곡집하장 탈취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 · 탈취설비 개선공사 설계용역 : 22,000,000원 = 2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8. : 양곡자동집하시설 인근 주민의 악취 피해 호소 및 개선 방안 제고 요청
- 2022.01.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03.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1회 추경 공사비 반영)
- 2022.04. : 공사 착공
- 2022.06. : 공사 준공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이용준	담당자	행정8급 고명찬	전화	2772
-----	-------	------------	-----	----------	----	------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관리) (P - 45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폐기물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무단투기 폐기물 적정처리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정 (C)			
계	33,720	33,720	33,720	0	33,720		
국 비							
도 비							
시 비	33,720	33,720	33,720	-	33,72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3조 제1항
근거내용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취약지역에 무단투기 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 폐기물(일반, 건설, 지정)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적정 관리 유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관리		합 계	33,720	
	201-01 사무관리비	○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 사업장(일반, 건설) 폐기물 처리 : 2,000,000원*5회 = 10,000 · 지정폐기물 처리 : 2,000,000원*4회 = 8,000 ○ 매립·굴착 장비 임대료 : 700,000원*4회 = 2,800 ○ 시료채취(분석) : 1,000,000원*2회 = 2,000 ○ 지도점검 관련 물품 구입 · 방진마스크 및 방제복 : 8,000원*100개 = 800 · 기타(pH페이퍼, 시약병, 장갑 등) = 200 ○ 배출처리방법 등 홍보물 제작 : 1,000원*3,000매 = 3,000 ○ 투기행위근절 홍보 현수막 제작 : 50,000원*20개 = 1,000		
	201-02 공공운영비	○ 배출처리업체 안내문 우편 발송 : 500원*2,000건*4회 = 4,000 ○ 폐기물 단속 민원처리용 통신비 : 80,000원*2대*12월 = 1,92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사무관리비 : 무단투기 폐기물처리(15,276,800원), 지도점검을 위한 물품구매(5,216,800원) 홍보물제작(2,860,000원) - 공공운영비 : 우편요금(3,938,800)	
2020년	- 사무관리비 : 무단투기 폐기물처리(18,033,400원), 지도점검을 위한 물품구매(6,731,000원) - 공공운영비 : 우편요금(3,154,770원), 통신요금(632,080원)	
2021년	- 사무관리비 : 홍보물 제작(1,867,000원), 지적측량비(280,500원) - 공공운영비 : 우편요금(1,976,890원), 통신요금(1,580,200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7,760	27,292	-	468	
2020년	30,640	28,551	-	2,089	
2021년	33,720	5,704	-	28,016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지도팀장 박명기	담당자	환경7급 유홍철 환경8급 손나은 환경8급 이인혜 공업9급 손찬민	전화	2754 2758 2636 2751
-----	-------	------------	-----	--	----	------------------------------

(환경민원 비상근무 운영) (P - 45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환경민원 비상근무자 2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환경민원 비상근무자 급식 및 피복 지급을 통한 효율성 증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8,580	8,640	8,400	240	9,360	720	
국 비							
도 비							
시 비	8,580	8,640	8,400	240	9,360	72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환경민원 비상근무자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 제3항 [별표3]
근거내용	제19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③ 수시지도·점검은 별표3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해당 년도 정기지도점검계획 횟수의 3분의 1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 [별표3] 수시 지도·점검 기준 1. 가뭄, 장마철, 추석·설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2. 환경오염관련 민원 다발지역, 오염의심지역 및 취약지역 3.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생략)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18.9.27.부터 운영되고 있는 환경민원 비상근무의 현장대응 시 근무복 착용을 통해 상대방에게 시소속 공무원임을 인지시키고, 특히 야간근무 시 시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환경민원 비상근무 운영	합 계		9,360	
	201-01 사무관리비	○ 환경민원비상근무 피복비: 240,000원*23명 =	5,520	
		○ 환경민원비상근무 급식비: 8,000원*2명*20일*12월 =	3,840	

□ 사업 추진계획

- 2022.01.~12. : 자원순환과 환경민원 비상근무자를 위한 급식 및 피복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급식비 및 피복비 1,253,000원 집행	
2020년	급식비 및 피복비 6,560,000원 집행	
2021년	급식비 및 피복비 5,520,000원 집행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300	1,253	-	2,047	
2020년	8,580	6,560	-	2,020	
2021년	8,640	5,520	-	3,12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담당자	행정8급 이현정	전화	2767
-----	-------	------------	-----	----------	----	------

(재활용수집소 운영) (P - 45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8,029톤(22톤/일, 2020년 기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재활용수집소의 원활한 운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306,166	1,533,716	1,362,261	171,455	2,086,903	553,187	
국 비							
도 비							
시 비	1,306,166	1,533,716	1,362,261	171,455	2,086,903	553,187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택배 및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한 재활용품 처리량 확대에 재활용 선별인력 8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폐기물 처리 비용 확대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조
근거내용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시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반입량이 증가로 재활용 선별 이후 발생된 폐기물 발생량의 원활한 처리 (3년간 재활용품 처리량 2018년(6,173톤) → 2019년(7,020톤) → 2020년(8,029톤))
- 재활용수집소 내 선별인력 8명 증가 등 화재 불꽃감지기, 휴게실 환경개선공사 등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개선을 통해 재활용 선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 고
공 통	합 계		2,086,903	
재활용수집소 지원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김포시 재활용수집소 운영 · 인건비 : 997,716,000원 · 운영비 : 1,060,965,000원	= 2,058,681	
	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김포시 재활용수집소 자본적 지출 · 28,222,000원	= 28,222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9.~11. : 연간 운영계획수립
- 2022.01.~12. : 김포시 재활용수집소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수거량 : 7,020톤 - 판매량 : 5,111톤 - 판매액 : 772,832천원	
2020년	- 수거량 : 8,029톤 - 판매량 : 6,061톤 - 판매액 : 787,877천원	
2021년	- 수거량 : 5,749톤 - 판매량 : 4,480톤 - 판매액 : 612,354천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076,541	950,668	-	125,873	
2020년	1,306,166	1,229,087	-	77,079	
2021년	1,533,716	1,533,716	-	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담당자	행정7급 차송이	전화	1937
-----	-------	-------------	-----	----------	----	------

(김포자원회수센터 운영) (P - 45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감암로 123(걸포동)
- 사업규모 : 종량제봉투 창고, 재활용품 보관시설 유지비용 및 재활용 일부 보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자원회수센터 내 종량제봉투 창고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유지관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2,760	19,000	19,000	0	12,200	-6,800	
국 비							
도 비							
시 비	22,760	19,000	19,000	-	12,200	-6,8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종량제봉투 창고(204㎡) 이전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250㎡) 증축으로 전기요금분은 재활용수집소 예산으로 이동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조
근거내용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재활용쓰레기 증가로 인해 김포자원회수센터로 종량제봉투(기존 재활용수집소내 위치) 이전에 따라 무인경보시스템 추가 설치
- 재활용품 보관시설 확대 운영으로 상하수도 요금 등 유지관리비용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 고
김포자원회수센터 운영	합 계		12,200	
	201-01 사무관리비	○ 무인경보시스템: 1,000,000원*2대 =	2,000	
	201-02 공공운영비	○ 김포자원회수센터 운영 = · 상하수도 요금: 600,000원*12월=7,200,000원 = · 시설장비 유지비: 3,000,000원 =	10,200 7,200 3,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종량제봉투 창고 운영에 따른 무인경보시스템 추가 설치 및 기존장비 유지비용 납부
- 2022.01.~12. : 김포자원회수센터 내 시설의 공공요금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사무관리비 : 정수기 임차료(538,920원), 소모품비(1,818,100원), 무인경보시스템(968,000원), 에어컨 가스 충전(66,000원) - 공공운영비 : 상하수도요금(6,619,250원), 전기요금(6,332,590원), 통신요금(350,550원), 지적측량(1,086,800원), 시설장비 유지비(1,116,700원)	
2020년	- 사무관리비 : 무인경보시스템(968,000원) - 공공운영비 : 상하수도요금(6,218,050원), 전기요금(6,539,630원), 통신요금(302,880원), 차량관제시스템 사용료(115,500원),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969,840원), 전선 수리비(973,500원)	
2021년	- 사무관리비 : 무인경보시스템(979,000원) - 공공운영비 : 상하수도요금(5,124,210원), 전기요금(4,906,180원), 배관수리비(2,375,000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0,720	16,693	-	4,027	
2020년	22,760	16,087	-	6,673	
2021년	19,000	13,384	-	5,616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담당자	행정7급 차송이	전화	1937
-----	-------	-------------	-----	----------	----	------

(자원순환관리사 운영) (P - 45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1월
- 사업규모 : 자원순환관리사(기간제 근로자) 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시민인식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0	0	0	0	53,433	53,433	
국 비							
도 비							
시 비	-	-	-	-	53,433	53,433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자원순환관리사를 통해 재활용 분리배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동·단독주택 주민교육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요령 안내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근거내용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동·단독주택의 재활용품 거점수거지점에서 재활용품 불가품목 사전 선별하고, 지역주민에게 분리배출 방법 안내 및 현장 밀착홍보로 주민 참여
- 비대면 소비의 확대로 택배 포장재 사용량 증가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자원순환관리사 운영	합 계		53,433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자원순환관리사 인부임 = 42,953 · 기본급: 86,880원*2명*167일 = 29,018 · 유급휴일수당: 86,880원*2명*46일 = 7,993 · 명절휴가비: 500,000원*2명*1회 = 1,000 · 4대보험료 : 38,011,000원*13% = 4,942 ○ 피복비: 240,000원*2명 = 480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 10,000원*50개*20회 =	1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2. : 자원순환관리사 모집공고
- 2022.03.~11. : 자원순환관리사 운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담당자	행정9급 나대준	전화	2773
-----	-------	-------------	-----	----------	----	------

(재활용 정책 안내) (P - 45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재활용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재활용 정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홍보물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의 안내로 주민참여 고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6,000	11,000	11,000	0	14,000	3,000	
국 비							
도 비							
시 비	16,000	11,000	11,000	-	14,000	3,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 개정, 아이스팩 순환사업 등 재활용 정책 홍보 및 제도 안정화 필요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근거내용	폐기물관리법 제4조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필요
- 올바른 재활용 정책을 알리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시민들이 재활용 정책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 고
		합 계	14,000	
재활용 정책 안내	201-01 사무관리비	○ 재활용 정책 안내문 등 인쇄: 500원*10,000매 =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물품 제작: 5,000원*1,000매 =	5,000 5,000	
	201-02 공공운영비	○ 다량배출사업장 및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소에 안내문 등 우편발송 · 500원*2,000건*4회 = 4,000,000원	4,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투명페트병 제도 개정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물품 및 안내문 제작
- 2022.02.~12. : 다량배출사업장 및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 우편발송 및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안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1회용품 규제안내 홍보물 제작 : 550,000원 -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우편 발송비 : 575,090원 - 재활용 정책 관련 안내문, 우편 발송비 : 4,945,900원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안내문 제작비 : 660,000원	
2020년	- 1회용품 규제안내 홍보물 제작 : 550,000원 -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우편 발송비 : 402,460원 - 재활용 정책 관련 안내문, 우편 발송비 : 4,097,660원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안내문 제작비 : 1,760,000원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관련 안내문 : 336,840원 - 시군종합평가 폐건전지 수거 홍보 우편발송비 : 183,600원 -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 6,216,000원	
2021년	- 재활용 분리수거대 스티커 제작 : 1,298,000원 - 시군종합평가 폐건전지 수거 홍보 우편발송비 : 444,620원 - 자원순환형 재활용제품 협약 현수막 구입 : 38,500원 -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발송비 : 815,360원 -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문 제작 : 2,655,000원 - 재활용 정책 관련 안내문 발송비 : 1,077,600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6,000	6,731	-	9,269	8,160천원 감액
2020년	16,000	13,546	-	2,454	
2021년	11,000	6,573	-	4,427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담당자	행정7급 차송이	전화	1937
-----	-------	-------------	-----	----------	----	------

(폐건전지 교환 사업) (P - 45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새건전지 240,000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생활 속 유해폐기물의 분리배출 유도에 따른 환경보호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60,000	1,152	76,800	-75,648	76,800	75,648	
국 비							
도 비							
시 비	60,000	1,152	76,800	-75,648	76,800	75,648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으로 인해 2021년도 제1회 추경에서 예산액을 삭감했으며, 교환 품목인 종량제봉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져 시군종합평가 대상의 일부인 폐건전지 수거의 효과가 미미해 새건전지 교환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함
- 폐건전지 20개당(0.5kg) ↔ 새건전지 2개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근거내용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시행중인 폐건전지-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으로 인해 교환사업의 만족도가 낮아져 새건전지 교환사업으로 추진해 유해물질인 건전지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 고
폐건전지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폐건전지↔새건전지 교환 사업: 320원*240,000개 =	76,8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9 : 2022년 폐건전지 ↔ 새건전지 교환사업 추진계획 보고
- 2022.01~12. : 폐건전지-새건전지 교환사업에 필요한 건전지 구입 및 읍면동 배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폐건전지 교환사업 종량제봉투 구매 : 10L 36,000매, 20L 99,000매, 56,160,000원	
2020년	- 폐건전지 교환사업 종량제봉투 구매 : 10L 78,000매, 20L 62,000매, 56,560,000원	
2021년	- 폐건전지 교환사업 종량제봉투 구매 : 10L 3,600매, 1,152,000원 (그 외 무상지원 잔여분 활용)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6,160	56,160	-	0	
2020년	60,000	56,560	-	3,440	
2021년	1,152	1,152	-	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담당자	행정7급 차송이	전화	1937
-----	-------	-------------	-----	----------	----	------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 (P - 45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재활용 분리수거대 220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재활용 자원의 분리배출을 활성화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4,700	17,500	17,500	0	50,000	32,500	
국 비							
도 비							
시 비	14,700	17,500	17,500	-	50,000	32,5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관리자가 미지정된 단독주택지에 재활용쓰레기 불법투기, 기존 분리수거함의 용량부족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재활용품 수거를 위하여 읍면동별 거점수거지역에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자 예산 증액함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근거내용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민원 발생이 빈번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리가 힘든 지역에 거점 수거지마다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기존 용량보다 확대 설치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도로상 수거거점지에 배출하는 재활용 쓰레기는 방치, 혼합배출 등 훼손으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워 수거함을 확대 보급해 양질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	206-01 재료비	○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 = 50,000 · 5구 분리수거함 : 350,000원*120개 = 42,000 ·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대 : 80,000원*100개 = 8,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계획 보고
- 2022.02. : 재활용 분리수거대 조달 구입
- 2022.02.~12. : 단독주택 단지 신청 접수 → 설치장소 협의 → 분리수거대 배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 : 2종, 131개, 34,931,210원 -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 2종, 1,557개, 9,774,700원	
2020년	-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 : 25개, 7,879,820원 - 재활용 분리수거대 그물망 구입 : 200개, 744,000원 -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 210개 5,700,610원	
2021년	-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 : 40개, 11,933,640원 - 재활용 분리수거대 그물망 구입 : 130개 585,000원 -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 100개 2,312,420원 -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대 구입 : 47개, 1,122,000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5,452	44,706	-	746	
2020년	14,700	14,324	-	376	
2021년	17,500	17,490	-	1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담당자	행정7급 차송이	전화	1937
-----	-------	-------------	-----	----------	----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P - 45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1,000톤/년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폐비닐의 수거 촉진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재활용 활성화 등 영농 후 발생되어 불법소각 및 매립되는 농촌폐비닐 수거 촉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05,720	105,720	105,720	0	105,720	0	
국 비							
도 비	21,144	21,144	21,144	-	21,144	-	20%
시 비	84,576	84,576	84,576	-	84,576	-	8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근거내용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영농 후 발생되어 불법소각, 방지 및 매립되는 농촌폐비닐의 수거 촉진과 환경오염 방지,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301-12 기타보상금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 검정비닐(하이덴형HDPE) kg당 100원 = 105,720 · 흰색비닐(로덴형LDPE) kg당 140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2. : 2022년도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예산확보
- 2022.01.~12. :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매월 지급
- 2022.03. : 봄철 농촌 폐비닐 집중수거
- 2022.10. : 가을철 농촌 폐비닐 집중수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농촌폐비닐(하이덴형HDPE검정 · 로덴형LDPE흰색) 수거량 1,012,106kg	
2020년	- 농촌폐비닐(하이덴형HDPE검정 · 로덴형LDPE흰색) 수거량 951,433kg	
2021년	- 농촌폐비닐(하이덴형HDPE검정 · 로덴형LDPE흰색) 수거량 653,980kg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31,087	94,932	36,155	0	
2020년	141,875	112,626	-	29,249	
2021년	105,720	58,585	-	47,135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담당자	지방한시임기8호 권희숙	전화	2946
-----	-------	-------------	-----	--------------	----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P - 45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1,000톤/년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폐비닐의 수거 촉진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재활용 활성화 등 영농 후 발생되어 불법소각 및 매립되는 농촌폐비닐 수거 촉진(전액국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0,000	10,000	10,000	0	10,000		
국 비	10,000	10,000	10,000	-	10,000		100%
도 비							
시 비	-	0	-	-	-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근거내용	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영농 후 발생되어 불법소각, 방지 및 매립되는 농촌폐비닐의 수거 촉진과 환경오염 방지,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301-12 기타보상금	○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 검정비닐(하이덴형HDPE) kg당 10원 = 10,000 · 흰색비닐(로덴형LDPE) kg당 10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2. : 2022년도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예산확보
- 2022.01.~12. :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매월 지급
- 2022.03. : 봄철 농촌 폐비닐 집중수거
- 2022.10. : 가을철 농촌 폐비닐 집중수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농촌폐비닐(하이덴형HDPE검정 · 로덴형LDPE흰색) 수거량 1,012,106kg	
2020년	- 농촌폐비닐(하이덴형HDPE검정 · 로덴형LDPE흰색) 수거량 951,433kg	
2021년	- 농촌폐비닐(하이덴형HDPE검정 · 로덴형LDPE흰색) 수거량 수거량 653,980kg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670	7,670	-	0	
2020년	10,000	9,430	-	570	
2021년	10,000	6,624	-	3,376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담당자	지방한시임기8호 권희숙	전화	2946
-----	-------	-------------	-----	--------------	----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P - 45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7개소(월곶면 군하리 36-4 등 7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무분별한 재활용품 배출로 주변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여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통한 주변환경 개선 및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고자 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0	30,000	30,000	0	105,000	75,000	
국 비	-	15,000	15,000	-	52,500	37,500	50%
도 비							
시 비	-	15,000	15,000	-	52,500	37,500	5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재활용 동네마당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의성 증대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조
근거내용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단독주택, 농어촌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개선하고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401-01 시설비	○ 재활용동네마당 시설 설치비: 15,000,000원*7개소 = 10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6. : 2021년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하성면 석평로 378(후평3리 마을회관 옆), 월곶면 문수산로252번길 13(성동2리 마을회관 인근)]
- 2021.09. : 재활용동네마당 재활용 분리배출 실태조사
- 2022.01.~02. : 2022년 재활용동네마당 세부추진계획수립 [월곶면 군하리 36-4 등 7개소]
- 2022.05.~09. :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추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담당자	행정9급 나대준	전화	2773
-----	-------	-------------	-----	----------	----	------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 (P - 45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2개소(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107-17 등 1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전용수거함 배출로 수거지점을 한정시켜 수거 시간을 단축하고 수거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도모하고 또한 무분별한 불법투기를 방지하여 주위의 미관 개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0	0	0	0	161,300	161,300	
국 비							
도 비	-	0	-	-	48,390	48,390	30%
시 비	-	0	-	-	112,910	112,910	7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불법 소각 및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예산 산정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
근거내용	①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21.3.16.>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으면 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수거 도모
-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	합 계		= 161,300	
	401-01 시설비	○ 농촌지역 재활용품 공동집하장: 4,300,000원*1개소	= 4,300	
		○ 공동수거함: 7,000,000원*1개소	= 7,000	
		○ 분리수거시설 (고정식): 15,000,000원*10개소	= 15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02. : 2022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세부추진계획수립[통진읍 응정리 107-17 등 12개소]
- 2022.05.~09. :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추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담당자	행정9급 나대준	전화	2773
-----	-------	-------------	-----	----------	----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P - 45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10개소 (양촌읍 학운리 319-2 등 1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영농 재활용 활성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0	0	0	0	59,830	59,830	
국 비	-	0	-	-	17,949	17,949	30%
도 비							
시 비	-	0	-	-	41,881	41,881	7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김포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높아 공동집하장 추가 설치 필요 증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근거내용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농촌폐비닐의 불법 소각 및 매립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농약병 등 안전상의 위험 방지를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401-01 시설비	○ 공동집하장 시설 설치: 5,983,000원*10개소 = 59,83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02. : 공동집하장 확충 세부추진계획수립[양촌읍 2개소, 통진읍 4개소, 대곶면 3개소, 김포본동 1개소]
- 2022.03. : 공동집하장 착공 예정
- 2022.09. : 공동집하장 준공 예정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담당자	행정9급 나대준	전화	2773
-----	-------	-------------	-----	----------	----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사업) (P - 45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 사업규모 : 37.1톤/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846,415	1,772,988	1,772,988	0	2,098,933	325,945	
국 비							
도 비							
시 비	1,846,415	1,772,988	1,772,988	-	2,098,933	325,945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인구 증가로 인한 2022년 음식물류 폐기물 톤당 처리단가 및 처리량의 증가가 예상됨으로 예산 증액
- 사업규모 산정 근거 : '21.01. ~ 07. 평균 처리량이 37.1톤/일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6조
근거내용	폐기물관리법 제14조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③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대행계약은 시장과 대행 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대행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2020.10월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 공공시설(자원화센터) 처리물량을 제외하고 잔여량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 편성
-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전문 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실시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155,000원*37.1톤*365일 =	2,098,933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0.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
- 2021.11. : 공개입찰 공고
- 2021.12. : 업체 선정
- 2022.01.~12. : 사업진행(착수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계약금액 : 130,000원/톤 - 처 리 량 : 10,600톤/년(29.05톤/일) - 계약방법 : 수의계약(2회 유찰)	
2020년	- 계약금액 : 134,000원/톤 - 처 리 량 : 11,988톤/년(32.84톤/일) - 계약방법 : 수의계약(2회 유찰)	
2021년	- 계약금액 : 133,000원/톤 - 처 리 량 : 11,488톤/년(37.5톤/일) *1월~10월까지 처리량 - 계약방법 : 수의계약(2회 유찰)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646,960	1,458,957	130,000	58,003	
2020년	1,846,415	1,616,822	-	229,593	
2021년	1,772,988	1,361,844	-	411,144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담당자	공업7급 윤혜원	전화	2776
-----	-------	-------------	-----	----------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P - 45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성과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 8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에 따른 성과 평가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960	960	960	0	960		
국 비							
도 비							
시 비	960	960	960	-	96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6조
근거내용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명 2.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3.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 평가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 120,000원*8명 =	96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3. : 평가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2022.04.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개최
- 2022.04.~05.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전년도 성과 결과보고(경기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19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실시(평가위원 6명 참석) -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상황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와 선진화 도모	
2020년	- '2020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실시(평가위원 7명 참석)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회의 추진 -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상황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와 선진화 도모	
2021년	- '2021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실시(평가위원 8명 참석)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회의 추진 -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상황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와 선진화 도모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960	720	-	240	
2020년	960	210	-	750	
2021년	960	960	-	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담당자	공업7급 윤혜원	전화	2776
-----	-------	-------------	-----	----------	----	------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 (P - 45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200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로 인한 악취 민원 감소 및 예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2,000	12,000	12,000	0	12,000		
국 비							
도 비							
시 비	12,000	12,000	12,000	-	12,000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근거내용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지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무단배출로 인한 악취 민원 감소 및 예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	206-01 재료비	○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 : 60,000원*200개 =	1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음식물폐기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설치 계획 보고 및 구입
- 2022.01.~12. : 읍면동 신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 용기 배부(연중 수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 523개, 29,972,000원	
2020년	-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 175개, 10,109,290원	
2021년	-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 120개, 6,876,930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0,000	29,972	-	28	
2020년	12,000	10,109	-	1,891	
2021년	12,000	6,877	-	5,123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담당자	행정7급 차송이	전화	1937
-----	-------	-------------	-----	----------	----	------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P - 46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환경미화원 3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적환장 폐기물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급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2회 추경 (C)			
계	653,128	220,822	220,822	0	259,400	38,578	
국 비							
도 비							
시 비	443,630	220,822	220,822	-	259,400	38,578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김포시 유입인구 증가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대형폐기물 증가로 운영인력의 근무시간 연장
-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서 44조에 따른 산업재해 위로금 및 임금차액 지급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김포시 환경을 사랑하는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13조, 제28조, 제48조, 제50조
근거내용	제13조(체육대회 지원) 시는 조합원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대회에 조합원 1인당 4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한다. 제28조(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48조(피복비) 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도로보수원은 제외한다)에 대해 연간 50만원 상당의 피복을 조합과 협의하여 구매한다. 제44조(임금) 시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정상근무시의 임금차액을 전액 지급한다. 시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전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2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환경미화원의 원활한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임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편성 필요
- 환경미화원과의 원활한 임금교섭으로 복리증진과 안정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인력운영비 (자원순환과)	합 계 = 259,400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환경미화원 인건비 · 기본급 : 12월*3명=134,028,000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60%*2회*3명=13,680,000원 · 가족수당 : 12월*3명=4,560,000원 · 정액급식비 : 170,000원*12월*3명=6,120,000원 · 연차유급휴가수당: 3명*10일=4,896,000원 · 운전수당 : 40,000원*12월*3명=1,44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포함) : 10시간*52주*3명=47,970,000원 ·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서(44조)에 따른 업무상 위로금 지급 : 평균임금 2개월분 201,730원*30일*2달=12,104,000원 ·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서(44조)에 따른 임금 100% 보존 : 근로복지공단이 급여의 70% 지급, 30%의 차액을 산재 종료 후 일괄 지급예정(6,000천원*30%*5개월=9,000,000원)	= 233,798
	304-01 연금부담금	○ 국민연금 : 208,172,066*4.5%=9,368,000원	= 9,368
	304-02 국민건강보험금	○ 건강보험료 : 208,172,066*5.145%=10,711,000원	= 10,711
	304-04 고용보험료부담금등	○ 고용보험료 : 208,172,066*1.65%=3,435,000원 ○ 산재보험료 : 208,172,066*1.003%=2,088,000원	= 5,523

□ 사업 추진계획

- 2022.01. : 21.07.19에 발생한 유성만 반장 산업안전사고에 따른 12월(예상)장해판정시 평균 임금의 2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무기계약직 단체협약서 44조)
- 2022.01. : 산업재해 종료 후 임금 보존을 위한 차액 30% 지급(무기계약직 단체협약서 44조)
- 2022.01.~12. : 환경미화원 인건비, 4대보험료 지출을 위한 계획 수립 후 월별 지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월별 지출 - 체육행사 개최 예정	
2020년	-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월별 지출 - 코로나로 인한 체육행사 미개최	
2021년	-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월별 지출 - 코로나로 인한 체육행사 미개최 - 피복비 지급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30,673	629,899		773	
2020년	443,630	443,630		-	
2021년	220,822	157,351		63,471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이용준	담당자	시설9급 정태환	전화	2771
-----	-------	------------	-----	----------	----	------

2022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와 소관 위원회 운영) (P - 46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3개 위원회 운영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원·도시숲·산사태 취약지 관련 분야 심의·자문 위원회 운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2,800	3,200	3,200		5,120	1,920	
국 비							
도 비							
시 비	2,800	3,200	3,200		5,120	1,92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수당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위원회)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위원회) - 산림보호법(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제50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2항 제45조의9
근거내용	-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제1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법률에 명시된 심의·자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
 - 도시공원위원회 :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자문·심의
 - 도시숲위원회 : 도시숲(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자문·심의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시급성 고려 예방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심의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공원녹지과 소관 위원회 운영	201-02 사무관리비	◎ 위원수당 : 80,000원 * 8명 * 8회 =	5,12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03. 19. : 제1회 도시공원위원회 개최(3건 / 자문3건)
- 2021. 05. 27. : 제2회 도시공원위원회 개최(4건 / 심의3건, 자문1건)
- 2021. 09. 09. : 제3회 도시공원위원회 개최(5건 / 심의5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도시공원위원회 : 4회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1회 · 도시림조성관리위원회 : 1회	
2020년	· 도시공원위원회 : 4회	
2021년	· 도시공원위원회 : 2회 · 도시숲위원회 : 1회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400	2,987		1,423	
2020년	2,800	2,074		725	
2021년	3,200	1,549		1,651	10.31일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오재일	담당자	녹지7급 안영빈	전화	2344
-----	-------	------------	-----	----------	----	------

(하성근린공원 불법건축물 철거사업) (P - 46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01. 01. ~ 2022. 06. 30. ○ 위 치 : 하성면 석탄리 산109일원
- 사업규모 : 1동 [제조장(198㎡), 화장실(6.6㎡)]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원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	-	-	-	15,375	15,375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	-	-	-	15,375	15,375	
기 타	-	-	-	-	-	-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공원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철거 수행 비용

□ 법적근거

근거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의 관한 법률 - 행정대집행법	제25조 제2조
근거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 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1월	-	-	-	-	-	2021.10월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공원경관 향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하성근린공원 불법건축물 철거사업	401-01 시설비	◎ 하성근린공원 불법건축물 철거사업 : 205㎡*75,000원 =	15,375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04. 19. : 불법건축물 처분 사전 통지 [김포시]
- 2021. 06. 01. : 의견서 제출 [행위자]
- 2021. 06. 09. : 의견서 검토결과서 통지 [김포시]
- 2021. 06. 15. :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 : 3개월)
- 2021. 10. 04. : 불법건축물 행정 절차 이행 (철거 미이행 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2020년	- 불법 건축물 철거 요청 (6차 공문 발송)	
2021년	-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 명령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2020년	-				
2021년	-				10.31기준 실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해당없을시 미제출)

위치도 10,000 :1 이상 (칼라)	
현장사진 (칼라)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담당자	녹지7급 안영빈	전화	2344
-----	-------	--------	-----	----------	----	------

(명품 도시숲 조성 및 관리(인건비)) (P - 46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0월
- 위 치 : 관내 가로수·가로화단·쌈지공원 등
- 사업규모 : 6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도시숲 관련 전문 인력 활용 및 신속한 민원해결,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제공 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30,574	145,671	145,671		186,098	40,427	
국 비							
도 비							
시 비	130,574	145,671	145,671		186,098	40,427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도시숲 품질 향상과 관리량 증가로 인력 확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분 반영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도시숲 이용률 확대로 인해 늘어나는 다양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숲 관리인력이 필요한 사항임
- 매년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인수시설 증가로 인한 관리인력 필요성 증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 통		○ 합 계 = 186,098	
명품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도시숲 관리원 운영 = 114,033	
		· 기본급 : 86,880원 * 6명 * 167일 = 87,054	
		· 유급휴일수당 : 86,880원 * 6명 * 46일 = 23,979	
		· 명절휴가비 : 500,000원 * 6명 * 1회 = 3,000	
		◎ 4대 보험료 : 114,033,000원 * 13% = 14,825	
		◎ 피복비 : 240,000원 * 6명 = 1,440	
		◎ 도시숲 관리 일사역 : 186,000원 * 6명 * 50일 = 55,8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 02. : 도시숲관리원 채용 계획 수립
- 2022.02. ~ 2022. 03. : 도시숲관리원 채용 공고 및 채용
- 2022.03. ~ 2022. 10. : 도시숲관리원 운영
- 2022.12. : 도시숲관리원 운영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가로숲길관리원 운영(2019.2.~10./4인) -도시숲 등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가로수 병해충방제, 피해목고사목 정리, 가지치기 -가로수도시숲교통섬쌘지공원 관리 및 제조작업 등	
2020년	-가로숲길관리원 운영(2020.3.~10./4인) -도시숲 등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가로수 병해충방제, 피해목고사목 정리, 가지치기 -가로수도시숲교통섬쌘지공원 관리 및 제조작업 등	
2021년	-도시숲관리원 운영(2021.3.~10./4인) -도시숲 등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가로수 병해충방제, 피해목고사목 정리, 가지치기 -가로수도시숲교통섬쌘지공원 관리 및 제조작업 등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16,105	111,341	-	4,764	
2020년	130,574	130,113	-	461	
2021년	145,671	142,000	-	3,671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장 이미숙	담당자	녹지9급 이승훈	전화	2489
-----	-------	------------	-----	----------	----	------

(명품 도시숲 조성 및 관리)(P - 46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도시숲(가로수)
- 사업규모 : 가로수 378km, 도시림 111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관내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숲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3,885,080	4,035,659	3,621,159	414,500	4,071,705	36,046	
국 비							
도 비							
시 비	3,885,080	4,035,659	3,621,159	414,500	4,071,705	36,046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가로수 및 가로화단의 신규 인수구간 및 신규조성 도시숲 등 유지관리 물량 반영에 따른 관리예산 증가 필요
※ 가로수 인수시설 : 풍무2지구, 학운3산단, 사우2지구 가로수 및 가로화단
- 보행자도로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추가 사업진행으로 인한 예산 필요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2021.10월	2021.10월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주요 사업내용
 - 1) 가로화단 유지관리사업 : 가로수·가로화단·교통섬·쌈지공원·마을정원의 예·제초·관목전정 등 유지관리
 - 2)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발생 빈도가 높아진 수목 병해충의 집중 관리
 - 3) 수목관리 연간단가 : 가로수 가지치기, 생육환경개선, 보식, 민원 처리 등 도시숲 유지관리
 - 4) 도시숲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 보행자도로, 쌈지공원 내 시설물(벤치, 파고라 등) 보수 및 교체 사업
 - 5) 수묘장 유지관리 사업 : 효과적인 수목 공급을 위해 묘목 가지치기, 관수, 사비 등 유지관리
 - 6) 가로화단 보식사업 : 자연고사, 답압, 재해 등으로 고사한 수목·관목 보식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명품도시숲 조성 및 관리		합 계 = 4,071,705	
	201-01 사무관리비	◎ 명품도시숲 조성 및 관리 = 89,000 · 장비임차(포크레인 등) : 550,000원 * 4대 * 30회 = 66,000 · 소모성물품구입 : 23,000원 * 10종 * 100개 = 23,000	
	201-02 공공운영비	◎ 도시숲 장비보수 및 차량유류 = 20,480 · 도시숲 관리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 200,000원 * 40회 = 8,000 · 도시숲 관리차량 유류대 : 60,000원 * 4대 * 52회 = 12,480	
	206-01 재료비	◎ 조성 및 관리 재료구입(수목, 비료, 등) = 60,000 · 수목유지관리 재료(수목, 비료 등) : 50,000원 * 600주 = 30,000 · 도시숲 조성 초화류 : 3,000원 * 10,000주 = 30,000	
	401-01 시설비	◎ 명품 도시숲 유지관리 = 3,451,549 · 고촌읍 유지관리사업 : 45,000,000원 * 4회 = 180,000 · 풍무동 유지관리사업 : 31,500,000원 * 4회 = 126,000 · 사우·북변·감정 유지관리사업 : 17,350,000원 * 4회 = 69,400 · 걸포동 유지관리사업 : 15,750,000원 * 4회 = 63,000 · 양촌읍 유지관리사업 : 36,000,000원 * 4회 = 144,000 · 통진읍 유지관리사업 : 21,000,000원 * 4회 = 84,000 · 대곶·월곶 하성 유지관리사업 : 25,000,000원 * 4회 = 100,000 · 장기1지역 유지관리사업 : 15,000,000원 * 4회 = 60,000 · 장기2지역 유지관리사업 : 34,875,000원 * 4회 = 139,500 · 장기3지역 유지관리사업 : 14,400,000원 * 4회 = 57,600 · 운양동지역 유지관리사업 : 40,500,000원 * 4회 = 162,000 · 마산동지역 유지관리사업 : 18,450,000원 * 4회 = 73,800 · 구래동지역 유지관리사업 : 19,800,000원 * 4회 = 79,200 · 학운산업단지지역 유지관리사업 : 19,800,000원 * 4회 = 79,200 · 고촌읍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 8,500원 * 4,310주 * 4회 = 146,540 · 사우동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 8,300원 * 2,010주 * 4회 = 66,732 · 풍무동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 5,000원 * 1,970주 * 4회 = 39,400 · 김포본동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 11,600원 * 2,050주 * 4회 = 95,120 · 운양동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 5,100원 * 4,450주 * 4회 = 90,780 · 장기동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 5,700원 * 3,680주 * 4회 = 83,904 · 마산동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 6,200원 * 3,250주 * 4회 = 80,600 · 구래동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 7,300원 * 2,160주 * 4회 = 63,072 · 통진읍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 7,300원 * 2,080주 * 4회 = 60,736 · 양촌읍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 7,400원 * 5,650주 * 4회 = 167,240 · 대곶면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 12,600원 * 2,980주 * 4회 = 150,192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 월곶면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 4,500원 * 2,950주 * 4회 = 53,100 · 하성면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 9,300원 * 1,340주 * 4회 = 49,848 · 고촌읍 수목관리 연간단가 : 21,000원 * 4,310주 = 90,510 · 사우,풍무동 수목관리 연간단가 : 21,000원 * 3,980주 = 83,580 · 김포본동 수목관리 연간단가 : 21,000원 * 2,050주 = 43,050 · 운양동 수목관리 연간단가 : 21,000원 * 4,450주 = 93,450 · 장기동 수목관리 연간단가 : 21,000원 * 3,680주 = 77,280 · 마산동 수목관리 연간단가 : 21,000원 * 3,250주 = 68,250 · 구래동 수목관리 연간단가 : 21,000원 * 2,160주 = 45,360 · 통진읍,대곶면 수목관리 연간단가 : 21,000원 * 5,065주 = 106,365 · 양촌읍 수목관리 연간단가 : 21,000원 * 5,650주 = 118,650 · 월곶,하성면 수목관리 연간단가 : 21,000원 * 4,290주 = 90,090 · 수묘장 유지관리사업 : 30,000원 * 묘목 2,000주 = 60,000 · 살수차 급수시설 설치사업 : 10,000,000원 * 급수시설 1개소 = 10,000 ◎ 도시숲 시설물 유지관리 = 447,860 · 도시숲 시설물 설치사업 : 1,988,000원 * 175개소 = 347,900 · 도시숲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 196,000원 * 510개소 = 99,960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도시숲 관리용 장비구입 = 2,816 · 고지 전정톱 715,000원 * 2대 = 1,430 · 뿌리단근용 작컷소 275,000원 * 2대 = 550 · 충전식 브로워 418,000원 * 2대 = 836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3회추경 (D)			
계	16,267,734	3,885,080	4,035,659	3,621,159	414,500	4,071,705	4,275,290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16,267,734	3,885,080	4,035,659	3,621,159	414,500	4,071,705	4,275,29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2. : 계획보고 및 설계내역서 작성 등
- 2022. 2. : 도시숲 수목관리 연간단가, 도시숲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착공
- 2022. 4. : 도시숲 유지관리사업·병해충 방제사업 착공
- 2022. 11. : 사업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9년	도시림 유지관리사업	- 사업량 : 8권역 - 예산액 : 915,750천원 - 집행액 : 754,054천원 - 잔액발생사유 : 낙찰차액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 사업량 : 가로수 수간주사 6,858주·약제살포 1,605주 - 예산액 : 220,800천원 - 집행액 : 195,492천원 - 잔액발생사유 : 낙찰차액	
	도시림 전지사업	- 사업량 : 가지치기 교목 1,658주 - 예산액 : 187,000천원 - 집행액 : 171,211천원 - 잔액발생사유 : 낙찰차액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 사업량 : 교목 1670주 - 예산액 : 200,400천원 - 집행액 : 196,000천원 - 잔액발생사유 : 낙찰차액	
	가로수 및 가로화단 보식사업	- 사업량 : 교목 299주·관목96,800주 식재 및 관목 14,260주 이식 등 - 예산액 : 1,034,200천원 - 집행액 : 1,027,038천원 - 잔액발생사유 : 낙찰차액	
2020년	도시림 유지관리사업	- 사업량 : 11권역 - 예산액 : 982,200천원 - 집행액 : 864,337천원 - 잔액발생사유 : 낙찰차액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 사업량 : 8권역 - 예산액 : 1,088,000천원 - 집행액 : 1,059,578천원 - 잔액발생사유 : 낙찰차액	
	도시림 전지사업	- 사업량 : 가지치기 372주 - 예산액 : 104,500천원 - 집행액 : 95,710천원 - 잔액발생사유 : 낙찰차액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 사업량 : 교목 810주 - 예산액 : 200,800천원 - 집행액 : 166,850천원 - 잔액발생사유 : 낙찰차액	
	수묘장 유지관리사업	- 사업량 : 묘목식재 1,950주 및 수묘장 유지관리 등 - 예산액 : 100,000천원 - 집행액 : 80,800천원 - 잔액발생사유 : 낙찰차액	
	가로수 및 가로화단 보식사업	- 사업량 : 교목 163주·관목47,780주 식재 - 예산액 : 700,000천원 - 집행액 : 667,503천원 - 잔액발생사유 : 낙찰차액	
2021년	도시숲 유지관리사업	- 사업량 : 14권역 - 예산액 : 1,139,900천원 - 집행예상액 : 1,150,132천원 - 잔액발생사유 : 낙찰차액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 사업량 : 15권역 - 예산액 : 1,340,760천원 - 집행예상액 : 1,124,875천원 - 잔액발생사유 : 낙찰차액	

	도시림 전지사업	- 사업량 : 가지치기 1,164주 - 예산액 : 140,000천원 - 집행액 : 78,390천원 - 잔액발생사유 : 낙찰차액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 사업량 : 수목보호판 87개 설치 외 - 예산액 : 140,000천원 - 집행액 : 121,210천원 - 잔액발생사유 : 낙찰차액	
	수묘장 유지관리사업	- 사업량 : 묘목 2,000주 - 예산액 : 60,000천원 - 집행예산액 : 51,825천원 - 잔액발생사유 : 낙찰차액	
	가로수 및 가로화단 보식사업	- 사업량 : 교목 137주, 관목 46,530주, 초화류 3,880주 - 예산액 : 500,000천원 - 집행액 : 449,599천원 - 잔액발생사유 : 낙찰차액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030,950	2,307,430	-	723,520	
2020년	3,885,080	3,858,480	-	26,599	
2021년	3,975,659	2,951,440	-	1,084,218	10.31.일 기준

□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장 이미숙	담당자	녹지7급 조민우 녹지8급 장소리 녹지9급 이우용 녹지9급 이승훈	전화	2366 2367 2365 2489
-----	-------	------------	-----	--	----	------------------------

(도시녹화 조성 및 관리(꽃피는 거리 조성사업))(P - 46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5월 ~ 11월
- 사업규모 : 꽃피는 거리 조성 3,540m 포토존 조성 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꽃이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고품격 도시이미지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320,000	800,000	500,000	300,000	719,500	△80,500	
국 비							
도 비							
시 비	320,000	800,000	500,000	300,000	719,500	△80,5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난간걸이 화분 자동관수 설비 설치로 인해 운영비가 절약되어 총물량이 증가하였음에도 사업비 감소
-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을 일괄용역으로 발주하지 않고 품목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까지는 소진되던 재경비 부분의 예산을 절약
- 장기 구래 마산동 교량부 난간걸이화분 사업 편입으로 인한 물량증가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50만 대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 필요성 증대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명품 도시숲 조성·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요구로 인하여 도로난간·가로등에 꽃걸이 화분2회(5 ~ 11월)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도시녹화 조성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관수자재 및 소모품 구입 : 10,000원*3,540m = 35,400	
	206-01 재료비	· 난간걸이 화분 재료구입 : 165,000원 * 3,540개 = 584,100	
	401-01 시설비	· 포토존 조성 : 50,000,000원 * 2개소 = 100,000	

※ 재료비 구성 165,000 = 64,000(꽃값)*2회 + 37,000(화분)

※ 대꽃면, 하성면은 난간걸이화분 설치 가능한 장소가 없어 포토존으로 조성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3회추경 (D)			
계	2,342,500	320,00	800,000	500,000	300,000	572,500	650,000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2,342,500	320,000	800,000	500,000	300,000	572,500	65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2022년 꽃피는 거리 조성계획보고
- 2022. 2. : 난간걸이 화분 물품구입 계약 체결
- 2022. 3. : 포토존 조성계획 수립 및 발주
- 2022. 5. :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 1회차
- 2022. 9. :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 2회차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9년	○ 2019년 꽃피는 거리 조성 - 기 간 : 2019. 5. 27 ~ 11.(기간 중 2회 식재) - 사 업 비 : 109,186천원(사업낙찰잔액활용) - 사 업 량 : 난간걸이형 화분 조성 358m - 계약방법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 식재수종 : 웨이브페츨니아	

2020년	○ 2020년 꽃피는 거리 조성 - 기 간 : 2020. 5. 27 ~ 10.(3회 식재) - 사 업 비 : 320,000천원 - 사 업 량 : 난간걸이형 화분 조성 720m - 계약방법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 식재수종 : 웨이브페츄니아, 선파첸스, 국화 등	
2021년	○ 2021년 꽃피는 거리 조성 - 기 간 : 2021. 5. ~ 11. (3회 식재) - 사 업 비 : 800,000천원 - 사 업 량 : 난간걸이형 화분 조성 2,131m - 계약방법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 식재수종 : 웨이브페츄니아, 국화 등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장 이미숙	담당자	녹지7급 조민우	전화	2366
-----	-------	------------	-----	----------	----	------

(도시녹화 조성 및 관리 (대보천 도시숲 배수로 정비사업))(P - 46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7월
- 사업규모 : 배수로 정비 340m, 산책로 정비 230m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대보천 도시숲 내 배수로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산책로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	-			144,600	144,600	
국 비		-					
도 비		-					
시 비	-	-			144,600	144,6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대보천 도시숲 내 배수관 파손으로 인해 산책로 침수 및 수목고사 현상 발생
-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산책로 이용객 증가로 인한 관련민원 발생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대보천 도시숲은 2010년 김포시에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점용허가를 통하여 산책로로 조성한 장소이며, 허가조건에 따라 유지보수 사업은 시비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도시녹화 조성 및 관리	401-01 시설비	◎ 대보천 도시숲 배수로 정비공사 144,600 · 배수로 설치 : 300,000원 * 340m = 102,000 · 수목이식 : 220,000원 * 110주 = 24,200 · 산책로 정비 : 80,000원 * 230m = 18,4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3회추경 (D)			
계	144,600	0	0			144,600	0	
공 정 별	설 계비							
	보상비							
	공사비	144,600	0	0		144,600	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대보천 도시숲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착공
- 2022. 3. : 대보천 도시숲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준공
- 2022. 4. : 대보천 도시숲 배수로 정비공사 발주 및 착공
- 2022. 6. : 대보천 도시숲 배수로 정비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장 이미숙	담당자	녹지9급 이우용	전화	2365
-----	-------	------------	-----	----------	----	------

(경기 선형공원 조성사업) (P - 46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8
- 사업규모 : 선형공원 조성 1.3km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선형공원 조성을 통한 녹지축 연결 및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0	0	0	0	260,000	260,000	
국 비							
도 비	0	0	0	0	130,000	130,000	
시 비	0	0	0	0	130,000	130,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공원녹지과-16663(2021.10.30.)호 2022년도 공원녹지정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알림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항
근거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휴게공간 추가조성 요구 민원 증가
- 나진포천 건너편 산책로 조성에 따른 녹지축 연결 필요성 대두
- 98번지방도(일산대교)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차단 도시숲 조성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공 통		260,000	
경기 선형공원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 선형공원 조성 : 200,000원 * 1,300m = 26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부지협의
- 2022. 3. 계약심사 및 발주
- 2022. 4. 공사 착공
- 2022. 8. 공사 준공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3회추경 (D)			
계	260,000	0	0			260,000	0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260,000	0	0		260,000	0	
	감리비							
	부대비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장 이미숙	담당자	녹지8급 장소리	전화	2367
-----	-------	------------	-----	----------	----	------

(해뜨는 한강정원 조성사업) (P - 46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0.
- 사업규모 : 마을정원 1개소 (3,000㎡)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마을정원 조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관광자원 개발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00,000	200,000	0	0	300,000	100,000	
국 비							
도 비	90,000	60,000			90,000	30,000	
시 비	210,000	140,000			210,000	70,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 (경기도 공원녹지과-15357)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정원문화사업 진흥 조례	제10조
근거내용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 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2년도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선정[경기도 공원녹지과-15357(2021.10.6.)]
- 대상지는 인근 관광명소로 통하는 거점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한강한가운데서 북한산과 서울쪽을 바라보며 일출을 관람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잘 알려진 곳으로,
- 대상지 특색을 살린 마을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조성 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공 통		○ 해뜨는 한강정원 조성사업 300,000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 마을정원 조성 : 100,000원 *3,000㎡ = 300,000	

※ 세부적인 내용은 실시설계용역 및 부지협의를 통해 2022년초 확정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부지협의
- 2022. 3. 계약심사 및 발주
- 2022. 4. 공사 착공
- 2022. 9. 공사 준공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3회추경 (D)			
계	1,100,000	300,000	200,000	200,000		300,000	300,000	
공 정 별	설계비	28,000	20,000	8,000	8,000			
	보상비							
	공사비	1,030,000	280,000	150,000	150,000	300,000	300,000	
	감리비							
	부대비	42,000	42,000	42,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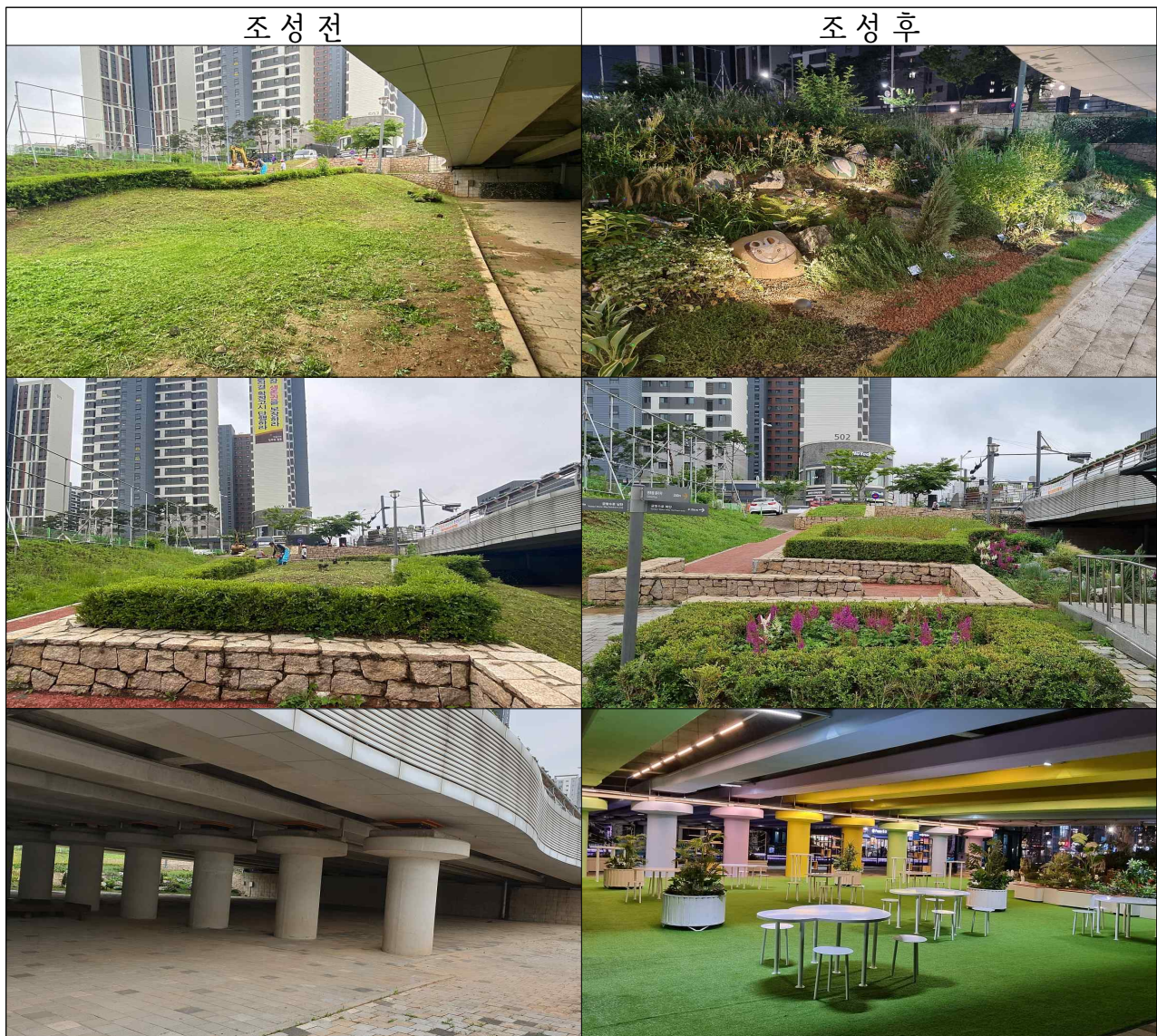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
2020년	금빛누리 마을정원 조성 (커뮤니티가든 조성 8개소, 휴게시설 5개, 수목식재 9,890주(본))	
2021년	금빛수로 마을정원 조성 (락가든400㎡, 가로블럭정원910㎡, 커뮤니티가든 900㎡)	10.31.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020년	300,000	292,234	-	7,766	
2021년	200,000	182,776	-	17,224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장 이미숙	담당자	녹지7급 조민우	전화	2366
-----	-------	------------	-----	----------	----	------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지원) (P - 46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11.
- 사업규모 : 마을정원 교육 10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주민들에게 식물 및 정원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녹색문화공동체 활성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2,000	10,000	10,000	0	20,000	10,000	
국 비							
도 비	6,600	3,000	3,000	0	6,000	3,000	
시 비	15,400	7,000	7,000	0	14,000	7,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주민 또는 다양한 시민단체가 마을정원이란 공간을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정원 조성 후 유지관리 참여도 제고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정원문화사업 진흥 조례	제10조
근거내용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2.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공원녹지과-15733(2021.10.12.)호 2022년도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도비 보조(가)내시 및 부담지시
- 2020년 조성한 금빛누리 마을정원 및 2021년 조성한 금빛수로 마을정원 사업자에 대해 정원문화교육을 운영하여 정원문화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합 계	= 20,000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지원	201-03 행사운영비	마을정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00,000원*10회 = 2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3. 금빛누리 마을정원 교육프로그램 착수(5회)
- 2022. 6. 금빛누리 마을정원 교육프로그램 종료
- 2022. 8. 금빛수로 마을정원 교육프로그램 착수(5회)
- 2022. 10. 금빛수로 마을정원 교육프로그램 종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풍무동 정원문화교육 용역 4회	
2020년	금빛누리 마을정원 정원문화교육 운영 11회	
2021년	금빛누리 마을정원 정원문화교육 운영 6회	10.31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0,000	9,270		730	
2020년	22,000	19,800		2,200	
2021년	10,000	9,000		1,000	10.31기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장 이미숙	담당자	녹지7급 조민우	전화	2366
-----	-------	------------	-----	----------	----	------

(그린커튼 조성사업) (P - 46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 ~ 6.
- 위 치 : 사우동 262 외 1개소
- 사업규모 : 그린커튼 설치 75m(신규 20m, 재조성 55m)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인공지반의 폭염·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0	7,200	7,200	0	32,600	25,400	
국 비							
도 비	0	3,600	3,600	0	16,300	12,700	
시 비	0	3,600	3,600	0	16,300	12,7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인공지반의 폭염·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생활권 내 녹지정책 추진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형 정책마켓	제4조 제2항
근거내용	시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공원녹지과-16663호(2021.10.30.)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안) 알림
- 라베니체 금빛수로와 공영주차장 경계부의 옹벽의 경관을 개선하고 식물커튼 조성을 통한 시민의 심신 안정 및 힐링공간 조성
- 김포시 평생학습관 건물 실내온도 저감 및 이용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공 통		○ 경기 그린커튼 조성사업 32,600	
금빛수로 그린커튼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 그린커튼 조성(신규) : 750,000원*20m = 15,000 · 그린커튼 조성(재조성) : 320,000원*55m = 17,6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3. 사업설계 및 착공
- 2022. 4. 공사 준공
- 2022. 5. 그린커튼 유지관리 작업 추진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화~3회추경 (D)			
계	79,800	0	7,200	7,200	0	32,600	40,000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79,800	7,200	7,200	0	32,600	40,000	
	감리비							
	부대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
2020년	-	
2021년	금빛수로 그린커튼 조성(55m) (나팔꽃 등 300본 식재, 자동관수 설비 설치)	10.31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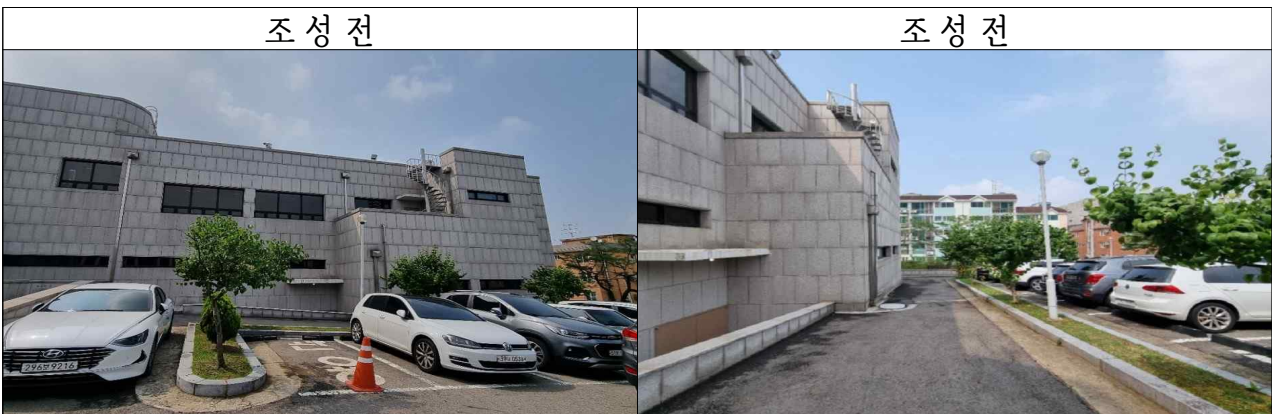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	-	-	-	
2021년	7,200	7,198	0	2	10.31기준

□ 현장사진

○ 금빛수로 그린커튼(재조성 대상지, 장기동 2073)



○ 평생학습관(신규대상지, 사우동 262)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장 이미숙	담당자	녹지9급 이승훈	전화	2489
-----	-------	------------	-----	----------	----	------

(산책로 조성 및 관리(일반운영비))(P - 46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사우동 34-3번지 일원, 걸포동126-4일원
- 사업규모 : 산림휴양시설 공중화장실 10개소, 계양천 및 나진포천 산책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계양천 · 나진포천 산책로 및 산림휴양시설 내 화장실 위생관리를 통한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08,000	152,400	152,400		213,000	60,600	
국 비							
도 비							
시 비	108,000	152,400	152,400		213,000	60,6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산림휴양시설 화장실 신규설치(동성산 숲길 1개소)로 관리개소 증가(9개소→10개소)에 따른 청소용역비 증가
- 나진포천 산책로(3km) 관리이관(안전총괄과→공원녹지과)예정에 따른 유지관리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근거내용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예시) 반영예정	(예시) 조건부추진	(예시) 비대상	(예시) 비대상	(예시) 비대상	(예시) 비대상	(예시) 의결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산림휴양시설 화장실 신규설치에 따른 관리량 증가 및 시민 이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기적인 위생관리와 유지보수가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공 통		○ 합 계	213,000	
산책로 조성 및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산림휴양시설 청소용역 : 51,000,000원 * 4명 = · 산림휴양시설 유지보수 : 750,000원 * 12월 =	204,000 9,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1. ~ 12. : 2022년 산림휴양시설 청소용역 설계 및 발주
- 2022. 01. ~ 12. : 2022년 산림휴양시설 청소용역 착수 및 준공
- 2022. 01. ~ 12. : 계양천 산책로 및 공중화장실 편의시설물 유지보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화장실 청소용역 - 관리량 : 계양천 산책로 및 산림휴양시설 화장실 8개소 - 내 용 : 연중 청소 및 소독관리, 고장시설 수리 실시 ○ 산책로 시설보수 및 관리자재 구입 : 계도 현수막 구입, 화장실 고장변기 교체 등	
2020년	○ 화장실 청소용역 - 관리량 : 계양천 산책로 및 산림휴양시설 화장실 8개소 - 내 용 : 연중 청소 및 소독관리, 고장시설 수리 실시 ○ 산책로 시설보수 및 관리자재 구입 : 계도 현수막 구입, 화장실 내·외부 소독 실시	
2021년	○ 화장실 청소용역 - 관리량 : 계양천 산책로 및 산림휴양시설 화장실 9개소 - 내 용 : 연중 청소 및 소독관리, 고장시설 수리 실시 ○ 산책로 시설보수 및 관리자재 구입 : 계도 현수막 구입,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소규모 수리수선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6,200	71,131	-	5,069	
2020년	108,000	84,051	-	23,949	
2021년	152,400	137,603	-	14,796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장 이정호	담당자	녹지7급 백유진	전화	5987
-----	-------	------------	-----	----------	----	------

(산책로 조성 및 관리 (계양천·나진포천 산책로 유지관리사업))(P - 46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1월
- 위 치 : 사우동 34-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계양천 산책로 및 풍무동 도시숲(7.4km), 나진포천(3km) 산책로 일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산책로 식생의 전문적인 유지관리 및 즉각적인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산책로 가로경관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471,695	497,470	386,440	111,030	502,500	5,030	
국 비							
도 비							
시 비	471,695	497,470	386,440	111,090	502,500	5,03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산책로 이용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즉각적인 민원대응 및 양질의 산책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계양천 산책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연간단가 추진에 따른 예산 증액
- 나진포천 산책로 관리이관(안전총괄과→공원녹지과) 예정에 따른 2022년 유지관리 예산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근거내용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예시) 반영예정	(예시) 조건부추진	(예시) 비대상	(예시) 비대상	(예시) 비대상	(예시) 비대상	(예시) 의결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산책로 식생의 전문적인 유지관리(예·제초, 전정) 및 병해충 방제를 통한 조경수의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
- 나진포천 산책로 관리이관에 따른 식생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통일감 있는 산책로 가로환경 제공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고
공 통		○ 합 계	502,500	
산책로 조성 및 관리	401-01 시설비	◎ 계양천·나진포천 산책로 유지관리사업 · 계양천 산책로 식생유지관리(걸포-사우) : 15,500,000원 * 4회 = 62,000 · 계양천 산책로 식생유지관리(풍무동) : 14,500,000원 * 4회 = 58,000 · 계양천 산책로 식생유지관리(고촌-태리) : 38,715,000원 * 4회 = 154,860 · 나진포천 산책로 식생유지관리 : 30,000,000원 * 4회 = 124,000 · 계양천 산책로 병해충 방제사업 : 10,400원 * 1,025주 * 4회 = 42,640 · 나진포천 산책로 병해충 방제사업 : 10,250원 * 600주 * 4회 = 24,600 · 계양천 산책로 시설물 유지관리(연간단가) : 10,400m * 3,500원 = 36,4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3회추경 (D)			
계	1,471,665	471,695	497,470	386,440	111,030	502,500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1,471,665	497,470	386,440	111,030	502,5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02. : 실시설계 및 발주
- 2022.04.~2022.09. :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 2022.04.~2022.11. : 식생유지관리사업 추진
- 2022.03~2022.12. : 시설물유지관리(연간단가)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계양천 산책로 식생유지관리사업 : 101,000천원 ○ 풍무동 도시숲 그늘시령 유지관리사업 : 4,490천원 ○ 계양천 산책로 수형조절사업 : 44,895천원 ○ 계양천 산책로 병해충 방제사업 : 26,756천원	
2020년	○ 계양천 산책로(걸포·사우동) 식생유지관리사업 : 42,171천원 ○ 계양천 산책로(풍무동) 식생유지관리사업 : 41,721천원 ○ 풍무동 도시숲 식생유지관리사업 : 108,731천원 ○ 계양천 산책로 뽕나무 외과수술사업 : 135,476천원 ○ 계양천 산책로 병해충 방제사업 : 22,725천원 ○ 계양천 산책로 하반기 병해충 방제사업 : 17,476천원 ○ 계양천 산책로 화장실 교체사업 : 85,714천원	

2021년	○ 계양천 산책로(걸포·사우동) 식생유지관리사업 : 22,924천원 ○ 계양천 산책로(풍무동) 식생유지관리사업 : 35,051천원 ○ 풍무동 도시숲 식생유지관리사업 : 81,896천원 ○ 풍무동 그늘시령 유지관리사업 : 4,552천원 ○ 계양천 초화원 조성사업 : 51,136천원 ○ 계양천 산책로 병해충 방제사업 : 26,112천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25,986	166,597	-	59,389	
2020년	471,695	457,058	-	14,627	
2021년	497,470	452,114	-	45,355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장 이정호	담당자	녹지7급 백유진	전화	5987
-----	-------	------------	-----	----------	----	------

(산림문화행사)(P - 46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4월
- 사업규모 : 2ha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나무심기, 나무 나눠주기를 통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경영기반 구축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5,000	-	8,800	-8,800	8,800	8,800	
국 비							
도 비							
시 비	5,000	-	8,800	-8,800	8,800	8,8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2021년 식목행사 미개최(예산전액삭감)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4조, 제16조
근거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식목일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급식비, 부대비, 재료비 및 간이화장실 설치비용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산림문화행사		○ 합 계 = 8,800	
	201-03 행사운영비	◎ 식목일행사 물품구입 : 6,000,000원 * 1회 = 6,000	
	301-09 행사실비지원금	◎ 식목일행사 급식비 : 8,000원 * 350명 = 2,8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2. ~ 3. : 산림문화행사 계획보고
- 2022. 3. ~ 4. : 행사 추진 및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운양동 김포한강조류생태공원(2ha)	
2020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20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000	4,600		400	
2020년	8,800	-	-	8,800	예산 전액삭감
2021년	8,800	-	-	8,800	예산 전액삭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7급 진미란	전화	2370
-----	-------	------------	-----	----------	----	------

(산불방지대책) (P - 46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봄철)2022년 2월 ~ 5월, (가을철)2022년 1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임야
- 사업규모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산불피해 최소화로 산림보호 및 국민생활안정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52,916	57,940	57,940		57,576	-364	
국 비							
도 비							
시 비	52,916	57,940	57,940		57,576	-36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산불진화차량 정비유지비 감액 (2021년 사용액 감소)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30조 제2항
근거내용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조심기간(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비용
- 산불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비, 산불진화를 위한 진화장비·무선국 유지관리비용 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산불방지 대책		○ 합 계 = 57,576	
	201-01 사무관리비	◎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 = 16,180 ·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 8,000원 * 5명 * 210일(7개월) = 8,400 · 산불상황실 근무자 근무복 : 240,000원 * 22명 = 5,280 ·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 25,000원 * 100개 = 2,500	
	201-02 공공운영비	◎ 산불방지대책 공공운영비 = 40,100 · 산불진화용 무전기 허가수수료: 70,000원 * 10대 = 700 · 산불진화차량 정비유지비: 700,000원 * 12대 = 8,400 · 산불진화차량 유류대 : 250,000원 * 12대 * 8월 = 24,000 · 산불진화시설 유지관리비 : 500,000원 * 10회 = 5,000 ·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비 : 200,000원 * 10회 = 2,000	
	301-09 행사실비지원금	◎ 산불진화교육 : 8,000원 * 27명 * 6회 = 1,29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김포시 산불방지대책수립
- 2022.01~2022.05 : 산불진화대 채용 및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2022.11~2022.12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 : 2.1~6.11. 10.01~ 12.20. 인원 : 공원녹지과장 외 19명, 산불진화대 27명 내용 :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대응태세 확립으로 관내 산불방지총력대응	
2020년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 : 2.1~5.15. 11.15~ 12.20. 인원 : 공원녹지과장 외 19명, 산불진화대 27명 내용 :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대응태세 확립으로 관내 산불방지총력대응	
2021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 : 2.1~5.15. 인원 : 공원녹지과장 외 19명, 산불진화대 26명 내용 :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대응태세 확립으로 관내 산불방지총력대응	10.31 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3,056	28,928		4,127	
2020년	52,916	45,283		7,627	
2021년	57,940	31,740		26,2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9급 박종근	전화	5988
-----	-------	------------	-----	----------	----	------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P - 46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봄철)2022. 2. 1. ~ 5. 15. / (가을철)11. 1. ~ 12. 15.
- 사업규모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8명 고용 등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산불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산불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통한 산림보호 및 국민생활안정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2회 추경 (C)			
계	421,048	427,827	427,827		421,267	△6,560	
국 비	168,419	171,132	171,132		168,506	△2,626	
도 비	75,789	77,009	77,009		75,829	△1,180	
시 비	176,840	179,686	179,686		176,932	△2,75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수가 전년대비 감소(2021년 진화대 30명)해 예산규모가 축소됨[경기도 산림과 -25357(2021.10.15.)]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30조 ①항, ②항
근거내용	제30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통한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 방진화대)	합 계		= 421,267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28명) : 369,336,000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28명) : 23,100,000원 산불진화자 근무복(28명) : 11,200,000원	= 403,636 = 369,336 = 23,100 = 11,200
	201-01 사무관리비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 4,800,000원*3대	= 14,400
	201-02 공공운영비	산불출동차량유류비 : 1,077,000원*3대	= 3,23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02. : 산불방지대책 수립
- 2022.02. ~ 05. :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2022.11. ~ 12.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 : 2.1.~6.11., 10.1.~12.20. 인원 : 공원녹지과장 외 20명, 산불진화대 27명 내용 :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대응태세 확립으로 관내 산불방지 총력 대응	
2020년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 : 2.1.~5.15., 11.1.~12.15. 인원 : 공원녹지과장 외 18명, 산불진화대 27명 내용 :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대응태세 확립으로 관내 산불방지 총력 대응	
2021년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 : 2.1.~5.15., 11.1.~12.15. 인원 : 공원녹지과장 외 18명, 산불진화대 27명 내용 :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대응태세 확립으로 관내 산불방지 총력 대응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423,451	291,123		132,328	
2020년	421,048	275,471		145,577	
2021년	427,827	313,600		114,227	10.31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9급 박종근	전화	5988
-----	-------	------------	-----	----------	----	------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경상)) (P - 46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봄철)2022. 2. 1. ~ 5. 15, (가을철)11. 1. ~ 12. 15. ○ 위 치 : 김포관내임야
- 사업규모 :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 등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산불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산불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통한 산림보호 및 국민생활안정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2회 추경 (C)			
계	36,500	23,000	23,000		19,000	△4,000	
국 비	14,600	9,200	9,200		7,600	△1,600	
도 비	6,570	4,140	4,140		3,420	△720	
시 비	15,330	9,660	9,660		7,980	△1,68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수가 전년대비 감소(2021년 진화대 30명)해 예산규모가 축소됨[경기도 산림과 -25357(2021.10.15.)]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30조 ①항, ②항
근거내용	제30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산불 개인진화장비 확충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합 계		= 19,000
	201-01 사무관리비	· 산불개인진화장비 (28대) : 12,000,000원 · 산불진화급식비 : 6,000원*500명	= 15,000 = 12,000 = 3,000
	202-01 국내여비	· 산불진화출동여비 : 20,000원*200명	= 4,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02. : 산불방지대책 수립
- 2022.02. ~ 05. :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2022.11. ~ 12.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산불진화용 물품구입 : 무선송수신기6대, 등짐펌프 130개, 갈퀴 300개 소방노즐 21개 등	
2020년	· 산불진화용 물품구입 : 무선송수신기6대, 방진마스크 40매, 방화장갑36개 방화텐트 40개 등	
2021년	· 산불진화용 물품구입 : 방진마스크 40매, 방화장갑40매, 방화텐트 40개 등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6,500	26,715		9,785	
2020년	23,000	20,300		2,700	
2021년	23,000	18,794		4,206	10.31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9급 박종근	전화	5988
-----	-------	------------	-----	----------	----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P - 47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봄철)2022. 2. 1. ~ 5. 15. / (가을철)11. 1. ~ 12. 15.
- 사업규모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35대 및 무선통신장비(차량국) 운영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봄철, 가을철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한 산불 발생지 확인 및 신속한 초동진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2회 추경 (C)			
계	4,550	4,550	4,550		7,550	3,000	
국 비	1,820	1,820	1,820		3,020	1,200	
도 비	819	819	819		1,359	540	
시 비	1,911	1,911	1,911		3,171	1,26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산불출동 임차차량 추가 편성(1대)에 따른 차량용 무선통신장비 설치사업비 신규 편성
[경기도 산림과-25357(2021.10.15.)]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30조 ①항, ②항
근거내용	제30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산불상황관제시스템(산불신고용 GPS 단말기) 구축에 따른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초동 진화
-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추가편성(1대)에 따른 차량용 무선통신장비 설치로 신속한 현장출동 및 초동진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합 계	= 7,550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201-02 공공운영비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130,000원*35대 = 4,550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무선통신장비(차량국) : 3,000,000원*1대 3,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02. : 산불방지대책 수립
- 2022.01. ~ 01. : 산불출동 임차차량에 무선통신장비 설치 추진
- 2022.02. ~ 05. :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사용료 납부)
- 2022.11. ~ 12.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사용료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납부	
2020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납부	
2021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납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9년	52,550	47,621		4,929	
2020년	4,550	4,550		-	
2021년	4,550	4,550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9급 박종근	전화	5988
-----	-------	------------	-----	----------	----	------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 (P - 47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봄철)2022. 2. 1. ~ 5. 15. / (가을철)11. 1. ~ 12. 15. ○ 위 치 : 김포관내임야
- 사업규모 : 일반등짐펌프 장비구입(30대), 유관기관산불진화장비(100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봄철, 가을철 산불진화장비 및 산불지휘진화차량 확보를 통한 초동진화 철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2회 추경 (C)			
계	1,500	59,500	59,500		6,500	△53,000	
국 비							
도 비	450	17,850	17,850		1,950	△15,900	
시 비	1,050	41,650	41,650		4,550	△37,1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 산불진화차량 구입 예산이 편성으로 2022년도 예산 규모가 축소[경기도 산림과-26898(2020.11.03.)]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30조 ①항, ②항
근거내용	제30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산불진화장비 및 경보장비 확보를 통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	합 계		= 6,500
	201-01 사무관리비	=	6,500
		· 일반등짐펌프 : 50,000원*30개	= 1,500
		· 유관기관산불진화장비 : 50,000원*100개	= 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02. : 산불방지대책 수립
- 2022.02. ~ 05. :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운영물품 구입)
- 2022.11. ~ 12.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운영물품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산불진화장비 확보 및 유관기관 장비 지원 등	- 해병대제2사단 외 3개 기관 등짐펌프 등 275개 지원	
2020년	산불진화장비 확보 및 유관기관 장비 지원 등	- 해병대제2사단 외 5개 기관 등짐펌프 등 100개 지원	
2021년	산불진화장비 확보 및 유관기관 장비 지원 등	- 해병대제2사단 3개 기관 등짐펌프 등 230개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9년	22,500	16,659		5,841	
2020년	1,500	1,500			
2021년	59,500	54,411		5,089	10..31.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9급 박종근	전화	5988
-----	-------	------------	-----	----------	----	------

(산림병해충 방제) (P - 47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400ha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의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 보전 및 쾌적한 산림환경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8,000	40,000	40,000		40,000	-	
국 비							
도 비							
시 비	28,000	40,000	40,000		40,000	-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방제 약제 및 물품의 가격 인상 및 재고 미확보로 인한 예산 증액 편성
- 산림병해충 방제 차량의 운영 유지를 위한 유류대금 예산 편성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 22조의 2
근거내용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산림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방제약품 및 물품, 장비 운영 등의 지원을 통한 병해충 피해 최소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 합 계 = 40,000	
산림병해충방제	201-02 공공운영비	◎ 병해충방제 차량 유류대 : 65,000원*4대*20회 = 5,200	
	206-01 재료비	◎ 병해충방제 약제 및 방제물품 : 23,200원*5종*300개 = 34,8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1. ~ 3.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약제구입 6,000천원 집행
- 2021. 3. ~ 9. :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약제구입 28,800천원 집행
- 2021. 5. ~ 10. : 산림병해충 방제 차량 유류대 5,200천원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산림병해충 방제 400ha	
2020년	산림병해충 방제 302ha	
2021년	산림병해충 방제 192ha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0,600	51,856	-	8,744	
2020년	28,000	25,551	-	2,449	
2021년	40,000	18,064		21,936	8.27.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9급 박종근	전화	5988
-----	-------	------------	-----	----------	----	------

(일반병해충방제) (P - 47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 ~ 11. ○ 위 치 : 김포시 관내 임야
- 사업규모 : 산림병해충 방제 396ha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28,425	200,937	199,051	1,886	149,555	△ 51,382	
국 비	65,873	104,608	103,913	982	77,800	△ 26,808	
도 비	18,766	23,515	27,846	221	21,639	△ 1,876	
시 비	43,786	72,814	67,292	683	50,116	△ 22,698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 등 방제 면적 감소에 따른 예산감액 편성 [경기도 산림과-25945(2021.10.15.)호]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22조
근거내용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증가한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의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합 계		= 149,555	
일반병해충방제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인부임 : 74,944,000원 = 74,944	
		· 흰불나방 방제 인부임 : 17,155,000원 = 17,155	
		· 매미나방 방제 인부임 : 13,020,000원 = 13,020	
		· 미국선녀벌레 방제 인부임 : 11,184,000원 = 11,184	
		· 꽃매미 방제 인부임 : 3,307,000원 = 3,307	
		· 기타해충 방제 인부임 : 12,000,000원 = 12,000	
		= 131,610	
	201-01 사무관리비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부대비 : 6,218,000원 = 6,218	
		· 흰불나방 방제 부대비 : 855,000원 = 855	
		· 매미나방 방제 부대비 : 1,013,000원 = 1,013	
		· 미국선녀벌레 방제 부대비 : 948,000원 = 948	
		· 꽃매미 방제 부대비 : 257,000원 = 257	
		· 기타해충 방제 부대비 : 1,177,000원 = 1,177	
		= 10,468	
	201-02 공공운영비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차량 및 장비 수리 : 4,540,000원 = 4,540	
		· 흰불나방 방제 차량 및 장비 수리 : 625,000원 = 625	
		· 매미나방 방제 차량 및 장비 수리 : 739,000원 = 739	
		· 미국선녀벌레 방제 차량 및 장비 수리 : 691,000원 = 691	
		· 꽃매미 방제 차량 및 장비 수리 : 188,000원 = 188	
		· 기타해충 방제 차량 및 장비 수리 : 694,000원 = 694	
		= 7,477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 04.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2. 05.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행
- 2022. 10.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산림병해충 방제원 운영	기간 : 06.17.~09.30. 인원 : 산림병해충방제원 17명 내용 : 산림 및 생활권 내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	
2020년	산림병해충 방제원 운영	기간 : 05.18.~09.25. 인원 : 산림병해충방제원 13명 내용 : 산림 및 생활권 내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	
2021년	산림병해충 방제원 운영	기간 : 05.24.~10.29. 인원 : 산림병해충방제원 13명 내용 : 산림 및 생활권 내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	10.31.일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63,737	137,977	-	25,760	
2020년	128,425	123,390	-	5,035	
2021년	200,937	119,247	-	81,690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9급 박종근	전화	5988
-----	-------	------------	-----	----------	----	------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P - 47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1. ~ 2022.11.
- 사업규모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단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및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예찰 방제 체계 구축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88,628	89,471	89,471		91,731	2,260	
국 비	44,315	44,736	44,736		45,865	1,129	
도 비	13,293	12,977	12,977		13,760	783	
시 비	31,020	31,758	31,758		32,106	348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경기도 산림과-25945(2021.10.15.)호]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22조
근거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산림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의 조기에발로 발생량 파악 및 적기 방제체계 구축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합 계			91,731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산림재해일자리(예찰단) 인건비 : 71,731,000원 = 76,131 · 산림재해일자리(예찰단) 보험료 : 4,400,000원 = 4,400	
	201-01 사무관리비	· 산림재해일자리(예찰단) 물품 및 문구구입비 : 66,000 원 * 5종 * 20개 = 6,600	
	201-02 공공운영비	· 산림재해일자리(예찰단) 임차 유류비 : 3,000,000원 * 1대 = 3,000 · 시설장비 및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 100,000원 * 10개월 = 1,000	
	206-01 재료비	· 산림재해일자리(예찰단) 재료비 : 50,000원 * 5종 * 20개(농약, 롤트랩 등) = 5,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02.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계획수립 및 인력채용
- 2022.02. ~ 2022.10. : 산림병해충 예찰사업 집행
- 2022.10. ~ 2022.11.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기간 : 2.11.~ 10.31. 인원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5명 내용 : 산림 내 병해충 예찰 및 시료채취 등 조기예찰 및 조치	
2020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기간 : 1.23. ~ 09.18. 인원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5명 내용 : 산림 내 병해충 예찰 및 시료채취 등 조기예찰 및 조치	
2021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기간 : 2.1. ~ 10.29. 인원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5명 내용 : 산림 내 병해충 예찰 및 시료채취 등 조기예찰 및 조치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87,135	73,577	-	13,557	
2020년	88,628	72,388	-	16,240	
2021년	101,976	94,563	-	7,413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9급 박종근	전화	5988
-----	-------	------------	-----	----------	----	------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장비)) (P - 47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 ~ 11.
- 사업규모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단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및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예찰 방제 체계 구축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080	3,080	3,080		3,080	0	
국 비	1,540	1,540	1,540		1,540	0	
도 비	462	462	462		462	0	
시 비	1,078	1,078	1,078		1,078	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장비 등 구입위한 국도비 지원 예산으로 동일금액 예산 편성
[경기도 산림과-25945(2021.10.15.)호]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22조
근거내용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산림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의 조기에발로 발생량 파악 및 적기 방제체계 구축을 위한 자재 확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방제자재	합 계 = 3,080		
	201-01 사무관리비	· 산림재해일자리(방제단 방제자재) 소모성물품구입 : 34,000원 * 2종 * 10개 = 68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산림재해일자리(방제단 방제자재) 충전고지톱 구입 : 1,200,000원 * 2개 = 2,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06.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충전고지톱 등 구입
- 2022. 07. ~ 11.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소모성물품 등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기간 : 2.11.~ 10.31. 인원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5명 내용 : 산림 내 병해충 예찰 및 시료채취 등 조기예찰 및 조치	
2020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기간 : 1.23. ~ 09.18. 인원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5명 내용 : 산림 내 병해충 예찰 및 시료채취 등 조기예찰 및 조치	
2021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기간 : 2.1. ~ 10.29. 인원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5명 내용 : 산림 내 병해충 예찰 및 시료채취 등 조기예찰 및 조치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080	2,202	-	877	
2020년	3,080	2,134	-	946	
2021년	3,080	2,244		836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9급 박종근	전화	5988
-----	-------	------------	-----	----------	----	------

(사방사업) (P - 47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사업규모 : 계류보전사업 0.5km, 사방댐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사방댐 및 산사태 예방시설을 정비하여 산림재해 예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308,127	308,127		346,879	38,752	
국 비		215,689	215,689		242,815	27,126	
도 비		64,707	64,707		72,845	8,138	
시 비		27,731	27,731		31,219	3,488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2020년까지 사방사업은 경기도 사무로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추진 후 자체단체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었으나, 2021년부터 사방사업이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사방사업 전반 추진
- 이에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예산 증액[경기도 산림과-25945(2021.10.15.)호]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방사업법	제1조
근거내용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방사업의 시·군 재위임으로 인한 사방사업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의 사업전반 추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사방사업	합 계 = 346,879		
	401-01 시설비	· 계류보전 사업 : 96,879,000원 = 96,879 · 사방댐 사업 : 250,000,000원 * 1개소 = 25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2회추경 (D)			
계	655,006		308,127	308,127		346,879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655,006	308,127	308,127		346,879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3. : 계류보전 사업 및 사방댐 사업 대상지 사방공사 발주
- 2022. 6. : 계류보전 사업 및 사방댐 사업 대상지 사방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20년	-	
2021년	- 사방사업 1개소 추진(하성면 가금리 산43-1)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0	
2020년	-	-	-	0	
2021년	308,127	232,587	-	75,540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7급 최성은	전화	2373
-----	-------	------------	-----	----------	----	------

(사방시설 점검) (P - 47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1. ~ 6. 30.
- 사업규모 : 사방시설 점검 2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사방시설을 점검하여 산림재해를 미연에 방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640	8,072	8,072		9,612	1,540	
국 비		5,650	5,650		6,728	1,078	
도 비		1,696	1,696		2,019	323	
시 비	640	726	726		865	139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사방시설 점검예산 확보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사방사업법	제1조
근거내용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방시설의 점검을 통해 위험시설을 적기에 보수하고, 산사태 등의 재난을 미연에 방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사방시설 점검	합 계		= 9,612
	401-01 시설비	· 사방시설 외관점검 : 220,000원 * 19개소 = 4,180 · 사방시설 정밀점검 : 2,716,000원 * 2개소 = 5,432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화~2회추경 (D)			
계	17,684		8,072	8,072		9,612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17,684	8,072	8,072		9,612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사방사업 점검 계획 수립
- 2022. 1. ~ 6. : 사방사업 외관·정밀점검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사방사업 1개소 : 월곶면 성동리 212-19번지	
2020년	- 사방사업 1개소 : 대곶면 약암리 산106-4	
2021년	- 사방담 외관점검 12개소, 정밀점검 2개소 : 김포시 북변동 산49-23 외 12개소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1,097	11,097	-	0	
2020년	640	640	-	0	
2021년	8,072	7,200	-	872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7급 최성은	전화	2373
-----	-------	------------	-----	----------	----	------

(산사태피해지 복구사업) (P - 47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5월
- 사업규모 : 1,120㎡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2021년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추진 후 복구 미완료 부분 공사를 마무리해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2차 산사태 피해를 예방코자 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50,000		150,000	70,000	△143,000	
국 비							
도 비							
시 비		150,000		150,000	70,000	△143,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0년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추가붕괴 및 침식방지를 위해 실시한 ‘2021년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 후 공사 미완료 부분(산사태지 하단 적치 토사 폐기물 처리 및 마무리 토공사) 보완공사 실시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6
근거내용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0년 8. 10. 산사태 피해 발생 후 2021년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 1차 복구공사를 추진
 - 주요공종: 옹벽설치-L형(H 5.0m) 옹벽 16m, 배수공사-벤치플롭관(#500) 664m, 사면녹화-씨드스프레이 등
- 2021년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 예산 부족분을 2022년 본예산 편성하여 2차 보완공사를 추진
 - 주요공종: 산사태 유출토사 등 폐기물 처리, 산사태지 하단부 복구공사
-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 예산 부족분을 2022년 본예산 편성하여 토석의 유출, 산사태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하여 김포시민 생명, 재산보호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산사태피해지 복구사업	합 계		= 70,000
	401-01 시설비	◎산사태피해지 복구 시설비 : 62,500원* 1,120㎡ = 70,000	

※ 세부내역 : 임야토사등 폐기물 처리 50,000천원 + 하단부 복구 토공사 20,000천원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 2020. 8. 10. 산사태 피해 발생(건물 1동 전파, 1동 반파)
- 2021. 4. ~ 8.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 실시
- ※ 2021년 1회추경 예산편성(150,000천원)

○ 향후계획

- 2022.02. : 복구공사 착공
- 2022.05. : 복구공사 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산사태 복구공사 완료(옹벽설치, 배수공사)



산사태 복구공사 미완료 부분
(유실토사 폐기처리 및 산사태지 하단부 복구공사)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7급 최성은	전화	2370
-----	-------	------------	-----	----------	----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P - 47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1. ~ 6. 30.
- 위 치 : 김포관내 임야
- 사업규모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2개소 점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선제점검하여 산림재해를 미연에 방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400	1,400	
국 비					700	700	
도 비					210	210	
시 비					490	49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선제적 점검관리를 위한 신규예산 편성[경기도 산림과-25945(2021.10.15.)호]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근거내용	제2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 산사태 산불 등 재해의 예방 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시설을 적기에 보수하고, 산사태 등의 재난을 미연에 방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사방시설 점검	합 계		= 1,400
	401-01 시설비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700,000원 * 2개소	= 1,4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계획 수립
- 2022. 1. ~ 6.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실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7급 최성은	전화	2373
-----	-------	------------	-----	----------	----	------

(건강한 산림관리) (P - 47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산림 응급 복구 비용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산림 응급복구 비용,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를 통한 국민생활안전 및 건강한 산림관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52,760	62,000	62,000		62,000	-	
국 비							
도 비							
시 비	52,760	62,000	62,000		62,000	-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산림 재해 취약지 응급 복구 비용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15조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예방 복구와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산림 내 재해 취약지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응급 복구하고,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 산림 취약지 위험수목 제거 및 응급복구 뿐 아니라 위험지 사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건강한 산림관리	합 계 = 62,000		
	201-01 사무관리비	· 산림관리 물품(소모성) 구입 : 10,000원 * 10종 * 20개 = 2,000	
	401-01 시설비	· 산림응급복구 비용 : 500,000원 * 120건 = 60,000	

※ 세부내역 : 산림 내 위험수목제거 100건, 산림응급복구 20건, 위험지 선제적 예방조치 20건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2.01~2022.02 : 산림 응급복구 공사 계약
- 2022.03~2022.12 : 산림 응급복구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위험수목 정비	기간 : 1.1~9.30. 위치 : 하성면 봉성리 산18-1 외 13건 내용 : 관내 위험수목 사전 제거로 자연 재해예방 등	
2020년	산림내 위험수목 제거 연간단가공사	기간 : 6.17~현재. 위치 : 김포시 사우동 257-3 외 32건 내용 : 관내 위험수목 및 집중호우 피해수목 제거 등	
2021년	산림내 위험수목 제거 연간단가공사	기간 : 6.17~현재. 위치 : 김포시 감정동 631-5 외 47건 내용 : 관내 위험수목 및 집중호우 피해수목 제거 등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52,760	51,855		905	
2020년	52,760	51,644		6,616	
2021년	62,000	31,160		27,10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7급 최성은	전화	2373
-----	-------	------------	-----	----------	----	------

(보호수 관리지원) (P - 47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2022. 10. ○ 위 치 : 김포 관내 보호수
- 사업규모 : 10주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건강성회복을 통해 마을의 구심체 역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2,000	52,000	52,000		40,000	△12,000	
국 비					-	0	
도 비	9,600	15,600	15,600		12,000	△3,600	
시 비	22,400	36,400	36,400		28,000	△8,4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생육환경개선공사 대상 보호수 파악하여 수요를 신청하여 예산감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관리)
근거내용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보호수 주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육환경 증진을 위한 외과수술 필요
- 보호수의 건강성 회복을 통해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
- 보호수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관내 보호수 가치 보존 및 증대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보호수 관리	합 계		= 40,000
	401-01 시설비		= 40,000
		· 보호수 외과수술 : 4,000,000원 * 4주	= 16,000
		· 보호수 주변정리 : 4,000,000원 * 6주	= 24,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화~2회추경 (D)			
계	124,000	32,000	52,000	52,000		40,000		
공 정 별	설계비	12,000	3,000	5,000	5,000	4,000		
	보상비							
	공사비	112,000	29,000	47,000	47,000	36,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2. : 보호수 유지관리공사 실시설계 및 계약
- 2022. 3. : 보호수 유지관리공사 착공
- 2022. 5. : 보호수 유지관리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보호수 3개소의 외과수술, 지지대 설치,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 수형조절 작업 등	
2020년	보호수 3개소의 외과수술, 지지대 설치,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 수형조절 작업 등	
2021년	보호수 12개소의 외과수술, 지지대 설치,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 수형조절 작업 등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8,000	24,902	-	3,097	
2020년	32,000	31,193	-	807	
2021년	52,000	31,808	-	20,192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9급 박종근	전화	5988
-----	-------	------------	-----	----------	----	------

(생활권수목진료지원) (P - 47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 ~ 11.
- 사업규모 : 생활권 수목진료컨설팅 15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생활권 내 산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 시스템 구축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750	3,750	3,750		3,750	0	
국 비	1,875	1,875	1,875		1,875	0	
도 비	562	562	562		562	0	
시 비	1,313	1,313	1,313		1,313	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동일금액 예산 편성 [경기도 산림과-25945(2021.10.15.)호]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제22조
근거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기후변화,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피해를 조사하고 예방 및 진단하여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함
- 수목진료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나무병원 법인에 위탁하여 정확한 처방 및 진료체계 구축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401-01 시설비	· 수목진료 컨설팅(15건) : 3,750,000원 = 3,75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2. :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용역 계획 및 발주
- 2022. 03. :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시작
- 2022. 10. :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용역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고창초등학교 외 8건)	
2020년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중앙승가대학교 외 9건)	
2021년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하성면 가금1리 1건)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750	3,298	-	452	
2020년	3,750	3,156	-	594	
2021년	3,750	3,250	-	500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9급 박종근	전화	5988
-----	-------	------------	-----	----------	----	------

(경제림 조성사업) (P - 47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1월
- 사업규모 : 13ha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경제림 조성으로 우량 목재자원 공급기반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8,671	24,996	24,996		58,269	33,273	
국 비	15,954	14,055	14,055		32,785	18,730	
도 비	2,868	2,499	2,499		5,828	3,329	
시 비	9,849	8,442	8,442		19,656	11,214	
기 타							자부담 9,360

□ 예산 증감사유

- 2021년도 대비 사업량 증가(7ha)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근거내용	제2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 산사태 산불 등 재해의 예방 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푸른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58,269		비 고
경제림 조성사업	합 계		= 58,269	
	401-01 시설비	· 조림 시설비 (13ha) : 53,210,000	= 53,210	
	401-02 감리비	· 조림 감리비 (13ha) : 5,059,000	= 5,059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3회추경 (D)			
계	112,269		24,996	24,996		58,269		
공 정 별	설계비	8,000	2,000	2,000		4,000		
	보상비							
	공사비	95,261	22,996	22,996		49,269		
	감리비	9,008	2,004	2,004		5,000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0. : 국도비 보조금 내시
- 2021.12. : 2022년 조림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01. : 실시설계 용역
- 2022.03. : 2022년 조림사업 추진
- 2022.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 경제림 조성 17ha	
2018년	○ 경제림 조성 7ha	
2019년	○ 경제림 조성 6ha	10.31.기준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17,247	98,150	-	19,097	
2020년	28,671	24,324	-	4,347	
2021년	24,996	21,543	-	3,453	10.31.말기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7급 진미란	전화	2370
-----	-------	------------	-----	----------	----	------

(숲 가꾸기) (P - 47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숲가꾸기용 물품구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숲을 가치있고 경쟁력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 임야 관련 민원 처리로 시민의 안전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20,240	17,640	17,640		7,810	-9,830	
국 비							
도 비							
시 비	20,240	17,640	17,640		7,810	-9,83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전년도 물품확보로 당년도 조림목 유지관리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요구액 감소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근거내용	제2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산림병해충 산사태 산불 등 재해의 예방 방제 및 복구사업 2.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	-	-	-	-	-	-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관내 조림지 및 임야를 가치있고 경쟁력 있는 숲으로 육성하기 위한 운영비(물품구매)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o 합 계	7,810
숲가꾸기	201-01 사무관리비	◎ 공공산림가꾸기 물품구입비 300,000*10회 = 3,000	
	206-01 재료비	◎ 조림목 유지관리 50,000*40주 = 2,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숲가꾸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 2,810 · 기계톱 : 430,000원*2대 = 860 · 송풍기 : 450,000원*1대 = 450 · 고지톱 및 기타장비 등 : 300,000*5대 = 1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숲가꾸기용 물품 및 장비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산림바이오매스단 운영 : 4명 (3월~12월) - 관내 조림지 가꾸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및 산림 내 고사목 등 버려지는 산물 수집	
2020년	- 숲가꾸기패트롤단 운영 : 5명 (3월~8월) - 관내 조림지 가꾸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및 임야 내 민원 처리	
2021년	- 숲가꾸기패트롤단 운영 : 5명 (3월~8월) - 관내 조림지 가꾸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및 임야 내 민원 처리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8,000	16,122		1,878	
2020년	20,240	17,466		2,774	
2021년	17,640	13,660		3,980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7급 최성은	전화	2373
-----	-------	------------	-----	----------	----	------

(정책숲 가꾸기 사업) (P - 47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4. 1. ~ 8. 31. ○ 위 치 : 김포관내 임야
- 사업규모 : 정책 숲 가꾸기 47ha, 산불예방 숲 가꾸기 5ha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능별 숲 가꾸기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07,221	236,770	236,770		100,562	△136,208	
국 비	53,611	118,385	118,385		50,280	△68,105	
도 비	16,083	35,516	35,516		15,085	△20,431	
시 비	37,527	82,869	82,869		35,197	△47,672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숲가꾸기 면적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경기도 산림과-25945(2021.10.15.)호]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근거내용	제2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 산사태 산불 등 재해의 예방 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조림지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숲가꾸기를 통한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있는 국가 산림자원 육성
- 산불취약지역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추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정책숲가꾸기 사업		합 계 = 100,562	
	401-01 시설비	· 정책 숲가꾸기 : 1,750,000원 * 52ha = 91,000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401-02 감리비	· 감리비 : 9,562,000원 = 9,562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2021년 숲가꾸기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 02. : 숲가꾸기 실시설계
- 2022. 03. : 숲가꾸기 공사 발주
- 2022. 08. :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조림지가꾸기사업	대상지 : 월곶 개곡리 산119-1번지 외 8개소 면적 : 40ha	
	정책숲가꾸기사업	대상지 : 월곶 성동리 산31-15번지 외 14개소 면적 : 41ha	
2020년	조림지가꾸기사업	대상지 : 월곶 개곡리 809-13번지 외 15개소 면적 : 40ha	
	정책숲가꾸기사업	대상지 : 하성 후평리 237-7번지 외 22개소 면적 : 30ha	
2021년	조림지가꾸기사업	대상지 : 월곶 개곡리 809-13번지 외 18개소 면적 : 모두베기 60.1ha, 덩굴제거 5ha	10.31일까지 추진실적
	정책숲가꾸기사업	대상지 : 대곶 대명리 산107-1번지 외 24개소 면적 : 큰나무가꾸기 5ha, 어린나무가꾸기 20ha, 산물수집2ha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대상지 : 운양동 1325-1번지 외 26개소 면적 : 숲가꾸기 등 20ha, 산물수집 8ha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28,657	55,490	-	73,167	
2020년	107,221	101,143	-	6,078	
2021년	236,770	220,406	-	16,364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7급 최성은	전화	2373
-----	-------	------------	-----	----------	----	------

(미세먼지저감 공익숲 가꾸기) (P - 47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 ~ 2022년 11.
- 위 치 : 김포시 관내 임야
- 사업규모 : 5ha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생활권 주변 녹지·산림에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
- 예산요구 현황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13,560	13,560	
국 비					6,780	6,780	
도 비					2,034	2,034	
시 비					4,746	4,746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생활권 주변 녹지·산림에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자 신규 편성된 사업임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근거내용	제2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 산사태 산불 등 재해의 예방 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생활권과 인접한 도시내·외곽 산림의 간벌 가지치기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능력 향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합 계		= 13,560
	401-01 시설비	· 공익숲가꾸기 시설비 : 2,454,000원 * 5ha	= 12,270
	401-02 감리비	· 공익숲가꾸기 감리비 : 258,000원 * 5ha	= 1,29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3회추경 (D)			
계		13,560					13,560		
공 정 별	설계비	2,000					2,000		
	보상비								
	공사비	10,270					10,270		
	감리비	1,290					1,290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0. : 국도비 보조금 내시
- 2021.12. : 2022년 공익숲가꾸기 추진계획 수립
- 2022.01. : 실시설계 용역
- 2022.03. : 공익숲가꾸기사업 추진
- 2022.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7급 최성은	전화	2373
-----	-------	------------	-----	----------	----	------

(공공산림 가꾸기) (P - 47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1. ~ 11. 31.
- 사업규모 : 숲가꾸기패트론팀(4명) 운영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피해, 병해충 피해, 산림재해 등)에 신속 대응하고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산림 현장민원 처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14,042	114,311	114,311		117,822	3,511	
국 비	58,021	58,637	58,637		60,393	1,756	
도 비	16,806	16,702	16,702		17,229	527	
시 비	39,215	38,972	38,972		40,200	1,228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국도비 지원 사회적일자리 산림사업으로 단비조정에 따른 예산 증액[경기도 산림과-25945(2021.10.15.)회]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1항
근거내용	제2조의2(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주요 가시권 도로변 및 산림 내 덩굴류, 고사목 제거 등 산림정비
-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장 민원 처리 및 산림재해 예방·복구 활동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공공산림가꾸기	합 계		= 117,822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 23,826,000원*4명 · 숲가꾸기패트롤 교육비 : 740,750원*4명	= 98,267 = 95,304 = 2,963
	201-01 사무관리비	· 물품구입 및 문구구입 : 455,500원*10회 · 민원처리 장비 임차료 : 500,000원*24회	= 16,555 = 4,555 = 12,000
	201-02 공공운영비	· 숲가꾸기패트롤 차량 유류비 : 500,000원*5회 · 숲가꾸기패트롤 장비 유지비 : 100,000원*5회	= 3,000 = 2,500 = 5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1.10. : 국도비 보조금 내시
- 2022.01. : 2021년 숲가꾸기패트롤단 운영계획 수립
- 2022.02. : 숲가꾸기패트롤단 근로자 모집공고 및 채용
- 2022.03. ~ 2022.11. : 숲가꾸기패트롤단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산림바이오매스단 운영 : 4명 (2~12.) - 산림바이오매스단 추가채용 : 3명 (9~12.) - 관내 조림지 가꾸기 등을 통한 공공산림가꾸기 및 산림 내 고사목 등 버려지는 산물 수집	
2020년	- 숲가꾸기패트롤단 운영 : 5명 (3~10.) - 관내 조림지 가꾸기 등을 통한 공공산림가꾸기 및 산림 내 고사목 등 버려지는 산물 수집	
2021년	- 숲가꾸기패트롤단 운영 : 5명 (3~10.) - 관내 조림지 가꾸기 등을 통한 공공산림가꾸기 및 산림 내 고사목 등 버려지는 산물 수집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16,171	45,971	-	70,200	
2020년	114,042	104,487	-	9,555	
2021년	114,311	94,512		19,799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7급 최성은	전화	2373
-----	-------	------------	-----	----------	----	------

(산지정보시스템(FLIS) 유지보수 용역) (P - 47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임야
- 사업규모 : 보전산지 지정·해제 등 산지구분도 정비 및 FLIS 등재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목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산지에 대하여 산지이용구분 변경·해제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고, 지형도면(KLIS) 등재 전산작업을 완료하여 정확한 산지정보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		22,000		22,000	0	
국 비							
도 비							
시 비	-		22,000		22,000	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2022년 예산을 편성해 정확한 산지정보를 제공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제8조 제4항
근거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지를 산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각종 개발로 증가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요청건의 원활한 행정절차 진행과 정확한 산지이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민원 해소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산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1-02 공공운영비	· 산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2,200,000원 * 10월 = 22,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산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발주
- 2022.12. : 산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KLIS 등재 용역	기간 : 2019.5~ 2019.12. 보전산지 지정·해제·산지구분도 정비 : 984필지	
2020년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KLIS 등재	기간 : 2020.5~ 2020.12. 보전산지 지정·해제·산지구분도 정비	사업비 미편성
2021년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KLIS 등재 용역	기간 : 2020.5~ 2020.12. 보전산지 지정·해제·산지구분도 정비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2,000	19,800	-	2,200	
2020년	-	-	-	-	사업비 미편성
2021년	22,000	19,800	-	2,2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7급 진미란	전화	2370
-----	-------	------------	-----	----------	----	------

(목재수확지 점검관리) (P - 47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1. ~ 12.
- 사업규모 : 목재수확지 점검(30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목재수확지(벌채지) 점검관리를 통해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산림재해를 예방
(단위 : 천원)
- 위 치 : 김포시 관내 목재수확지(벌채지)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8,011		
국 비					4,005		
도 비					1,202		
시 비	-				2,80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목재수확지 점검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비 편성[경기도 산림과-25945(2021.10.15.)호]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근거내용	제2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 산사태 산불 등 재해의 예방 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목재 수확(입목벌채) 허가·신고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허가지 사업 및 안전등을 점검해 산림의 훼손을 막고 산림재해를 예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목재생산관리	합 계		= 8,011
	401-01 시설비	· 목재수확점검관리 : 8,011,000원(30회)	= 8,0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목재생산관리 계획보고
- 2022.01. ~ 2022.12. : 목재수확지 점검 용역추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7급 진미란	전화	2370
-----	-------	------------	-----	----------	----	------

(목재수확지 현장입간판 설치) (P - 47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4월
- 위 치 : 김포시 관내 목재수확지(벌채지)
- 사업규모 : 목재수확사업지 현장 입간판 설치(1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목재수확지 현장입간판 설치로 시민에 정보를 제공하고 목재수확이미지 제고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840		
국 비					420		
도 비					126		
시 비	-				29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목재수확지 점검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비 편성[경기도 산림과-25945(2021.10.15.)호]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근거내용	제2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 산사태 산불 등 재해의 예방 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목재 수확(입목벌채) 허가신고지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이해도를 높이고 목재수확 이미지를 제고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목재생산관리		합 계 = 840	
	201-01 사무관리비	· 현장입간판 설치 : 840,000원 * 1개소 = 84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목재생산관리 계획보고
- 2022.02. ~ 2022.04. : 목재수확지 현장 입간판 설치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7급 진미란	전화	2370
-----	-------	------------	-----	----------	----	------

(목재제품 품질관리) (P - 47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110개 업체)
- 사업규모 : 목재제품 품질단속 107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 관리를 통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4,600	4,600		4,922	322	
국 비		2,300	2,300		2,461	161	
도 비		-	-			0	
시 비		2,300	2,300		2,461	161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 생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편성[경기도 산림과-25945(2021.10.15.) 회]

□ 법적근거

근거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근거내용	제27조(지도·감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목재제품 품질 향상 및 업체 현환 파악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	202-01 국내여비	· 목재제품 품질단속 : 46,000원 * 107회 = 4,922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목재제품 품질단속 계획보고
- 2022.01. ~ 2022.12.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월 10건 단속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목재이용 담당자의 현장 확인 등 - 목재 규격 및 품질 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 단속	
2020년	-	
2021년	-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000	870	-	130	
2020년	-	-	-	-	
2021년	4,600	-	-	4,600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9급 박종근	전화	5988
-----	-------	------------	-----	----------	----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P - 47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사업규모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4대 지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난방비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4,000	8,400	8,400		11,200	2,800	
국 비	6,000	3,600	3,600		4,800	1,200	
도 비						0	
시 비	8,000	4,800	4,800		6,400	1,600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물량 추가에 따른 예산 증액[경기도 산림과 25945(2021.10.15.)호]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근거내용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④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으로 생태계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 2,800,000원*4대 = 11,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2022.12.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상시 접수 및 지원금 보조
- 2022.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예산 미편성	
2020년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4대 설치	
2021년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1대 설치, 2대 설치예정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0	0	-	0	
2020년	14,000	14,000	-	0	
2021년	8,400	2,795	-	5,605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9급 박종근	전화	5988
-----	-------	------------	-----	----------	----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P - 48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 치 : 김포시 관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농가
- 사업규모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향상 및 임가소득증대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8,776	18,776		41,663	22,887	
국 비		7,510	7,510		16,665	9,155	
도 비		5,633	5,633		12,499	6,866	
시 비		5,633	5,633		12,499	6,866	
기 타							자부담

□ 예산 증감사유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2개소 배정에 따른 예산 편성[경기도 산림과 25945(2021.10.15.) 회]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근거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해 관내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지원 사업이므로 신청서의 자부담(20%), 용자(30%)는 제외하여 예산편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 20,831,500원 * 2개소 = 41,663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 ~ 2021.02. : 산림소득증대 보조사업 계획 및 신청공고 및 접수
- 2021.02. ~ 2021.11. : 농림축산식품 심의회 상정 및 사업자 선정완료 및 2021년 본예산 편성
- 2022.01. ~ 2022.02. : 사업자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및 대상자 확정
- 2022.02. ~ 2022.11.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추진
- 2022.11. ~ 2022.12.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20년	-	
2021년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사업 추진(3개소)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	-	-	-	
2021년	18,776	14,252	-	4,524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여민구	담당자	녹지7급 최성은	전화	2373
-----	-------	------------	-----	----------	----	------

(P - 480)

(단위 : 천원)

- 364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힐링녹색숲길 조성관리		○ 합 계 = 99,924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숲길 조성관리 일시사역 : 200,000원 * 50명 (‘21년 상반기 별목부 노임단가 기준) = 10,000	
	201-01 사무관리비	◎ 측량수수료비 : 840,000원 * 5필지 = 4,200 ◎ 소모품 자재구입 : 840,000원*5종 = 4,200 ◎ 장릉산 산책로 부지 임차료 : 615,670원 * 1회 = 616 ◎ 문수산 산림욕장 부지 임차료 : 7,508,000원 * 1회 = 7,508 ◎ 숲길 유지보수 : 600,000원 * 2건 * 12월 = 14,400 ◎ 숲길 조성관리 장비임차료 : 500,000원 * 10대 = 5,000	
	201-02 공공운영비	◎ 산림휴양시설 공공요금 = 24,000 · 수도·전기요금 : 1,300,000원 * 12월 = 15,600 · 정화조 관리 : 700,000원 * 12월 = 8,400	
	206-01 재료비	◎ 숲길 조성관리 물품구입 : 6,000,000 * 5종 = 30,0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 ~ 12. : 숲길 조성관리 일시사역 및 장비임차 및 유지보수(수시)
- 2022. 1. ~ 12. : 산림휴양시설 공공요금 납부(정기)
- 2022. 1. ~ 6. : 숲길 조성관리 물품구입
- 2022. 6. : 장릉산, 문수산 산림욕장 부지 임차료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등산로 흙먼지떨이기 및 화장실 전기·수도요금 납부 : 9,104천원 ○ 등산로 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미생물 투입(8회) : 2,113천원 ○ 등산로 시설관리 자재구입(보행매트, 수목 등) : 14,916천원 ○ 문수산 산림욕장 종중부지 임대차 재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급(2018.10월) : 7,753천원 ○ 등산로 시설보수(흙먼지떨이기 수리 등 15건) : 8,167천원 ○ 숲길 배수로 정비 등 9건 : 22,380천원	
2020년	○ 측량 수수료 지급(3건) : 7,009천원 ○ 등산로 흙먼지떨이기 및 화장실 전기·수도요금 납부 : 9,007천원 ○ 등산로 화장실 정화조 청소(2회) : 1,010천원 ○ 등산로 시설관리 자재구입(수목구입 등) : 26,161천원 ○ 문수산, 장릉산 임차료 지급(2020.6월) : 7,753천원 ○ 등산로 시설보수(정자 지붕보수 등 8건) : 9,317천원 ○ 숲길 배수로 정비 : 1,106천원	
2021년	○ 측량 수수료 지급(2건) : 2,860천원 ○ 등산로 흙먼지떨이기 및 화장실 전기·수도요금 납부 : 9,502천원 ○ 등산로 화장실 정화조 청소(2회) : 2,394천원 ○ 등산로 시설관리 자재구입(수목구입 등) : 16,503천원 ○ 문수산, 장릉산 임차료 지급(2021.4월) : 7,753천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75,833천원	64,433천원	-	11,400천원	
2020년	93,253천원	84,674천원	-	8,579천원	
2021년	105,833천원	90,953천원	-	14,880천원	10.31일기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장 이정호	담당자	녹지7급 정승수 녹지7급 백유진	전화	5986 5987
-----	-------	------------	-----	----------------------	----	--------------

(힐링녹색숲길 조성관리(숲길 정비사업)) (P - 48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산림휴양시설(숲길 등)
- 사업규모 : 문수산 외 8개산 숲길(32.40km) 및 산행시설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숲길의 전문적 관리와 신속한 민원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309,600	354,600	354,600		529,200	174,600	
국 비							
도 비							
시 비	309,600	354,600	354,600		529,200	174,6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숲길 등 산림휴양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숲길 및 산행시설 관리량 및 정비요청 민원 증가
- 숲길 노후시설 정비와 정기적 유지관리(예초, 제초, 관목전정, 덩굴제거) 요구가 늘어남에 따른 연간단
가 관리 사업비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근거내용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 · 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 · 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숲길 등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률 또한 높아져 사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 유지관리와 즉각적 민원해결을 위해 연간단가 방식의 시설관리 사업비가 요구됨
- 정기적 시설정비(노면정비, 휴게·운동·안내·안전·배수시설 보수, 배수로 청소 등)를 통한 전문적 유지관리와 폭우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시 즉각적 대응을 통해 산행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숲길 및 계단 경계, 운동공간, 휴게쉼터, 경관목 식재지의 예초, 제초, 관목전정, 덩굴제거 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행불편 민원을 최소화하고 숲길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숲길정비사업	401-01 시설비	○ 합 계 = 529,200	
		◎ 숲길 정비사업	
		· 숲길 시설관리사업 : 30,000,000원 * 9개산 = 270,000 · 숲길 식생관리사업 : 2,000,000원 * 32.4km * 4회 = 259,2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3회추경 (D)			
계	883,800		354,600	354,600		529,200		
공 정 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883,800	354,600	354,600		529,2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2022. 02 : 숲길 시설 및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 2022. 03 : 숲길 시설관리사업, 식생관리사업 착공
- 2022. 12 : 숲길 시설관리사업, 식생관리사업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숲길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추진 : 71,955천원 ○가현산 진달래 식재공사 : 18,310천원 ○태풍피해 복구 매시형울타리 설치 : 380천원 ○부대비 : 589천원	
2020년	○숲길 유지관리사업 추진 : 71,858천원 ○숲길 시설관리사업 추진 : 130,204천원 ○하반기 숲길 시설관리사업 추진 : 44,758천원 ○군하숲길 논슬립 설치 : 15,212천원	
2021년	○숲길 유지관리사업 추진 : 87,669천원 ○숲길 시설관리사업 추진 : 193,037천원 ○장릉산 숲길 노후화장실 구매 : 37,246천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00,720천원	91,234천원	-	9,486천원	
2020년	279,600천원	260,032천원	-	19,568천원	
2021년	354,600천원	317,952천원	-	36,648천원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장 이정호	담당자	녹지7급 정승수	전화	5986
-----	-------	------------	-----	----------	----	------

(숲길 조성관리) (P - 48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숲길정비(7km)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북부권에 위치한 훼손된 등산로의 생태적 복원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한 숲길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514,720	1,678,000	1,678,000		890,000	-788,000	
국 비							
도 비	257,360	839,000	839,000		445,000	-394,000	
시 비	257,360	839,000	839,000		445,000	-394,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산림과-25134(2021.10.29.)호「2021년 산림분야 국도비 가내시(안)변경알림」에 따른 2022년 ‘숲길조성관리’로 도비보조가 내시되어 사업을 추진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숲길의 운영·관리)
근거내용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등산로의 세굴현상 및 시설물의 노후로 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 북부산림권인 승마산·수안산의 건강성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등산로 전구간의 훼손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 통		○ 합 계 890,000	
숲길조성관리	401-01 시설비	· 북부권 훼손등산로 복원: 124,000,000원 * 7km = 868,000	
	401-02 감리비	· 북부권 훼손등산로 복원 감리용역 = 22,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3회추경 (D)			
계	3,318,753	750,753	1,678,000	1,678,000		890,000		
공 정 별	설 계비	161,696	131,696			30,000		
	보상비							
	공사비	3,094,157	608,157	1,648,000	1,648,000	838,000		
	감리비	62,900	10,900	30,000	30,000	22,000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2022. 03.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2. 03. ~ 2022. 04.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각종 인허가 추진
- 2022. 05 ~ 08. :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19년 2회추경 교부 : 337,947천원	
2020년	- 문수산 등산로 훼손지 복원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31,696천원	
2021년	- 문수산 등산로 훼손지 복원공사 B코스(청룡회관 ~ 경기도 학생야영장) : 608,157천원 - 문수산 등산로 훼손지 복원공사 감리용역(B코스) : 10,900천원 - 문수산 등산로 훼손지 복원공사 A코스(산림욕장 ~ 팔각정) : 536,055천원 - 문수산 등산로 훼손지 복원공사 C코스(산림욕장 ~ 북문) : 618,098천원 - 문수산 등산로 데크계단 공사 : 488,588천원 - 문수산 등산로 훼손지 복원공사 감리용역(A·C·데크계단) : 23,525천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337,947천원	-	337,947천원	-	명시이월
2020년	852,667천원	131,696천원	659,207천원	61,764천원	사고이월
2021년	2,337,207천원	2,285,323천원	-	51,884천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장 이정호	담당자	녹지7급 정승수	전화	5986
-----	-------	------------	-----	----------	----	------

(행복숲체험원 운영(공공운영비))(P - 48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운양동 1325-1번지 외 7개소
- 사업규모 : 유아숲체험원(모담산·통진·솔터힐링·금빛·양곡·풀무골) 6개소, 산림교육지원센터 2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5,300	10,400	10,400		8,800	-1,600	
국 비							
도 비							
시 비	15,300	10,400	10,400		8,800	-1,6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행복숲체험원 시설유지관리(연간단가)사업 추진에 따른 산림교육 운영 유지보수비 감액
-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재료비로 산림교육시 필요한 교구 및 재료 구매가능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예시) 반영예정	(예시) 조건부추진	(예시) 비대상	(예시) 비대상	(예시) 비대상	(예시) 비대상	(예시) 의결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유아숲체험원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비(수도·전기 등 공공요금) 및 유아숲체험원 소규모 수리수선비가 요구됨
- 연중 실·내외에서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 시설 운영·관리를 통해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공 통		○ 합 계 =	8,800	
행복숲체험원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행복숲체험원 운영 · 산림교육 운영 공공요금 : 200,000원 * 12월 = 2,400 · 산림교육 운영 유지보수 : 800,000원 * 8개소 = 6,400	8,8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 2022. 01. ~ 12. : 산림교육지원센터 운영 공공요금 납부(정기)
- 2022. 01. ~ 12. : 산림교육 운영 유지보수(수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유아숲체험원 모래 살균 및 소독 : 1,585천원 ○ 비상재해 대비기구 구입 : 222천원 ○ 유아숲교육 협약 및 주점식 : 491천원 ○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 748천원 ○ 산림교육지원센터 관리비(생수, 통신·수도·전기요금) : 1,711천원	
2020년	○ 유아숲체험원 모래 살균 및 소독 : 1,585천원 ○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 748천원 ○ 산림교육지원센터 관리비(생수, 통신·수도·전기요금) : 1,711천원	
2021년	○ 산림교육지원센터 관리비(생수, 통신·수도·전기요금) : 1,283천원	10.31일까 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8,600	12,133	-	16,467	
2020년	15,300	4,044	-	11,256	
2021년	10,400	6,133	-	4,267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장 이정호	담당자	녹지7급 백유진	전화	5987
-----	-------	------------	-----	----------	----	------

(행복숲체험원 운영 (행복숲체험원 유지관리사업))(P - 48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1월
- 위 치 : 운양동 1325-1번지 외 6개소
- 사업규모 : 유아숲체험원(모담산·통진·솔터힐링·금빛·양곡·풀무골) 6개소, 솔터힐링 무궁화동산 1개소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유아숲체험원 및 무궁화동산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교육공간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93,000	107,200	107,200		86,190	-21,010	
국 비							
도 비							
시 비	93,000	107,200	107,200		86,190	-21,01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유아숲체험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연간단가 추진에 따른 공사비 증액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경상■	자본□	(예시) 반영예정	(예시) 조건부추진	(예시) 비대상	(예시) 비대상	(예시) 비대상	(예시) 비대상	(예시) 의결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산지형 공원에 위치한 유아숲체험원의 특성상 자연재해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놀이·휴게시설 보완이 필요
- 유아숲체험원 내 식생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관리(예·제초, 전정)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이용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본예산 요구액	비 고
공 통		○ 합 계 =	86,190	
행복숲체험원 유지관리사업	401-01 시설비	◎ 행복숲체험원 유지관리사업 · 유아숲 식생유지관리사업 : 9,547,500원 * 4회 = 38,190 · 무궁화동산 생육환경개선사업 : 3,000,000원 * 6회 = 18,000 · 유아숲 시설물정비사업(연간단가) : 5,000,000원 * 6개소 = 3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3회추경 (D)			
계	286,390	93,000	107,200	107,200		86,190		
공 정 별	설 계비							
	보상비							
	공사비	286,390	93,000	107,200	107,200	86,19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 2022. 02. ~ 11. : 시설물 정비사업(연간단가) 추진
- 2022. 04. ~ 11. : 병해충 방제사업 및 식생유지관리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유아숲체험원 식생유지관리사업 : 12,970천원 ○ 유아숲체험원 상반기 시설물정비사업 : 18,928천원 ○ 유아숲체험원 하반기 시설물정비사업 : 22,731천원 ○ 유아숲체험원 CCTV설치사업 : 113,999천원	
2020년	○ 유아숲체험원 식생유지관리사업 : 23,912천원 ○ 유아숲체험원 상반기 시설물정비사업 : 19,132천원 ○ 무궁화동산 병해충방제사업 : 12,759천원	
2021년	○ 유아숲체험원 식생유지관리사업 : 26,952천원 ○ 유아숲체험원 상반기 시설물정비사업 : 43,840천원 ○ 무궁화동산 병해충방제사업 : 14,215천원	8.27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189,000	168,629	-	20,371	
2020년	93,000	55,803	-	37,197	
2021년	107,200	85,007	-	22,193	8.27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장 이정호	담당자	녹지7급 백유진	전화	5987
-----	-------	------------	-----	----------	----	------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 (P - 48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모담산유아숲체험원 통진유아숲체험원 솔터힐링유아숲체험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후화된 유아숲체험원 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150,000	150,000	
국 비							
도 비					75,000	75,000	
시 비					75,000	75,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산림과-26856(2021.10.30.)호「2021년 산림분야 국도비 가내시(안) 변경알림」에 따른 2022년 ‘유아숲체험원 보완’으로 도비보조가 내시되어 사업을 추진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모담산유아숲체험원(2015년), 통진유아숲체험원(2016년), 솔터힐링숲체험원(2017년)이 구성되어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위험성이 높음
-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작이 필요하여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 통		○ 합 계 150,000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 유아숲체험원 정비 : 50,000,000원 * 3개소 = 150,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3회추경 (D)			
계	150,000					150,000		
공 정 별	설계비	30,000				30,000		
	보상비							
	공사비	120,000				120,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2022. 03.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2. 03. ~ 2022. 04.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2. 05 ~ 08. :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장 이정호	담당자	녹지7급 백유진	전화	5987
-----	-------	------------	-----	----------	----	------

(유아숲교육운영) (P - 48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2월
- 위 치 : 모담산유아숲체험(운양동1325-1)외 5개소
- 사업규모 :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12인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산림교육전문가 고용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아숲교육운영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만족도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357,160	308,400	308,400		317,712	9,312	
국 비	178,580	154,200	154,200		158,856	4,656	
도 비							
시 비	178,580	154,200	154,200		158,856	4,656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산림과-25357(2021.10.15.)호「2021년 산림분야 국도비 가내시 알림」에 따른 2022년 ‘유아 숲교육운영’으로 도비보조가 내시되어 사업을 추진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2021.11월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유아숲체험원 1개소당 유아숲지도사 2인을 배치하여(총12인) 원활하고 체계적인 계절별 실내·외 유아 숲체험 교육 실시
- 산림교육전문가 고용을 통한 전문적인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로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이용만족도 제고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공 통		○ 합 계 317,712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 : 26,476,000원*12인 = 317,712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2. 01. : 2022년 김포시 산림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22. 02. : 2022년 김포시 유아숲교육 위탁용역 발주 및 계약
- 2022. 03. : 2022년 김포시 유아숲교육 위탁용역 착수
- 2022. 12. : 2022년 김포시 유아숲교육 위탁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교육장소 : 모담산·통진·솔터힐링·금빛 유아숲체험원(4개소) - 운영인력 : 유아숲지도사 8인 - 운영기간 : 2019. 3. ~ 2019. 12. - 교육인원 : 어린이집·유치원 65개 기관, 19,675명	
2020년	- 소요예산 : 357,160천원 - 교육장소 : 모담산·통진·솔터힐링·금빛·양곡 유아숲체험원(5개소) - 운영인력 : 유아숲지도사 10인 - 운영기간 : 2020. 3. ~ 2020. 12. - 교육인원 : 어린이집·유치원 65개 기관, 4,609명※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유아숲교육 운영 중지에 따른 수혜인원 감소	
2021년	- 소요예산 : 247,454천원 - 교육장소 : 모담산·통진·솔터힐링·금빛·양곡·풀무골 유아숲체험원(6개소) - 운영인력 : 유아숲지도사 12인 - 운영기간 : 2021. 3. ~ 2021. 12. - 교육인원 : 어린이집·유치원 65개 기관, 8,570명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200,000	160,605	-	39,395	
2020년	357,160	243,576	-	113,584	
2021년	308,400	247,454		60,946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장 이정호	담당자	녹지7급 백유진	전화	5987
-----	-------	------------	-----	----------	----	------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P - 48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2월 ○ 위 치 : 문수산 산림욕장(월곶면 성동리 산38번지)
○ 사업규모 : 산림치유지도사 2인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산림치유사를 통해 숲속 치유인자를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60,000	60,000		60,000	0	
국 비							
도 비		18,000	18,000		18,000	0	
시 비		42,000	42,000		42,000	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산림과-25357(2021.10.15.)호「2021년 산림분야 국도비 가내시 알림」에 따른 2022년 ‘산림치유 운영’으로 도비보조가 내시되어 사업을 추진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근거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정서 침체 및 사회적 활력저하로 ‘코로나 블루’현상 증가
- 숲산책, 명상, 밸런스테라피 등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산림치유지도사를 고용하여 시민 건강 및 활력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공 통		○ 합 계 60,000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 30,000,000원*2인 = 60,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2021년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22. 02. : 2021년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발주 및 계약
- 2022. 03. : 2021년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착수
- 2022. 12. : 2021년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	
2020년	-	
2021년	- 소요예산 : 52,800천원 - 교육장소 : 문수산 산림욕장 - 운영인력 : 산림치유사 2인 - 운영기간 : 2021. 04. ~ 2021. 11.. - 참여인원 : 3,666명	10.26.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	-	-	-	
2020년	-	-	-	-	
2021년	60,000	52,800	-	7,200	10.26.일까지 추진실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장 이정호	담당자	녹지7급 백유진	전화	5987
-----	-------	------------	-----	----------	----	------

(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 (P - 48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3년 5월 ○ 위 치 : 문수산 산림욕장(월곶면 성동리 230번지)
- 사업규모 : 1동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문수산 산림욕장의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내·외 활용 가능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향후 자연휴양림의 종합프로그램 공간 기반 조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62,304	62,304	
국 비							
도 비							
시 비					62,304	62,30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실내 교육 공간의 부재로 산림치유지도자의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 이에, 센터 사무실을 신설하여 쾌적한 산림치유프로그램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함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산림치유지도사)
근거내용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근거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근거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의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내 교육장소 및 산림치유지도사들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내 교육공간의 부재로 일부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한 실정임
- 산림치유사 및 교육대상자가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산림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하고자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1회추경 요구액	비 고
공 통		o 합 계	62,304	
산림휴양치유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	401-01 시설비	◎ 산림휴양치유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 실시설계용역 : $1,200,000,000 * 0.0472 * 1.1$ =	62,304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3회추경 (D)			
계	1,275,864					62,304	1,213,560	
공 정 별	설계비	62,304				62,304		
	보상비							
	공사비	1,200,000					1,200,000	
	감리비	13,560					13,560	
	부대비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03. : 산림휴양 치유센터 실시설계 및 관련 심의
- 2022. 03. ~ 05. : 1회 추경 사업비 확보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발주
- 2022. 06. ~ 2023. 05. : 공사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장 이정호	담당자	녹지7급 정승수	전화	5986
-----	-------	------------	-----	----------	----	------

(숲길 관리원(인건비)) (P - 48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0월
- 위 치 : 관내 등산로 · 산책로 관리
- 사업규모 : 1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등산로·산책로 관련 전문 인력 활용 및 즉각적 민원해결,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3회 추경 (C)			
계					23,604	23,604	
국 비							
도 비							
시 비					23,604	23,604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등산로·산책로 품질 향상 및 관리량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 법적근거

근거법령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근거내용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 · 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등산로·산책로 이용률 확대에 의해 늘어나는 다양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등산로·산책로 관리인력이 필요한 사항임
- 관내 신설 등산로·산책로 개설 및 기존 등산로·산책로 즉각 대응 유지관리 인력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 통		○ 합 계 = 23,604	
숲길 관리원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숲길 관리원 운영 = 20,676	
		· 기본급 : 10,860원 * 8시간 * 1명 * 167일 = 14,509	
		· 유급휴일수당 : 86,880원 * 1명 * 46일 = 3,997	
		· 명절휴가비 : 500,000원 * 1명 * 1회 = 500	
		· 여비 : 10,000원 * 1명 * 167일 = 1,670	
		◎ 4대 보험료 : 42,208,000원 * 13% = 2,688	
		◎ 피복비 : 240,000원 * 1명 = 24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 02. : 숲길 관리원 채용 계획 수립
- 2022.02. ~ 2022. 03. : 숲길 관리원 채용 공고 및 채용
- 2022.03. ~ 2022. 10. : 숲길 관리원 운영
- 2022.11. : 숲길 관리원 운영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장 이정호	담당자	녹지7급 정승수	전화	5986
-----	-------	------------	-----	----------	----	------

(태산패밀리파크 산책로 포장 정비공사) (P - 48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6월
- 사업규모 : 산책로경화토 220㎡ 교체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태산패밀리 내 산책로 노후 포장 교체로 안전사고 예방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회~2회 추경 (C)			
계					279,000	279,000	
국 비							
도 비							
시 비					279,000	279,000	
기 타							

□ 예산 증감사유

- 야생초화원 경화토포장 파손 및 부동침하로 민원이 급증하여 교체작업이 필요함
- 이에, 공원 내 노후 산책로 포장 등 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근거내용	공원시설 그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유지 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원 내 미추진된 노후 포장로의 배수 및 기능 약화, 공원 미관 저해로 포장교체가 시급함
- 야생화산책로 경화토 교체 220㎡ 등 포장 및 시설 정비를 통하여 통일감을 부여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 합 계 = 279,000	
태산패밀리파크 산책로 포장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 태산패밀리파크 산책로 포장 정비공사 · 산책로 포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 15,000 · 산책로 포장 정비공사 1,200,000원 * 220㎡ = 264,0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 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F)	기투자 (A)	2021년 예산액			2022 년 요구액 (E)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3회추경 (D)			
계	279,000					279,000		
공 정 별	설 계비	15,000				15,000		
	보상비							
	공사비	264,000				264,000		
	감리비							
	부대비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01. ~ 02. : 실시설계용역
- 2022. 03. 04.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사업발주
- 2022. 05. ~ 06. : 공사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10,000 :1 이상 (칼라)	
현장사진 (칼라)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장 이정호	담당자	녹지7급 정승수	전화	5986
-----	-------	------------	-----	----------	----	------

(도시림 관리원 운영(인건비))(P - 48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위 치 : 관내 도시숲(가로수)
- 사업규모 : 공무원근로자 2명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도시숲 유지관리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D)	2021년 예산 대비 증감 (D-A)	비고
		계 (A=B+C)	본예산 (B)	1화~3회 추경 (C)			
계	75,539	87,837	87,837	-	88,749	912	
국 비							
도 비							
시 비	75,539	87,837	87,837	-	88,749	9123	
기 타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 1항
근거내용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업무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관내 가로수·가로화단·쌈지공원 등 도시숲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상시 인력 운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 통		○ 합 계 = 88,749	
인력운영비 (공원녹지과)	101-03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 공무직근로자보수 = 79,029 · 기본급 : 2,615,390원 * 2명 * 12월 = 62,770 · 정액급식비 : 140,000원 * 2명 * 12월 = 3,360 · 명절휴가수당 : 2,615,390원 * 60% * 2명 * 2회 = 6,277 · 가족수당 : 40,000원 * 1명 * 12월 = 480 · 시간외근무수당 : 20,560원 * 8시간 * 2명 * 12월 = 3,948 · 연차유급휴급수당 : 109,680원 * 2명 * 10일 = 2,194	
	304-01 연금부담금	◎ 국민연금 79,028,000*4.5% = 3,557	
	304-02 국민건강보험금	◎ 건강보험료 79,028,000*5.145% = 4,066	
	304-04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고용 보험료 부담금	◎ 고용보험료 79,028,000*1.65% = 1,304	
		◎ 산재보험료 79,028,000*1.003% = 793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1. ~ 2022.12. : 가로수·가로화단·쌈지공원 등 도시숲 관리 및 민원처리(월별 급여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9년	-가로수 실태조사 등 도시녹지자원조사 및 사업실행 이력 등 정보 구축관리 -가로수도시숲쌈지공원 등 병해충 피해조사 및 방제, 피해목고사목 정리, 가지치기 -도시녹화사업 추진지원	
2020년	-가로수 실태조사 등 도시녹지자원조사 및 사업실행 이력 등 정보 구축관리 -가로수도시숲쌈지공원 등 병해충 피해조사 및 방제, 피해목고사목 정리, 가지치기 -도시녹화사업 추진지원	
2021년	-가로수 실태조사 등 도시녹지자원조사 및 사업실행 이력 등 정보 구축관리 -가로수도시숲쌈지공원 등 병해충 피해조사 및 방제, 피해목고사목 정리, 가지치기 -도시녹화사업 추진지원	10.31.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9년	69,652	67,926	-	1,726	
2020년	84,094	78,794	-	5,300	
2021년	87,837	60,500	-	27,337	10.31.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장 이미숙	담당자	녹지9급 이승훈	전화	2489
-----	-------	------------	-----	----------	----	------